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수집 및 정리: 정경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서론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하고 있음
 - 이에 동 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자료 분석과 더불어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들의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도출하고자 함

2. 상호금융기관 현황

-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5개 상호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그룹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있으며, 제2그룹은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5개 상호금융기관별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 조합 수는 새마을금고가 1,30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협 1,118개, 신협 873개, 산림조합 141개, 수협 91개임
 - 총자산은 농협 약 454조 6,597억원, 신협 약 124조 4,084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산림조합의 총자산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당기순이익은 농협 약 1조 9,723억원, 새마을금고 7,795억원, 수협 1,612억원을 기록

<표 1> 상호금융기관 규모 비교(2021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¹⁾
조합수	1,118	91	141	873	1,300
총자산규모	454,659,684	39,202,701	10,466,932	124,408,436	75,014,285
당기순이익	1,972,260	161,238	91,460	515,403	779,466

주: 1) 새마을금고는 2020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예금, 출자금 및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음
- 주요 자금 조달은 예수금(예금)이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최소 1.7%(수협), 최대 5.3%(신협) 정도임
 - 주요 운용 항목은 대출금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앙회 예치금은 13.5%에서 20.4% 사이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상호금융기관별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수금(예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농협	383,595,267	14,503,719	321,209,734	92,788,453
	(84.4)	(3.2)	(70.6)	(20.4)
수협	32,897,225	658,428	29,859,867	6,660,808
	(83.9)	(1.7)	(76.2)	(17.0)
산림조합	8,467,538	377,327	6,903,146	2,568,760
	(80.9)	(3.6)	(66)	(24.5)
신협	111,733,059	6,561,636	93,798,955	16,773,166
	(89.8)	(5.3)	(75.4)	(13.5)
새마을금고	214,832,329	10,499,241	177,143,222	44,708,194
	(88.8)	(4.3)	(73.2)	(18.5)

주: () 안은 각 기관별 전체 자금 조달 운용금액 대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3.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감면 현황

- 5개 상호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기준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농협은 약 357만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81.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준조합원이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의 81.9~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미세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수협은 2021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33만 6천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94% 이상이 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12만 7천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78.7%를 차지하고 있음
 - 조합원 비중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20.7%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2021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 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조합원
2017년	645,711	3,221,608	17,821	286,760	17,641	71,973	1,451,380	2,287,550
	(16.70)	(83.30)	(5.85)	(94.15)	(19.69)	(80.31)		
2018년	642,036	3,250,374	18,900	323,577	20,727	79,050	1,544,543	2,374,052
	(16.49)	(83.51)	(5.52)	(94.48)	(20.77)	(79.23)		
2019년	649,335	3,284,896	19,284	342,602	24,005	91,410	1,658,206	2,575,709
	(16.50)	(83.50)	(5.33)	(94.67)	(20.80)	(79.20)		

<표 3>의 계속

(단위: 명)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조합원
2020년	656,538	3,162,965	19,612	316,608	25,480	97,756	1,614,470	2,487,820
	(17.19)	(82.81)	(5.83)	(94.17)	(20.68)	(79.32)		
2021년	646,022	2,924,704	19,787	316,469	27,184	100,189	1,599,516	2,482,473
	(18.09)	(81.91)	(5.88)	(94.12)	(21.34)	(78.66)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5개 상호금융기관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비과세 인당 예탁금은 최소 1,406만원(농협)에서 최고 1,855만원(새마을금고) 수준임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인당 예탁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농협과 산림조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모습임

<표 4>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인당 예탁금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2017년	13.66	-	18.59	-	14.36	-	17.25	-	17.86	-
2018년	14.00	2.49	18.08	△2.74	14.58	1.53	17.45	1.16	18.17	1.74
2019년	14.49	3.50	18.47	2.16	14.72	0.96	17.64	1.09	18.57	2.20
2020년	14.12	△2.55	18.45	△0.11	14.10	△4.21	17.86	1.25	18.83	1.40
2021년	14.01	△0.78	18.89	2.38	13.93	△1.21	18.04	1.01	19.30	2.50
평균	14.06	-	18.05	-	14.34	-	17.65	-	18.55	-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은 2021년 약 13조 6,190억원, 새마을금고는 약 9조 5,716억원, 신협은 약 6조 4,527억원, 산림조합은 약 3,625억원임
 - 수협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20년은 전년 대비 1.6%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출자금은 약 4,669억원 정도임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10% 이상의 출자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농협은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협도 2018년에서 2019년은 전년 대비 각각 14.4%, 15.5%의 출자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5> 5개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2017년	10,632,470	-	338,696	-	217,883	-	4,519,506	-	6,221,416	-
2018년	11,330,354	6.56	387,594	14.44	242,577	11.33	4,754,842	5.21	6,544,546	5.19
2019년	11,932,600	5.32	447,544	15.47	275,140	13.42	5,231,811	10.03	7,415,227	13.30
2020년	12,692,288	6.37	440,383	△1.60	313,586	13.97	5,812,205	11.09	8,327,827	12.31
2021년	13,618,962	7.30	466,931	6.03	362,537	15.61	6,452,672	11.02	9,571,615	14.94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조세지출 규모)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대체적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망)
과세특례 규모	8,943	7,666	5,673	5,521	5,926	5,859	4,863	4,142

자료: 2014년~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해당 항목의 규모를 발췌하여 저자 정리

4.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응답자의 예탁금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예탁금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약 80%이며 기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비과세대상 예탁금을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 이상 두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농협이 약 10%, 다른 기관은 약 7% 수준임

- 저축 여력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실제로 예탁금의 수준이 비과세 한도 이내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응답자들의 저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비과세 출자금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자의 비중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낮아서 10% 내외의 수준으로 지난 심층평가 조사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장 빈도가 높은 출자금은 1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소액 출자자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출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개인 특성과 출자금/예탁금액의 관계

- 출자금액은 읍면 거주자에 비해 동 거주자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자금이 많은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특성은 예탁금액과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른 예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농협의 경우만 수도권 거주자들의 예탁금액이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예탁금액이나 출자금액은 관측되는 개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임

□ 인식과 관련된 주요 결과

- 조합 가입자인 응답자들은 각종 비과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지난 심층평가에 비해 다소 강화됨
-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조합 가입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가입자의 인식면에서는 저축지원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소득, 학력, 연령 등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응

- 설문을 통해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응을 추정한 결과, 5% 세율로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2.6%, 9% 세율로 과세할 경우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7.2%가 이전되리라는 추정치를 얻음

-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예탁금이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농가경제조사의 분석에서 얻은 이자율에 대한 저축액의 민감하지 않은 반응과도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의 적절성) 소득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개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원방식의 적절성)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조세지출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동 지원방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국세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약 49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4.4% 정도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약 2조 2,74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의 73.6%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자 등은 약 1,011만명 수준으로 전체 출자자의 75.1%를 차지하며, 이들의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은 약 1조 97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의 75.7%를 차지함
- (지원대상의 적절성) 2021년부터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수혜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에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동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정책 대상자 설정에

개선의 여지는 있음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저축상품은 가입 대상, 가입 조건, 우대 혜택, 제약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가입 대상 측면에서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ISA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금융상품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동 과세특례 상품을 제공하는 상호금융기관에서는 ISA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등 금융상품 간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부인할 만큼의 중복성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함

6. 효과성 분석

- 현재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인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자에 대한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미시 정보는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동 특례 수혜가구의 저축행위 및 제도변화에 따른 반응을 추론함
 - 소득과 이자율 자료를 바탕으로 이자율 변화에 따른 저축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가 완화되거나 사라질 경우의 효과를 추론함
- 가구 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수준,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농가의 저축이 유사한 소득 수준의 비농가 저축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농가의 저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중위소득 이하의 농가 가구들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가 가구의 저축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자율에 따른 저축액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도 발견하였음

- 농가저축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분석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가구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통하여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였음

7. 개선 방안 및 결론

- 동 특례제도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무심층평가 대상이 될 정도로 조세특례금액이 크다는 점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외의 고소득층도 동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정책 목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음

[개선 방안 1] 현행의 법률대로 조세특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

[개선 방안 2] 총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

- [개선 방안 1]을 통하여 동 제도의 조세특례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에서 농가 가구의 저축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자율에 따른 저축의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예탁금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에 예탁금을 시중은행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규모는 5% 서울로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2.6%, 9% 서울로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7.2%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은 5% 또는 9%의 서울로 과세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세율 14% 보다는 적기 때문에 예탁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2]를 통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외의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2021년부터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되었으나,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으로는 총급여액 5,000만원,¹⁾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을 제시할 수 있음²⁾
 - 이러한 기준금액은 가입 조건을 가진 다른 금융상품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제시된 것임
 - 물론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자도 상호금융기관에의 출자 및 예탁이 계속 허용되며, 이 기준은 다만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기준임

1)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3,800만원, 중위소득은 통계에 따라 2,460만~2,900만원 수준임

2)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의 중위소득은 통계에 따라 840만~2,400만원 수준임

목 차

I. 서론	21
II.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현황	27
1. 농업협동조합	29
가. 일반 현황	29
나. 재무 현황	31
2. 수산업협동조합	33
가. 일반 현황	33
나. 재무 현황	34
3. 산림조합	37
가. 일반 현황	37
나. 재무 현황	38
4. 신용협동조합	40
가. 일반 현황	40
나. 재무 현황	42
5. 새마을금고	44
가. 일반 현황	44
나. 재무 현황	45
6. 비교	48
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현황	51
1. 비과세 출자금 및 예탁금 현황	53
가. 농업협동조합	53
나. 수산업협동조합	55
다. 산림조합	58

라. 신용협동조합	61
마. 새마을금고	63
2. 5개 상호금융기관 현황 비교	66
가.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비교	66
나. 예탁금 비교	74
다. 출자금 비교	78
3. 세제지원 현황	87
가. 제도 개요	87
나. 제도 연혁	88
다. 조세지출 규모	97
IV.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
1. 설문조사의 설계	101
2. 표본의 성격	101
3. 설문분석의 결과	105
가. 응답자들의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 현황	105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111
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인식	118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	130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143
바.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및 이전 규모	151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계된 행태	155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의 요약	155
V. 타당성 분석	159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161
2. 지원방식의 적절성	165
3. 지원대상의 적절성	168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171

VI. 효과성 분석	179
1. 분석 개요	181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분석	182
3.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한 분석	192
4. 소결	199
VII. 개선 방안 및 결론	201
참고문헌	208
<부 록>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211

표 목 차

<표 II-1> 농업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29
<표 II-2>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30
<표 II-3> 연도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30
<표 II-4> 농업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31
<표 II-5> 농업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31
<표 II-6> 농업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32
<표 II-7> 수산업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33
<표 II-8>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33
<표 II-9> 연도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34
<표 II-10> 수산업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35
<표 II-11> 수산업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35
<표 II-12> 수산업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36
<표 II-13>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37
<표 II-14> 연도별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38
<표 II-15> 산림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38
<표 II-16> 산림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39
<표 II-17> 산림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40
<표 II-18>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41
<표 II-19>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41
<표 II-20> 연도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42
<표 II-21>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42
<표 II-22> 신용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43
<표 II-23>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43
<표 II-24> 새마을금고 조합 수 현황	44
<표 II-25>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45
<표 II-26>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45

<표 II-27> 새마을금고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46
<표 II-28> 새마을금고의 영업성과 현황	46
<표 II-29> 새마을금고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47
<표 II-30> 상호금융기관 규모 비교(2021년 기준)	48
<표 II-31> 상호금융기관별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2021년 기준)	48
<표 II-32> 상호금융기관별 자산건전성 비교	49
<표 II-33> 상호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50
<표 III-1> 농업협동조합의 전체 (준)조합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53
<표 III-2> 농업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54
<표 III-3> 농업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54
<표 III-4>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55
<표 III-5> 수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준)조합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	56
<표 III-6> 수산업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56
<표 III-7> 수산업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57
<표 III-8>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57
<표 III-9> 산림조합의 전체 (준)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	58
<표 III-10> 산림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59
<표 III-11> 산림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59
<표 III-12> 산림조합의 출자금 추이	60
<표 III-13> 신용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	61
<표 III-14>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62
<표 III-15> 신용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62
<표 III-16>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63
<표 III-17> 새마을금고의 전체 (준)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	64
<표 III-18>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64
<표 III-19> 새마을금고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65
<표 III-20>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추이	65
<표 III-21>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준)조합원 수	67
<표 III-22> 5개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수 증감률	67

<표 III-23>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조합원 수	69
<표 III-24>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준)조합원 수 증감률	71
<표 III-25>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준)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 추이	73
<표 III-26> 5개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추이	75
<표 III-27>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76
<표 III-28>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율 추이	77
<표 III-29>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인당 예탁금	78
<표 III-30> 5개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79
<표 III-31> 농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81
<표 III-32> 수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83
<표 III-33> 산림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85
<표 III-34> 신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86
<표 III-35>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86
<표 III-36>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개요	87
<표 III-37> 조합 등의 비과세 한도 초과 출자금·배당금에 대한 당연 종합과세 제외 (2000)	89
<표 III-38> 조합 등의 이용실적 배당소득 비과세 및 예탁금 과세특례 기한 연장 (2003)	90
<표 III-39>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 일몰 신설 및 예탁금 비과세 축소·연장(2006) ...	91
<표 III-40>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 확대 등(2008)	91
<표 III-4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13)	92
<표 III-4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15)	92
<표 III-4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20)	94
<표 III-4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제도 연혁	95
<표 III-45>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	97
<표 IV-1> 최종 표본의 분포	102
<표 IV-2>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104
<표 IV-3>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106

<표 IV-4> 출자금액 회귀분석	107
<표 IV-5> 예탁금 가입 현황(전체 응답자)	108
<표 IV-6> 예탁금 가입 현황(예탁금 > 0)	109
<표 IV-7> 예탁금액 회귀분석	109
<표 IV-8>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 현황	110
<표 IV-9>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 현황	111
<표 IV-10>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112
<표 IV-11>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113
<표 IV-12>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14
<표 IV-13>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115
<표 IV-14>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16
<표 IV-15>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117
<표 IV-16>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118
<표 IV-17> “조합 가입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에 대한 응답	119
<표 IV-18>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120
<표 IV-19>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	121
<표 IV-20>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122
<표 IV-21>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다”에 대한 응답	123
<표 IV-22>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에 대한 응답	124
<표 IV-23>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에 대한 응답 ...	125
<표 IV-24>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126
<표 IV-25>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127
<표 IV-26>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정리	128
<표 IV-27> 예탁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분석)	129
<표 IV-28>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	130
<표 IV-29>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131
<표 IV-30>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132
<표 IV-31>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133

<표 IV-32>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134
<표 IV-33> 출자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135
<표 IV-34>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에 대한 응답	136
<표 IV-35>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137
<표 IV-36>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에 대한 응답	138
<표 IV-37>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139
<표 IV-38>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140
<표 IV-39>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141
<표 IV-40> 예탁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142
<표 IV-41>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143
<표 IV-42>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145
<표 IV-43> “예탁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146
<표 IV-44> “예탁상품의 가입 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147
<표 IV-45>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148
<표 IV-46>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149
<표 IV-47> 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시 행태(Ordered Probit)	150
<표 IV-48> 제도 변화(비과세 혜택 축소) 인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믿음	151
<표 IV-49> 시중은행으로 예탁금 이전 의향(Probit 분석)	154

<표 V-1>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수 현황(수도권 및 비수도권 기준)	163
<표 V-2> 소득수준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인원 및 비중(2020년 귀속)	166
<표 V-3> 소득수준별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인원 및 비중(2020년 귀속)	167
<표 V-4>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 ·	169
<표 V-5> 종합소득 수준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현황(2020년 귀속)	171
<표 V-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비교	173
<표 V-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가입기준	176
<표 V-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	177
<표 VI-1>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 - 자산	184
<표 VI-2>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 - 유량(flow)변수	185
<표 VI-3>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187
<표 VI-4>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 농가 소득 70분위 이하 가구 표본	188
<표 VI-5>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 농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 표본	189
<표 VI-6> 농가 저축함수의 추정 - 전체 표본	196
<표 VI-7> 농가 저축함수의 추정 - 흑자가구 표본	197

그림 목 차

[그림 V-1]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162
[그림 VI-1] 농가와 비농가 저축액 차이: 전체 표본(2012~2020)	190
[그림 VI-2] 농가와 비농가 저축액 차이: 70분위 및 중위 이하(2012~2020)	190
[그림 VI-3] 농협의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194
[그림 VI-4] 농어가 평균 저축액의 변화 추이	195

I. 서론



I. 서론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은 1976년 농어민 및 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저축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동 제도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예탁금의 경우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함)을 대상으로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또는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임
 - 2022년까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2023년에는 5% 분리과세, 2024년 이후에는 9%로 분리과세하며,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4,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함
 - 2021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14.8% 감소한 4,142억원, 2022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601억원으로 추산
 - 2020년 실적, 2021년 및 2022년 전망치 기준 3년 평균 예상 감면액은 연간 4,535억원 정도임
 - 2016~2020년 5년 평균 조세지출 규모는 연 5,568억원 수준임

-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2~3년마다 지원내용 확대 또는 비과세 요건 강화, 적용기한 연장 등 수차례 개정을 거침
 -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업인 및 서민의 재산형성 및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500만원(1978년), 1천만원(1987년), 2천만원(1991년), 3천만원(2009년)까지 4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됨
 - 준조합원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

-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2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1987년 500만원으로 증액, 1992년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1995년 일몰제 도입 이후 2001년부터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다가 2007년에 일몰제를 재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특히 최근 2020년 12월 29일에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변경하고, 일부 강화하였음
 -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 거주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변경
 - 고소득 자산가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조특법」 제129조의2)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함
 - 한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2월 31일까지 5%, 2024년 1월 1일부터는 9% 저율과세로 기한을 연장함

- 현재 동 특례제도 중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2022년 말까지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동 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정책 대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들의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제 I 장의 서론과 제 VII 장의 결론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에서는 특례 대상 기관인 5개 상호금융기관의 현황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해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현행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 5개 상호금융기관의 세제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예탁금 가입자 및 출자자를 대상으로 동 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 제Ⅴ장에서는 동 특례제도의 정부 개입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 타당성 분석을 시행함
- 제Ⅵ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동 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

Ⅱ.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현황



II.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현황

1. 농업협동조합

가. 일반 현황

- (회원조합 수 현황)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은 2017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1,118개로 동일하게 유지중이며, 품목조합³⁾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9개로 동일함

<표 II -1> 농업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조합	1,052	1,043	1,039	1,039	1,039
품목조합	79	79	79	79	79
전체	1,131	1,122	1,118	1,118	1,11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4. 5.

- (임직원 현황) 총 임직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97,7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0.43% 증가함
- 임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19,642명으로 전년 대비 0.26% 증가함
 - 직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78,136명으로 전년 대비 0.47% 증가함
 - 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함

3) 원예, 축산, 인삼, 양돈, 과수, 낙농 등 세부 품목별 조합을 말함

<표 II -2>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임원 ¹⁾	19,638	19,569	19,590	19,642
상근 이사 및 감사 ²⁾	1,376	1,398	1,424	1,442
비상근 이사 및 감사 ³⁾	12,077	11,929	11,987	12,029
전무 및 상무 ⁴⁾	6,185	6,242	6,179	6,171
직원	77,216	78,109	77,766	78,136
정규직원	56,598	56,736	56,093	56,138
비정규직원	20,618	21,373	21,673	21,998
총 임직원 ⁵⁾	96,854	97,678	97,356	97,778

- 주: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
 3)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중 비상근 이사 및 감사
 4)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5)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한 전체 임직원 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비은행(농업협동조합) 일반현황, 검색일자: 2022. 4. 5.

-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2021년 기준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2,012명 증가하여 208만 5,711명이지만, 2017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준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합계는 준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표 II -3> 연도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17년	2,214,990(11.33)	17,340,786(88.67)	19,555,776(100.00)
2018년	2,145,216(10.78)	17,747,896(89.22)	19,893,112(100.00)
2019년	2,097,763(10.37)	18,126,436(89.63)	20,224,199(100.00)
2020년	2,083,699(10.16)	18,415,722(89.84)	20,499,421(100.00)
2021년	2,085,711(10.06)	18,649,749(89.94)	20,735,460(10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농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나. 재무 현황

1) 총자산·부채·자본

- 농업협동조합의 총자산은 2021년 12월 기준 약 455조원 정도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9% 증가한 수치로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부채는 약 4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약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함

<표 II -4> 농업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¹⁾	356,358,029	377,631,587	402,153,227	429,495,999	454,659,684
부채	330,408,025	349,696,419	372,662,421	398,318,369	421,309,327
자본	25,950,002	27,935,191	29,490,808	31,177,626	33,350,353

주: 1) 농업협동조합>재무현황>요약재무상태표(자산)(SQ003) 총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7.

2) 영업성과

- 농업협동조합의 영업이익은 2021년 4조 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조 9,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및 카드 등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신용사업 손익의 경우 약 3조 3,416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으로 이는 영업이익 4조 1,625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준임

<표 II -5> 농업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	13,750,036	15,430,941	16,751,469	15,091,283	14,557,030
영업비용	9,883,654	10,904,284	12,149,476	11,355,526	10,475,216
영업이익	3,866,388	4,526,647	4,601,976	3,735,752	4,081,819
신용사업손익	3,096,174	3,671,098	3,716,775	2,945,442	3,278,795

<표 II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신용사업손익	-1,531,159	-1,697,451	-2,025,844	-1,299,577	-1,306,545
당기순이익	1,565,027	1,973,627	1,690,933	1,645,841	1,972,26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7.

3)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 농업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자금 중 84.4%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전체 자금의 70.6%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금 조달 재원 중 예금과 출자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자금 조달 중 출자금의 비중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3.2%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자금 운용 중 대출금 비중이 5년 평균 67.8%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회 예치금 5년 평균이 23.0% 수준임

<표 II -6> 농업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달	예금	299,374,019 (84.0)	315,492,938 (83.5)	337,324,138 (83.9)	362,138,877 (84.3)	383,595,267 (84.4)
	차입금	10,995,922 (3.1)	12,759,810 (3.4)	12,230,198 (3.0)	12,820,356 (3.0)	14,153,392 (3.1)
	출자금	11,311,031 (3.2)	12,086,777 (3.2)	12,754,740 (3.2)	13,562,703 (3.2)	14,503,719 (3.2)
	기타	34,677,046 (9.7)	37,292,074 (9.9)	39,844,165 (9.9)	40,974,077 (9.5)	42,407,271 (9.3)
조달(운용) 합계	356,358,029 (100.0)	377,631,587 (100.0)	402,153,227 (100.0)	429,495,999 (100.0)	454,659,684 (100.0)	
운용	대출금	238,066,208 (66.8)	256,204,022 (67.8)	265,846,390 (66.1)	290,623,218 (67.7)	321,209,734 (70.6)
	중앙회예치금	84,005,910 (23.6)	85,616,720 (22.7)	99,697,318 (24.8)	101,710,039 (23.7)	92,788,453 (20.4)
	유가증권	2,034,700 (0.6)	1,573,877 (0.6)	1,122,352 (0.3)	943,969 (0.2)	960,478 (0.2)
	기타	32,251,207 (9.1)	34,236,964 (13.4)	35,487,136 (8.8)	36,218,794 (8.4)	39,700,995 (8.7)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7.

2. 수산업협동조합

가. 일반 현황

- (회원조합 수)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수산물가공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전체 조합 수는 91개로 변화가 없음
 - 이 중 어민 소재 지역별로 구성된 조합인 지구별 조합은 70개, 업종별 조합⁴⁾은 19개, 수산물가공조합은 2개임

〈표 II -7〉 수산업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구별조합	70	70	70	70	70
업종별조합	19	19	19	19	19
수산물가공	2	2	2	2	2
전체	91	91	91	91	9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7.

- (임직원 현황) 총 임직원 수는 2021년 기준 7,538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 임원 수는 2021년 기준 1,247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고, 직원 수는 6,291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음
 - 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807명임

〈표 II -8〉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임원 ¹⁾	1,162	1,251	1,240	1,247
상근 이사 및 감사 ²⁾	167	172	171	171
비상근 이사 및 감사 ³⁾	758	794	781	788
전무 및 상무 ⁴⁾	237	285	288	288

4) 굴, 피조개, 멧게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어민으로 구성된 조합

<표 II -8>의 계속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	5,599	6,189	6,156	6,291
정규직원	4,691	5,279	5,270	5,484
비정규직원	908	910	886	807
총 임직원 ⁵⁾	6,761	7,440	7,396	7,538

- 주: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
 3)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중 비상근 이사 및 감사
 4)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5)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한 전체 임직원 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수산업협동조합) 일반현황, 검색일자: 2022. 5. 17.

-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2021년 기준 조합원 수는 153,146명이며,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준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합계는 증가하고 있음

<표 II -9> 연도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17년	158,322(10.40)	1,363,753(89.60)	1,522,075(100.00)
2018년	158,113(9.71)	1,470,354(90.29)	1,628,467(100.00)
2019년	156,773(9.14)	1,558,920(90.86)	1,715,693(100.00)
2020년	154,347(8.65)	1,629,955(91.35)	1,784,302(100.00)
2021년	153,146(8.19)	1,717,632(91.81)	1,870,778(10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나. 재무 현황

1) 총자산·부채·자본

- 수산업협동조합의 총자산은 2021년 기준 약 39.2조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수치로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부채는 약 37.5조원, 자본은 약 1.7조원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II -10> 수산업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27,753,660	30,378,842	33,235,406	34,525,626	39,202,701
부채	26,605,933	29,088,685	31,862,176	33,037,189	37,485,470
자본	1,147,730	1,290,147	1,373,236	1,488,434	1,717,23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수산업협동조합) 재무현황, 검색일자: 2022. 5. 17.

2) 영업성과

- 수산업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9% 크게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021년 2,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업인 및 수산단체에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신용사업 손익의 경우 약 1,661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으로 이는 영업이익 2,212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중 약 74%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임

<표 II -11> 수산업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	1,083,547	1,229,461	1,346,085	1,271,219	1,335,223
영업비용	863,124	996,750	1,163,766	1,086,944	1,048,483
영업이익	220,425	232,710	182,324	184,281	286,741
신용사업손익	166,447	177,236	130,990	133,473	222,626
비신용사업손익	-11,369	-46,388	-59,658	-55,171	-61,382
당기순이익	155,072	130,847	71,331	78,304	161,23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수산업협동조합) 재무현황, 검색일자: 2022. 5. 17.

3) 자금 조달 및 운용

-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자금 중 83.9%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전체 자금의 76.2%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금 조달 자원 중 예금의 비중은 8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2017년 9.0%에서 2021년 기준 현재 8.4%로 감소함
 - 반면 조합원의 출자금은 주요 자금 조달에서 평균 1.7~1.8%대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금 운용 중 대출금 비중이 72.5~76.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회 예치금이 17.0~21.9% 정도 수준임

〈표 II -12〉 수산업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달	예금	22,843,042 (82.8)	25,206,890 (83.3)	27,831,137 (83.7)	28,871,358 (83.6)	32,897,225 (83.9)
	차입금	2,480,454 (9.0)	2,577,331 (8.5)	2,769,628 (8.3)	2,955,449 (8.6)	3,276,532 (8.4)
	출자금	492,289 (1.8)	534,690 (1.8)	572,013 (1.7)	607,797 (1.8)	658,428 (1.7)
	기타	1,786,657 (6.5)	1,951,902 (6.4)	2,062,631 (6.2)	2,091,020 (6.1)	2,370,519 (6.0)
조달(운용) 합계		27,602,444 (100.0)	30,270,807 (100.0)	33,235,406 (100.0)	34,525,626 (100.0)	39,202,701 (100.0)
운용	대출금	20,227,137 (73.3)	21,935,879 (72.5)	23,548,334 (70.9)	25,923,934 (75.1)	29,859,867 (76.2)
	중앙회예치금	5,294,432 (19.2)	6,017,831 (19.9)	7,288,791 (21.9)	6,107,860 (17.7)	6,660,808 (17.0)
	유가증권	28,281 (0.1)	25,578 (0.1)	28,793 (0.1)	22,829 (0.1)	15,356 (0.0)
	기타	2,052,593 (7.4)	2,291,520 (7.6)	2,369,487 (7.1)	2,471,003 (7.2)	2,666,675 (6.8)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수산업협동조합) 재무현황, 검색일자: 2022. 5. 17.

3. 산림조합

가. 일반 현황

- (회원조합 수) 산림조합은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142개, 2021년 12월말 현재 총 141개의 조합이 있음⁵⁾
- (임직원 현황) 총 임직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3,606명으로 전년 대비 0.36% 증가함
 - 임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1,589명으로 2020년 대비 0.51% 증가함
 - 직원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 2,017명으로 2020년 대비 0.25% 증가함
 - 정규직원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하여 1,493명이며, 비정규직원은 10.0% 감소한 524명임

<표 II -13>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임원 ¹⁾	1,571	1,545	1,581	1,589
상근 이사 및 감사 ²⁾	137	138	138	142
비상근 이사 및 감사 ³⁾	1,225	1,194	1,226	1,229
전무 및 상무 ⁴⁾	209	213	217	218
직원	1,961	1,956	2,012	2,017
정규직원	1,418	1,384	1,430	1,493
비정규직원	543	572	582	524
총 임직원 ⁵⁾	3,532	3,501	3,593	3,606

주: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

3)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중 비상근 이사 및 감사

4)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5)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한 전체 임직원 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산림조합) 일반 현황, 검색일자: 2022. 5. 18.

5)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8.

-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2021년 기준 조합원 수는 394,498명으로 전년 대비 720명 감소하였으며, 매년 전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음
- 반면, 준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산림조합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합계는 증가하고 있음

<표 II -14> 연도별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17년	404,254(55.10)	329,394(44.90)	733,648(100.00)
2018년	396,728(53.10)	350,345(46.90)	747,073(100.00)
2019년	412,361(52.38)	374,813(47.62)	787,174(100.00)
2020년	395,218(49.96)	395,792(50.04)	791,010(100.00)
2021년	394,498(48.58)	417,481(51.42)	811,979(10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

나. 재무 현황

1) 총자산·부채·자본

- 산림조합의 총자산은 2021년 12월 말잔 기준 약 10.5조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12월 말잔 기준 부채는 약 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약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함

<표 II -15> 산림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6,321,938	7,197,085	8,435,611	9,401,119	10,466,932
부채	5,554,380	6,374,080	7,550,487	8,403,938	9,334,781
자본	767,557	823,004	885,126	997,188	1,132,15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8.

2) 영업성과

- 산림조합의 영업이익은 2021년 약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3% 큰 폭으로 증가함
 - 신용사업손익의 경우 약 139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으로 이는 영업이익 약 301억원(2017~2021년 5년 평균) 중 약 46.2%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임
 - 비신용사업손익이 다른 4개의 상호금융기관과 다르게 흑자인 이유는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보다는 일반사업이나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 전문지도 등 비신용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II -16> 산림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	205,163	229,339	286,274	298,124	306,216
영업비용	179,521	203,768	265,160	269,357	256,449
영업이익	25,647	25,561	21,115	28,773	49,767
신용사업손익	10,528	10,497	5,839	12,644	30,259
비신용사업손익	26,407	19,090	34,102	57,131	61,200
당기순이익	36,940	29,593	39,936	69,775	91,46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8.

3) 자금 조달 및 운용

- 산림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 자금 중 80.9%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전체 자금의 66.0%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금 조달 자원 중 예금의 비중은 78.2~8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금은 3.4~3.6% 수준임
 - 자금 운용 중 대출금이 55.6~66.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회 예치금이 24.5~31.6% 정도 수준임

<표 II -17> 산림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달	예금	4,946,151 (78.2)	5,723,563 (79.5)	6,829,309 (81.0)	7,609,786 (80.9)	8,467,538 (80.9)
	차입금	268,288 (4.2)	301,074 (4.2)	325,033 (3.9)	382,011 (4.1)	477,563 (4.6)
	출자금	228,222 (3.6)	258,065 (3.6)	288,331 (3.4)	328,558 (3.5)	377,327 (3.6)
	기타	879,271 (13.9)	914,375 (12.7)	992,940 (11.8)	1,080,771 (11.5)	1,144,497 (10.9)
조달(운용) 합계		6,321,938 (100.0)	7,197,085 (100.0)	8,435,611 (100.0)	9,401,119 (100.0)	10,466,932 (100.0)
운용	대출금	3,512,935 (55.6)	4,336,421 (60.3)	5,025,452 (59.6)	5,695,715 (60.6)	6,903,146 (66.0)
	중앙회예치금	1,995,300 (31.6)	2,024,134 (28.1)	2,504,339 (29.7)	2,724,584 (29.0)	2,568,760 (24.5)
	유가증권	50,606 (0.8)	30,080 (0.4)	19,622 (0.2)	12,316 (0.1)	9,824 (0.1)
	기타	763,085 (12.1)	806,447 (11.2)	886,191 (10.5)	968,500 (10.3)	985,208 (9.4)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8.

4. 신용협동조합

가. 일반 현황

- (회원조합 수)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직장 및 단체신협으로 구분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현재 각각 674개, 122개, 77개로 총 873개 회원조합이 있음
- 신용협동조합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신협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음

<표 II -18>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수 현황(연말 기준)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신협	664	666	668	670	674
직장신협	143	136	132	128	122
단체신협	91	86	83	81	77
전체	898	888	883	879	87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9.

- (임직원) 총 임직원 수는 2021년 기준 17,656명으로 전년 대비 0.32% 증가하였고, 임원 수는 8,730명으로 전년 대비 0.36% 증가함
 - 직원 수는 2021년 기준 8,926명으로 전년 대비 0.28% 증가함
 - 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원은 전년 대비 26.32% 감소한 238명임

<표 II -19>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임원 ¹⁾	8,737	8,710	8,699	8,730
상근 이사 및 감사 ²⁾	685	717	771	727
비상근 이사 및 감사 ³⁾	7,269	7,205	7,104	7,116
전무 및 상무 ⁴⁾	783	788	824	887
직원	8,581	8,771	8,901	8,926
정규직원	7,996	8,399	8,578	8,688
비정규직원	585	372	323	238
총 임직원 ⁵⁾	17,318	17,481	17,600	17,656

주: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

3)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중 비상근 이사 및 감사

4) 경영목적상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

5)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한 전체 임직원 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비은행(신용협동조합) 일반현황, 검색일자: 2022. 5. 19.

- (조합원 수) 2021년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640만명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20> 연도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조합원	증가율
2017년	5,698,206	-
2018년	5,892,956	3.42
2019년	6,132,916	4.07
2020년	6,223,958	1.48
2021년	6,395,841	2.76

자료: 신용협동조합 내부자료

나. 재무 현황

1) 총자산·부채·자본

-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은 2021년 기준 약 124조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로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부채는 약 114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약 9.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표 II -21>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81,832,385	90,789,799	102,431,483	110,942,464	124,408,436
부채	74,990,159	83,401,809	94,280,938	101,991,174	114,460,141
자본	6,842,227	7,387,998	8,150,546	8,951,266	9,948,28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9.

2) 영업성과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이익은 2021년 4,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하였음
- 신용사업손익의 경우 2021년 약 5,051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은 약 3,982억원 정도), 비신용사업손익은 약 102억원 정도를 달성함

<표 II -22> 신용협동조합의 영업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	3,161,386	3,586,649	4,020,101	3,899,534	3,939,136
영업비용	2,823,140	3,170,884	3,656,905	3,529,832	3,465,429
영업이익	338,250	415,740	363,215	369,687	473,732
신용사업손익	339,038	415,105	358,939	372,954	505,109
비신용사업손익	9,031	8,879	11,162	10,158	10,294
당기순이익	348,072	423,989	370,105	383,115	515,40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9.

3) 자금 조달 및 운용

-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자금 중 89.8%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전체 자금의 75.4%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금 조달 재원 중 예금의 비중은 89.3~89.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금은 5.3~5.8%대를 유지하고 있음
 - 자금 운용 중 대출금은 69.3~75.4%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회 예치금이 13.5~20.6% 정도 수준임

<표 II -23>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달	예금 (89.3)	81,414,600 (89.7)	92,033,383 (89.8)	99,472,156 (89.7)	111,733,059 (89.8)
	차입금 (0.7)	432,343 (0.5)	421,614 (0.4)	733,918 (0.7)	895,176 (0.7)
	출자금 (5.8)	4,940,972 (5.4)	5,403,527 (5.3)	5,920,848 (5.3)	6,561,636 (5.3)
	기타 (4.2)	3,422,814 (4.4)	4,572,949 (4.5)	4,815,523 (4.3)	5,218,570 (4.2)
조달(운용) 합계	81,832,385 (100.0)	90,789,799 (100.0)	102,431,483 (100.0)	110,942,464 (100.0)	124,408,436 (100.0)

<표 II -2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용	대출금	59,293,837 (72.5)	65,100,794 (71.7)	71,012,354 (69.3)	78,855,914 (71.1)	93,798,955 (75.4)
	중앙회예치금	16,859,718 (20.6)	18,274,524 (20.1)	17,767,836 (17.3)	17,034,114 (15.4)	16,773,166 (13.5)
	유가증권	2,534,974 (3.1)	3,560,326 (3.9)	5,130,659 (5.0)	6,726,339 (6.1)	6,289,443 (5.1)
	기타	3,143,860 (3.8)	3,854,147 (4.2)	8,520,670 (8.3)	8,326,116 (7.5)	7,546,885 (6.1)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2. 5. 19.

5. 새마을금고

가. 일반 현황

□ (조합 수) 새마을금고는 지역새마을금고와 직장새마을금고로 구분되며, 2017년 각각 1,211개와 104개로 총 1,315개던 조합이 2020년 기준 1,201개와 99개로 총 1,300개로 15개 감소함

○ 지역새마을금고가 전체의 92%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 -24> 새마을금고 조합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새마을금고	1,211(92.1)	1,207(92.3)	1,201(92.3)	1,201(92.4)
직장새마을금고	104(7.9)	100(7.7)	100(7.7)	99(7.6)
전체	1,315(100.0)	1,307(100.0)	1,301(100.0)	1,300(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2021 새마을금고통계」, p. 27

□ (임직원) 총 임직원 수는 2020년 기준 29,568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함

○ 임원 수는 13,706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직원 수는 15,862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표 II -25>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임원	13,755	13,625	13,706
상근(이사장, 임원)	973	989	1,043
비상근(이사장, 임원)	12,782	12,636	12,663
직원	15,368	15,669	15,862
전·상무	1,672	1,728	1,789
일반직원	12,799	12,975	13,110
별정직, 계약직	897	966	963
총 임직원 ¹⁾	29,123	29,294	29,568

주: 1) 별정직,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 수
 자료: 새마을금고, 「2021 새마을금고통계」, pp. 62~63

- (회원 수) 2021년 기준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3,240명, 0.31% 감소한 약 748만명임
- 5개년도(2017~2021년) 새마을금고 회원 수 평균은 약 749만명 수준임

<표 II -26>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단위: 명, %)

구분	회원 수	증가율
2017년	7,535,582	
2018년	7,439,291	△1.28
2019년	7,514,123	1.01
2020년	7,504,490	△0.13
2021년	7,481,250	△0.31

주: 해당 연도말 누적 인원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나. 재무 현황

1) 총자산·부채·자본

-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09조 1,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준 부채는 약 186조 3,5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음

<표 II -27> 새마을금고의 총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자산	150,481,282	163,785,466	190,416,212	209,119,924
예수부채	133,318,322	145,616,785	170,276,340	186,353,360
차입부채	834,330	816,787	735,298	1,375,684
출자금	6,266,970	6,576,339	7,423,744	8,329,302
이익잉여금	5,396,092	5,894,933	6,359,244	6,863,518
기타	4,665,568	4,880,622	5,621,586	6,198,060

주: 말잔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 『2021 새마을금고 통계』, pp. 50~51

2) 영업성과

-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은 2021년 1조 3,4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 1,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하였음
- 신용사업손익의 경우 2021년 약 1조 1,075억원(2017~2021년 5년 평균은 약 7,776억원), 비신용사업손익은 약 77억원 정도를 달성함

<표 II -28> 새마을금고의 영업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	5,088,870	5,661,921	6,745,209	6,876,836	7,126,163
영업비용	4,266,483	4,746,917	5,780,841	5,846,738	5,778,735
영업이익	822,387	915,003	964,368	1,030,098	1,347,429
신용사업손익	603,041	691,716	713,172	772,889	1,107,496
비신용사업손익	11,535	10,977	9,593	6,577	7,748
당기순이익	614,577	702,693	722,764	779,466	1,115,244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3) 자금 조달 및 운용

-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자금 중 88.8%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전체 자금의 73.2%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자금 조달 자원 중 예금과 출자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자금 조달 중 출자금의 비중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약 4.3%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자금 운용 중 대출금 비중이 5년 평균 약 69.1%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회 예치금 5년 평균이 약 22.3% 수준임

<표 II -29> 새마을금고의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달	예금	133,318,322 (88.6)	145,616,785 (88.9)	170,276,340 (89.4)	186,353,360 (89.1)	214,832,329 (88.8)
	차입금	834,330 (0.6)	816,787 (0.5)	735,298 (0.4)	1,375,684 (0.7)	3,413,089 (1.4)
	출자금	6,490,349 (4.3)	6,965,782 (4.3)	7,950,266 (4.2)	9,138,509 (4.4)	10,499,241 (4.3)
	기타	9,838,280 (6.5)	10,386,111 (6.3)	11,454,308 (6.0)	12,252,372 (5.9)	13,312,103 (5.5)
조달(운용) 합계		150,481,282 (100.0)	163,785,466 (100.0)	190,416,212 (100.0)	209,119,924 (100.0)	242,056,762 (100.0)
운용	대출금	104,402,603 (69.4)	112,150,688 (68.5)	126,026,498 (66.2)	143,321,131 (68.5)	177,143,222 (73.2)
	중앙회예치금	31,960,931 (21.2)	37,707,375 (23.0)	48,824,939 (25.6)	48,021,345 (23.0)	44,708,194 (18.5)
	유가증권	5,863,970 (3.9)	4,503,516 (2.7)	4,421,506 (2.3)	5,195,869 (2.5)	5,619,097 (2.3)
	기타	8,253,779 (5.5)	9,423,887 (5.8)	11,143,268 (5.9)	12,581,578 (6.0)	14,586,250 (6.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6. 비교

- 상호금융기관별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30>과 같음
 - 조합 수는 새마을금고가 1,30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협 1,118개, 신협 873개, 산림조합 141개, 수협 91개임
 - 총자산은 농협 약 454조 6,597억원, 신협 약 124조 4,084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산림조합의 총자산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다소 작은 규모임
 - 당기순이익은 농협 약 1조 9,723억원, 새마을금고 7,795억원, 수협 1,612억원을 기록함

<표 II -30> 상호금융기관 규모 비교(2021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¹⁾
조합수	1,118	91	141	873	1,300
총자산규모	454,659,684	39,202,701	10,466,932	124,408,436	75,014,285
당기순이익	1,972,260	161,238	91,460	515,403	779,466

주: 1) 새마을금고는 2020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예금, 출자금 및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1>과 같음
 - 주요 자금 조달은 예수금(예금)이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최소 1.7%(수협), 최대 5.3%(신협)임
 - 주요 운용 항목은 대출금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앙회 예치금은 13.5%에서 20.4% 사이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 -31> 상호금융기관별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수금(예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농협	383,595,267	14,503,719	321,209,734	92,788,453
	(84.4)	(3.2)	(70.6)	(20.4)

<표 II -31>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수금(예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수협	32,897,225	658,428	29,859,867	6,660,808
	(83.9)	(1.7)	(76.2)	(17.0)
산림조합	8,467,538	377,327	6,903,146	2,568,760
	(80.9)	(3.6)	(66)	(24.5)
신협	111,733,059	6,561,636	93,798,955	16,773,166
	(89.8)	(5.3)	(75.4)	(13.5)
새마을금고	214,832,329	10,499,241	177,143,222	44,708,194
	(88.8)	(4.3)	(73.2)	(18.5)

주: () 안은 각 기관별 전체 자금조달운용금액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 (자산건전성) 2018~2020년 5개 상호금융기관별 자산건전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32>와 같음

- 2020년 기준 고정 이하 여신비율⁶⁾은 지표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협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수협 2.84%, 새마을금고 2.57% 순임
- 연체율은 농협이 1.2%로 가장 낮았으며, 신협이 2.55%로 가장 높음

<표 II -32> 상호금융기관별 자산건전성 비교

(단위: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2018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1.21	2.29	1.61	2.48	1.77
	연체율	1.06	2.05	1.16	2.13	1.35
2019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1.71	3.10	1.95	2.94	2.20
	연체율	1.34	2.78	1.67	2.75	1.85
2020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1.69	2.84	2.00	3.13	2.57
	연체율	1.20	2.44	1.67	2.55	2.1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0 신협통계」, p. 106; 새마을금고 내부자료

6) 대출자산 중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지표가 높을수록 위험한 것으로 판단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020년 기준 5개의 상호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⁷⁾ 적립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 33>과 같음

- 상호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⁸⁾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출 연체 기간 별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상호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농협이 1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산림조합 116.4%, 수협 107.2% 순임

<표 II -33> 상호금융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협	170.5	170.0	159.5	161.2
수협	110.7	108.8	106.7	107.2
산림조합	115.7	114.3	115.0	116.4
신협	107.6	105.1	103.7	101.7
새마을금고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7)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함(홍범교 외(2018), p. 58.)

8)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 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현황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현황

1. 비과세 출자금 및 예탁금 현황

가. 농업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21년 말 기준 농업협동조합의 (전체)조합원은 약 2,074만명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357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17.22%임
-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17.22~19.78% 수준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농업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Ⅲ-1> 농업협동조합의 전체 (준)조합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준)조합원 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B)	
2017년	2,214,990	17,340,786	19,555,776	645,711	3,221,608	3,867,319	19.78
2018년	2,145,216	17,747,896	19,893,112	642,036	3,250,374	3,892,410	19.57
2019년	2,097,763	18,126,436	20,224,199	649,335	3,284,896	3,934,231	19.45
2020년	2,083,699	18,415,722	20,499,421	656,538	3,162,965	3,819,503	18.63
2021년	2,085,711	18,649,749	20,735,460	646,022	2,924,704	3,570,726	17.22

자료: 농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예탁금 현황

- 농업협동조합의 2021년 전체 예탁금은 약 381조 9,679억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021년에는 13% 수준임

<표 III-2> 농업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B/A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17년	296,535,404	-	52,389,797	-	17.7
2018년	312,688,573	5.45	54,014,385	3.10	17.3
2019년	334,448,659	6.96	56,525,781	4.65	16.9
2020년	358,540,096	7.20	53,491,025	△5.37	14.9
2021년	381,967,909	6.53	49,639,637	△7.20	13.0

자료: 농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2017년 1,355만원에서 2019년 1,437만원까지 증가하다 2020년 1,400만원, 2021년 1,39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최근 5개연도(2017~2021년)의 비과세 예탁금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은 1,394만원 수준임

<표 III-3> 농업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수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2017년	645,711	3,221,608	3,867,319	52,389,797	13.55
2018년	642,036	3,250,374	3,892,410	54,014,385	13.88
2019년	649,335	3,284,896	3,934,231	56,525,781	14.37
2020년	656,538	3,162,965	3,819,503	53,491,025	14.00
2021년	646,022	2,924,704	3,570,726	49,639,637	13.90

주: 중복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1인으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농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출자금 현황

-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약 13조 6,190억원임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2021년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합계는 약 5조 9,363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가입금이라 부르며,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용고 배당만 지급함
 - 2021년 기준 준조합원의 가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의 0.6% 수준에 불과함

<표 III-4>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준조합원 가입금	총 출자금			
			금액		증감률	
2017년	10,555,385	77,085	1천만원 이하	5,245,452(49) ¹⁾	10,632,470	-
			1천만원 초과	5,387,018(51)		
2018년	11,251,154	79,200	1천만원 이하	5,456,038(48)	11,330,354	6.56
			1천만원 초과	5,874,316(52)		
2019년	11,851,177	81,423	1천만원 이하	5,568,951(47)	11,932,600	5.32
			1천만원 초과	6,363,649(53)		
2020년	12,609,380	82,908	1천만원 이하	5,706,212(45)	12,692,288	6.37
			1천만원 초과	6,986,076(55)		
2021년	13,534,866	84,096	1천만원 이하	5,936,253(44)	13,618,962	7.30
			1천만원 초과	7,682,710(56)		

주: 1) () 안은 비중임

자료: 농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21년 말 기준 수산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은 약 187만명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33만 6천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17.97%임

-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그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산업협동조합 전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5> 수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준)조합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준)조합원수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수			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B)	
2017년	158,322	1,363,753	1,522,075	17,821	286,760	304,581	20.01
2018년	158,113	1,470,354	1,628,467	18,900	323,577	342,477	21.03
2019년	156,773	1,558,920	1,715,693	19,284	342,602	361,886	21.09
2020년	154,347	1,629,955	1,784,302	19,612	316,608	336,220	18.84
2021년	153,146	1,717,632	1,870,778	19,787	316,469	336,256	17.97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예탁금 현황

- 수산업협동조합의 2021년 전체 예탁금은 약 32조 8,972억원이며, 2017년부터 매년 3.74~13.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은 전년 대비 7.15% 감소하였음
 -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021년에 19.31% 수준임

<표 III-6> 수산업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B/A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17년	22,931,024	-	5,663,349	-	24.70
2018년	25,298,393	10.32	6,190,701	9.31	24.47
2019년	27,831,140	10.01	6,682,477	7.94	24.01
2020년	28,871,358	3.74	6,204,701	△7.15	21.49
2021년	32,897,221	13.94	6,351,680	2.37	19.31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수산업협동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2021년 1,889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 1,808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임
- 최근 5개연도(2017~2021년)의 비과세 예탁금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은 1,850만원 정도임

<표 III-7> 수산업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2017년	17,821	286,760	304,581	5,663,349	18.59
2018년	18,900	323,577	342,477	6,190,701	18.08
2019년	19,284	342,602	361,886	6,682,477	18.47
2020년	19,612	316,608	336,220	6,204,701	18.45
2021년	19,787	316,469	336,256	6,351,680	18.89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출자금 현황

- 수산업협동조합의 2021년 출자금은 약 4,669억원이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음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2021년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합계는 약 2,992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준조합원의 가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의 0.003% 수준에 불과함

<표 III-8>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준조합원 가입금	총 출자금			
			금액		증감률	
2017년	338,682	14	1천만원 이하	246,477(73) ¹⁾	338,696	-
			1천만원 초과	92,219(27)		
2018년	387,578	16	1천만원 이하	273,576(71)	387,594	14.44
			1천만원 초과	114,018(29)		

<표 III-8>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준조합원 가입금	총 출자금			증감률
			금액			
2019년	447,528	16	1천만원 이하	312,827(70)	447,544	15.47
			1천만원 초과	134,717(30)		
2020년	440,371	13	1천만원 이하	297,939(68)	440,383	△1.60
			1천만원 초과	142,444(32)		
2021년	466,915	16	1천만원 이하	299,242(64)	466,931	6.03
			1천만원 초과	167,689(36)		

주: 1) () 안은 비중임

자료: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산림조합

1) 조합원 현황

- 2021년 말 기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은 약 81만명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12만 7천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15.69%임
-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도 최근 5개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9> 산림조합의 전체 (준)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준)조합원 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B/A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 (준회원)	합계(A)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 (준회원)	합계(B)	
2017년	404,254	329,394	733,648	17,641	71,973	89,614	12.21
2018년	396,728	350,345	747,073	20,727	79,050	99,777	13.36
2019년	412,361	374,813	787,174	24,005	91,410	115,415	14.66
2020년	395,218	395,792	791,010	25,480	97,756	123,236	15.58
2021년	394,498	417,481	811,979	27,184	100,189	127,373	15.69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예탁금 현황

- 산림조합의 2021년 전체 예탁금은 약 8조 4,671억원이며, 2017년부터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 전년 대비 16.7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반면,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021년에 20.95% 수준임

〈표 III-10〉 산림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B/A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17년	4,952,920	-	1,287,251	-	25.99
2018년	5,724,412	15.58	1,454,793	13.02	25.41
2019년	6,833,429	19.37	1,698,445	16.75	24.85
2020년	7,609,534	11.36	1,737,220	2.28	22.83
2021년	8,467,128	11.27	1,773,703	2.10	20.95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최근 5개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및 비과세 예탁금은 매년 증가하였음
 -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2017년 1,436만원에서 2019년 1,472만원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소폭 감소하여 2021년 1인당 비과세 예탁금은 1,393만원임
 - 산림조합의 최근 5개연도(2017~2021년) 비과세 예탁금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은 1,434만원임

〈표 III-11〉 산림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2017년	17,641	71,973	89,614	1,287,251	14.36
2018년	20,727	79,050	99,777	1,454,793	14.58

<표 III-11>의 계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A)		
2019년	24,005	91,410	115,415	1,698,445	14.72
2020년	25,480	97,756	123,236	1,737,220	14.10
2021년	27,184	100,189	127,373	1,773,703	13.93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출자금 현황

- 산림조합의 2021년 출자금은 약 3,625억원이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2021년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합계는 약 2,004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준조합원의 가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의 0.5% 수준임

<표 III-12> 산림조합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준조합원 가입금	총 출자금			
			금액		증감률	
2017년	217,883	1,266	1천만원 이하	130,993(60) ¹⁾	217,883	-
			1천만원 초과	86,890(40)		
2018년	242,577	1,378	1천만원 이하	143,921(59)	242,577	11.33
			1천만원 초과	98,656(41)		
2019년	275,140	1,549	1천만원 이하	160,519(58)	275,140	13.42
			1천만원 초과	114,621(42)		
2020년	313,586	1,707	1천만원 이하	178,137(57)	313,586	13.97
			1천만원 초과	135,449(43)		
2021년	362,537	1,929	1천만원 이하	200,376(55)	362,537	15.61
			1천만원 초과	162,161(45)		

주: 1)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21년 말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회원)은 약 640만명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약 160만명으로 전체 조합원(회원)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 비율은 25% 수준임
-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그 비율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신용협동조합 전체 조합원(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13> 신용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조합원(회원) 수(A)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B)	B/A
2017년	5,698,206	1,451,380	25.47
2018년	5,892,956	1,544,543	26.21
2019년	6,132,916	1,658,206	27.04
2020년	6,223,958	1,614,470	25.94
2021년	6,395,841	1,599,516	25.01

자료: 신용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예탁금 현황

- 신용협동조합의 2021년 전체 예탁금은 약 98조 5,870억원이며, 2017년 이후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0년 소폭 감소하였음
- 반면,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021년에 29.27% 수준임

<표 III-14>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B/A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17년	65,318,717	-	25,037,473	-	38.33
2018년	73,235,523	12.12	26,952,766	7.65	36.80
2019년	83,050,595	13.40	29,255,190	8.54	35.23
2020년	88,455,030	6.51	28,830,047	△1.45	32.59
2021년	98,586,963	11.45	28,858,650	0.10	29.27

자료: 신용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신용협동조합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1,804만원 수준임
 - 최근 5개연도(2017~2021년)의 비과세 예탁금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은 1,765만원 정도임

<표 III-15> 신용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A)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2017년	1,451,380	25,037,473	17.25
2018년	1,544,543	26,952,766	17.45
2019년	1,658,206	29,255,190	17.64
2020년	1,614,470	28,830,047	17.86
2021년	1,599,516	28,858,650	18.04

자료: 신용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출자금 현황

-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출자금은 약 6조 4,527억원임
 - 2021년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합계는 약 2조 9,281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45% 정도임

<표 III-16>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증감률
	금액			
2017년	1천만원 이하	2,346,053(52) ¹⁾	4,519,506	-
	1천만원 초과	2,173,453(48)		
2018년	1천만원 이하	2,433,871(51)	4,754,842	5.21
	1천만원 초과	2,320,971(49)		
2019년	1천만원 이하	2,610,026(50)	5,231,811	10.03
	1천만원 초과	2,621,785(50)		
2020년	1천만원 이하	2,793,762(48)	5,812,205	11.09
	1천만원 초과	3,018,443(52)		
2021년	1천만원 이하	2,928,091(45)	6,452,672	11.02
	1천만원 초과	3,524,581(55)		

주: 1) () 안은 비중임

자료: 신용협동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마. 새마을금고

1) 조합원 현황

- 2021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은 약 748만명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약 248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33.18%임
 -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은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그 비율도 일부 감소했고 2021년 그 비율이 다시 소폭 증가하였음
 - 전체 조합원(회원) 수는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749만명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임

<표 III-17> 새마을금고의 전체 (준)조합원(회원) 수 및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준)조합원(회원) 수(A)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B)	B/A
2017년	7,535,582	2,287,550	30.36
2018년	7,439,291	2,374,052	31.91
2019년	7,514,123	2,575,709	34.28
2020년	7,504,490	2,487,820	33.15
2021년	7,481,250	2,482,473	33.18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예탁금 현황

- 새마을금고의 2021년 전체 예탁금은 약 214조 6,753억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9%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전년 대비 2.07% 감소하였음
 -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021년에 그 비율은 22.31% 수준임

<표 III-18>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및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탁금		비과세 예탁금		B/A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17년	132,247,652	-	40,845,059	증감률	30.89
2018년	144,739,301	9.45	43,142,458	5.62	29.81
2019년	169,904,696	17.39	47,839,104	10.89	28.16
2020년	186,148,042	9.56	46,848,210	△2.07	25.17
2021년	214,675,347	15.33	47,899,564	2.24	22.31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2017년 1,786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930만원 수준임
 - 최근 5개연도(2017~2021년)의 비과세 예탁금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은 1,855만원 수준임

<표 III-19> 새마을금고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A)	비과세 예탁금(B)	인당 비과세 예탁금(B/A)
2017년	2,287,550	40,845,059	17.86
2018년	2,374,052	43,142,458	18.17
2019년	2,575,709	47,839,104	18.57
2020년	2,487,820	46,848,210	18.83
2021년	2,482,473	47,899,564	19.30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출자금 현황

-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출자금은 약 9조 5,716억원임
 - 2021년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합계는 약 4조 2,421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44% 정도임

<표 III-20>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조합원 출자금			증감률
		금액		
2017년	1천만원 이하	3,290,059(53) ¹⁾	6,221,416	-
	1천만원 초과	2,931,357(47)		
2018년	1천만원 이하	3,389,567(52)	6,544,546	5.19
	1천만원 초과	3,154,979(48)		
2019년	1천만원 이하	3,687,235(50)	7,415,227	13.30
	1천만원 초과	3,727,992(50)		
2020년	1천만원 이하	3,908,297(47)	8,327,827	12.31
	1천만원 초과	4,419,530(53)		
2021년	1천만원 이하	4,242,143(44)	9,571,615	14.94
	1천만원 초과	5,329,472(56)		

주: 1)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5개 상호금융기관 현황 비교

가.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 비교

- 2021년 말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이 전체 (준)조합원의 수는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회원 수는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749만명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임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수, 신협의 회원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농협과 수협의 준조합원 수가 조합원 수의 약 9배 수준으로 준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산림조합의 경우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2021년 말 기준 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은 약 2,074만명으로 5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준)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약 748만명, 신협 약 640만명, 수협은 약 187만명, 산림조합은 약 81만명 수준임

- 다음의 <표 III-22>를 보면, 농협의 조합원은 201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 반등하는 모습임
 - 농협의 준조합원은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수협의 조합원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준조합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등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준조합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협의 회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2018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 증가, 202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 -21〉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준)조합원 수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세마을 금고 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회원	회원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2017년	2,214,990 (11.33)	17,340,786 (88.67)	19,555,776	158,322 (10.40)	1,363,753 (89.60)	1,522,075	404,254 (55.10)	329,394 (44.90)	733,648	5,698,206	7,535,582	
2018년	2,145,216 (10.78)	17,747,896 (89.22)	19,893,112	158,113 (9.71)	1,470,354 (90.29)	1,628,467	396,728 (53.10)	350,345 (46.90)	747,073	5,892,956	7,439,291	
2019년	2,097,763 (10.37)	18,126,436 (89.63)	20,224,199	156,773 (9.14)	1,558,920 (90.86)	1,715,693	412,361 (52.38)	374,813 (47.62)	787,174	6,132,916	7,514,123	
2020년	2,083,699 (10.16)	18,415,722 (89.84)	20,499,421	154,347 (8.65)	1,629,955 (91.35)	1,784,302	395,218 (49.96)	395,792 (50.04)	791,010	6,223,958	7,504,490	
2021년	2,085,711 (10.06)	18,649,749 (89.94)	20,735,460	153,146 (8.19)	1,717,632 (91.81)	1,870,778	394,498 (48.58)	417,481 (51.42)	811,979	6,395,841	7,481,25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III -22〉 5개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수 증감률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세마을 금고 조합원 증감률	
	조합원	준조합원	증감률	조합원	준조합원	증감률	조합원	준조합원	증감률	회원	증감률	회원		증감률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2017년	2,214,990	17,340,786	-	158,322	1,363,753	-	404,254	329,394	-	5,698,206	-	7,535,582	-	
2018년	2,145,216	17,747,896	△3.15	158,113	1,470,354	7.82	396,728	350,345	6.36	5,892,956	3.42	7,439,291	△1.28	
2019년	2,097,763	18,126,436	△2.21	156,773	1,558,920	6.02	412,361	374,813	6.98	6,132,916	4.07	7,514,123	1.01	
2020년	2,083,699	18,415,722	△0.67	154,347	1,629,955	4.56	395,218	395,792	5.60	6,223,958	1.48	7,504,490	△0.13	
2021년	2,085,711	18,649,749	0.10	153,146	1,717,632	5.38	394,498	417,481	5.48	6,395,841	2.76	7,481,250	△0.31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기준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357만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81.91%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준조합원이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의 81.91~8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미세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수협의 2021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33만 6천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94.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94% 이상이 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조합원, 준조합원 포함)는 약 12만 7천명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중에 준조합원이 78.66%를 차지하고 있음
 - 조합원 비중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20.66%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2021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는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중이 조합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포 III-23〉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위탁금 기입 조합원 수

(단위: 명,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17년	645,711	3,221,608	3,867,319	17,821	286,760	304,581	17,641	71,973	89,614	1,451,380	2,287,550
	(16.70)	(83.30)		(5.85)	(94.15)		(19.69)	(80.31)			
2018년	642,036	3,250,374	3,892,410	18,900	323,577	342,477	20,727	79,050	99,777	1,544,543	2,374,052
	(16.49)	(83.51)		(5.52)	(94.48)		(20.77)	(79.23)			
2019년	649,335	3,284,896	3,934,231	19,284	342,602	361,886	24,005	91,410	115,415	1,658,206	2,575,709
	(16.50)	(83.50)		(5.33)	(94.67)		(20.80)	(79.20)			
2020년	656,538	3,162,965	3,819,503	19,612	316,608	336,220	25,480	97,756	123,236	1,614,470	2,487,820
	(17.19)	(82.81)		(5.83)	(94.17)		(20.68)	(79.32)			
2021년	646,022	2,924,704	3,570,726	19,787	316,469	336,256	27,184	100,189	127,373	1,599,516	2,482,473
	(18.09)	(81.91)		(5.88)	(94.12)		(21.34)	(78.66)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전체 (준)조합원 수에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증감률을 보면, 산림조합은 최근 5년 동안 조합원, 준조합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농협의 조합원은 2019~2020년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준조합원은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수협의 조합원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였으며, 준조합원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모습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 -24〉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준)조합원 수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증감률	준조합원	증감률	조합원	증감률	준조합원	증감률	조합원	증감률	회원	증감률	조합원	증감률		
2017년	645,711	-	3,221,608	-	17,821	-	286,760	-	17,641	-	71,973	-	1,451,380	-	2,287,550	-
2018년	642,036	△0.57	3,250,374	0.89	18,900	6.05	323,577	12.84	20,727	17.49	79,050	9.83	1,544,543	6.42	2,374,052	3.78
2019년	649,335	1.14	3,284,896	1.06	19,284	2.03	342,602	5.88	24,005	15.82	91,410	15.64	1,658,206	7.36	2,575,709	8.49
2020년	656,538	1.11	3,162,965	△3.71	19,612	1.70	316,608	△7.59	25,480	6.14	97,756	6.94	1,614,470	△2.64	2,487,820	△3.41
2021년	646,022	△1.60	2,924,704	△7.53	19,787	0.89	316,469	△0.04	27,184	0.07	100,189	2.49	1,599,516	△0.93	2,482,473	△0.21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전체 (준)조합원 수에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최근 5년 동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협이 25% 이상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표 III-25> 참조)
 - 농협의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비율은 17.22~19.78% 수준이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협과 신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III -25〉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준)조합원 수 대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 추이

(단위: 명,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2017년	19,555,776	3,867,319	19.78	1,522,075	304,581	20.01	733,648	89,614	12.21	5,698,206	1,451,380	25.47	7,535,582	2,287,550	30.36
2018년	19,893,112	3,892,410	19.57	1,628,467	342,477	21.03	747,073	99,777	13.36	5,892,956	1,544,543	26.21	7,439,291	2,374,052	31.91
2019년	20,224,199	3,934,231	19.45	1,715,693	361,886	21.09	787,174	115,415	14.66	6,132,916	1,658,206	27.04	7,514,123	2,575,709	34.28
2020년	20,499,421	3,819,503	18.63	1,784,302	336,220	18.84	791,010	123,236	15.58	6,223,958	1,614,470	25.94	7,504,490	2,487,820	33.15
2021년	20,735,460	3,570,726	17.22	1,870,778	336,256	17.97	811,979	127,373	15.69	6,395,841	1,599,516	25.01	7,481,250	2,482,473	33.18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예탁금 비교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은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 농협은 매해 5% 이상, 새마을금고는 9% 이상, 산림조합은 11%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예탁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예탁금은 농협이 약 382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는 새마을금고가 215조원, 신협 99조원, 수협 33조원, 산림조합 8조원임

〈표 III-26〉 5개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7년	296,535,404	-	22,931,024	-	4,952,920	-	65,318,717	-	132,247,652	-
2018년	312,688,573	5.45	25,298,393	10.32	5,724,412	15.58	73,235,523	12.12	144,739,301	9.45
2019년	334,448,659	6.96	27,831,140	10.01	6,833,429	19.37	83,050,595	13.40	169,904,696	17.39
2020년	358,540,096	7.20	28,871,358	3.74	7,609,534	11.36	88,455,030	6.51	186,148,042	9.56
2021년	381,967,909	6.53	32,897,221	13.94	8,467,128	11.27	98,586,963	11.45	214,675,347	15.33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산림조합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2019년 이후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농협은 2020년부터 2021년은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2020년 소폭 감소하다 2021년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하였음
 - 전체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농협이 약 50조원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이 가장 적은 약 1조 8천억원임

<표 III-27>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7년	52,389,797	-	5,663,349	-	1,287,251	-	25,037,473	-	40,845,059	-
2018년	54,014,385	3.10	6,190,701	9.31	1,454,793	13.02	26,952,766	7.65	43,142,458	5.62
2019년	56,525,781	4.65	6,682,477	7.94	1,698,445	16.75	29,255,190	8.54	47,839,104	10.89
2020년	53,491,025	△5.37	6,204,701	△7.15	1,737,220	2.28	28,830,047	△1.45	46,848,210	△2.07
2021년	49,639,637	△7.20	6,351,680	2.37	1,773,703	2.10	28,858,650	0.10	47,899,564	2.24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21년 기준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수준을 비교했을 때, 신협이 29.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이 13%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표 III -28〉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율 추이

(단위: 명,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전체	비과세	비율
2017년	296,535,404	52,389,797	17.67	22,931,024	5,663,349	24.70	4,952,920	1,287,251	25.99	65,318,717	25,037,473	38.33	132,247,652	40,845,059	30.89
2018년	312,688,573	54,014,385	17.27	25,298,393	6,190,701	24.47	5,724,412	1,454,793	25.41	73,235,523	26,952,766	36.80	144,739,301	43,142,458	29.81
2019년	334,448,659	56,525,781	16.90	27,831,140	6,682,477	24.01	6,833,429	1,698,445	24.85	83,050,595	29,255,190	35.23	169,904,696	47,839,104	28.16
2020년	358,540,096	53,491,025	14.92	28,871,358	6,204,701	21.49	7,609,534	1,737,220	22.83	88,455,030	28,830,047	32.59	186,148,042	46,848,210	25.17
2021년	381,967,909	49,639,637	13.00	32,897,221	6,351,680	19.31	8,467,128	1,773,703	20.95	98,586,963	28,858,650	29.27	214,675,347	47,899,564	22.31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5개 상호금융기관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비과세 인당 예탁금은 최소 1,406만원(농협)에서 최고 1,855만원(새마을금고) 수준임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인당 예탁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농협, 산림조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2020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모습임

<표 III-29>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인당 예탁금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인당 예탁금	증감률
2017년	13.66	-	18.59	-	14.36	-	17.25	-	17.86	-
2018년	14.00	2.49	18.08	△2.74	14.58	1.53	17.45	1.16	18.17	1.74
2019년	14.49	3.50	18.47	2.16	14.72	0.96	17.64	1.09	18.57	2.20
2020년	14.12	△2.55	18.45	△0.11	14.10	△4.21	17.86	1.25	18.83	1.40
2021년	14.01	△0.78	18.89	2.38	13.93	△1.21	18.04	1.01	19.30	2.50
평균	14.06	-	18.05	-	14.34	-	17.65	-	18.55	-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출자금 비교

-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은 2021년 약 13조 6,190억원, 새마을금고는 약 9조 5,716억원, 신협은 약 6조 4,527억원, 산림조합은 약 3,625억원임
- 수협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20년은 전년 대비 1.6%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출자금은 약 4,669억원 정도임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10% 이상의 출자금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음
- 농협은 매년 5% 이상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협도 2018년에서 2019년은 전년 대비 각각 14.44%, 15.47%의 출자금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표 III -30〉 5개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2017년	10,632,470	-	338,696	-	217,883	-	4,519,506	-	6,221,416	-
2018년	11,330,354	6.56	387,594	14.44	242,577	11.33	4,754,842	5.21	6,544,546	5.19
2019년	11,932,600	5.32	447,544	15.47	275,140	13.42	5,231,811	10.03	7,415,227	13.30
2020년	12,692,288	6.37	440,383	△1.60	313,586	13.97	5,812,205	11.09	8,327,827	12.31
2021년	13,618,962	7.30	466,931	6.03	362,537	15.61	6,452,672	11.02	9,571,615	14.94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농협의 출자금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전체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출자 배당은 증가하였고, 이용고 배당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조합원 1인당 출자 배당은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로 2020년은 약 18만원 정도를 기록하였고, 2021년은 약 16만원 정도임
 - 조합원의 1인당 이용고 배당은 2017년 약 13만원에서 2021년 약 18만원 수준임
 - 준조합원 인원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였고, 1인당 이용고 배당은 약 3천~4천원 정도에 불과함

〈표 III-31〉 농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윤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2017년	19,659,155	302,090	0.0154	366,475	0.0186	2,309,313	302,090	0.1308	314,341	0.1361	17,349,842	52,135	0.0030
2018년	20,053,884	325,526	0.0162	419,864	0.0209	2,297,362	325,526	0.1417	358,465	0.1560	17,756,522	61,400	0.0035
2019년	20,360,312	381,162	0.0187	494,601	0.0243	2,221,711	381,162	0.1716	420,345	0.1892	18,138,601	74,256	0.0041
2020년	20,610,298	395,159	0.0192	480,918	0.0233	2,179,719	395,159	0.1813	404,198	0.1854	18,430,579	76,720	0.0042
2021년	20,845,886	365,128	0.0175	473,745	0.0227	2,178,602	365,128	0.1676	399,543	0.1834	18,667,284	74,202	0.0040

자료: 농협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수협의 출자금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며, 이후 출자 배당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용고 배당은 2021년 소폭 증가하였음
 - 조합원 1인당 출자 배당은 2021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로 2021년은 약 12만 8천원 정도를 기록하였음
 - 조합원의 1인당 이용고 배당은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은 2019년 소폭 감소하여 약 13만 2천원 수준임
 - 준조합원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한 반면, 이용고 배당은 2019년 약 1.18만원 정도로 전년의 약 3.36만원보다 약 65% 정도 감소한 모습임

〈표 III-32〉 수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윤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윤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윤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이윤고 배당	1인당 평균
2017년	122,617	12,008	0.0979	12,583	0.1026	116,446	12,008	0.1031	12,352	0.1061	6,171	231	0.0375
2018년	130,499	14,428	0.1106	16,938	0.1298	122,743	14,428	0.1175	16,677	0.1359	7,756	261	0.0336
2019년	146,968	17,037	0.1159	17,990	0.1224	135,277	17,037	0.1259	17,852	0.1320	11,691	138	0.0118
2020년	129,944	15,128	0.1164	13,747	0.1058	120,025	15,128	0.1260	13,710	0.1142	9,919	37	0.0037
2021년	120,216	14,764	0.1228	15,560	0.1294	115,319	14,764	0.1280	15,458	0.1340	4,897	102	0.0207

자료: 수협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산림조합의 출자금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계속 증가 추세임
 - 조합원 1인당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은 2021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임
 - 2021년 조합원의 1인당 출자 배당은 약 2.5만원, 1인당 이용고 배당은 약 6,600원 수준임
 - 준조합원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한 반면, 이용고 배당은 2017~2018년은 약 700원, 2019~2020년 약 800원, 2021년 약 1,600원에 불과함

〈표 III -33〉 산림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윤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인원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2017년	734,465	5,887	0.0080	1,693	0.0023	404,839	5,887	0.0145	1,453	0.0036	329,626	241	0.0007
2018년	747,970	6,941	0.0093	1,824	0.0024	397,332	6,941	0.0175	1,571	0.0040	350,638	253	0.0007
2019년	769,039	8,081	0.0105	1,888	0.0025	393,855	8,081	0.0205	1,604	0.0041	375,184	284	0.0008
2020년	792,361	8,981	0.0113	2,192	0.0028	396,052	8,981	0.0227	1,879	0.0047	396,309	313	0.0008
2021년	813,539	9,941	0.0122	3,291	0.0040	395,449	9,941	0.0251	2,624	0.0066	418,090	667	0.0016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신협이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으며, 2021년에는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 모두 감소하였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평균 출자 배당은 2.2만원, 2021년 1인당 출자 배당은 1.4만원임
 - 최근 5개 연도 동안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은 1천원 정도임

<표 III-34> 신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2017년	5,887,911	121,362	0.021	6,324	0.001
2018년	6,205,993	137,597	0.022	7,238	0.001
2019년	6,448,492	143,800	0.022	8,096	0.001
2020년	6,602,620	144,659	0.022	9,638	0.001
2021년	6,744,341	97,271	0.014	5,777	0.001

자료: 신협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새마을금고의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으며, 2021년에는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 모두 감소하였음
 - 2021년 1인당 평균 출자 배당은 2.7만원,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은 4천원임
 - 최근 5개 연도 동안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은 3천~5천원에 불과함

<표 III-35>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원	출자 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 배당	1인당 평균
2017년	7,540,644	186,088	0.025	21,937	0.003
2018년	7,444,279	229,310	0.031	27,971	0.004
2019년	7,519,270	249,539	0.033	34,319	0.005
2020년	7,510,723	260,451	0.035	39,910	0.005
2021년	7,487,620	202,377	0.027	29,430	0.004

자료: 새마을금고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세제지원 현황

가. 제도 개요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저율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가 있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저축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도입됨
- 동 제도의 수혜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또는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을 가진 자임
 - 동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새마을금고)를 말함
 - 예탁금의 경우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함(2020. 12. 29. 개정)
- 수혜자는 동 제도에 따라 2022년까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2023년에는 5% 분리과세, 2024년 이후에는 9%로 분리과세하며,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표 III-36〉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개요

항목	근거 조항	적용 기간	수혜 내용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5	~ 2022. 12. 31.	배당소득 등 비과세
		2023.1.1. ~2023. 12. 31.	배당소득 등 5% 분리과세
		2024. 1. 1.~	배당소득 등 9% 분리과세

<표 III-36>의 계속

항목	근거 조항	적용 기간	수혜 내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특법」 제89조의3	~ 2022. 12. 31.	이자소득 비과세
		2023.1.1. ~2023. 12. 31.	이자소득 5%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2024. 1. 1.~	이자소득 9% 분리과세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2. 2. 3.)을 바탕으로 정리함

나. 제도 연혁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2~3년마다 지원 내용 확대 또는 비과세 요건 강화, 적용기한 연장 등의 수차례 개정을 거침
 -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업인 및 서민의 재산형성 및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4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됨
 - 준조합원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
 -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2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1987년 500만원으로 증액, 1992년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1995년 일몰제 도입 이후 2001년부터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다가 2007년에 일몰제를 재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1999. 1. 1.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 12. 31.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특법」 제89조)로 신설
 - 「조특법」 제89조 제2호에 따라 다음의 소득은 2000. 12. 31.까지 취득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로 분리과세됨(주민세는 부과하지 않음)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또는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금

- 1999. 12. 28. 조문명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로 변경하고, 10%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
- 2000. 12. 29. 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 배당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이들은 조합 등의 형태이므로 주식(지분)의 상장·등 록이 불가한데도 이를 비상장·비등 록이라는 이유로 당연 종합과세하기는 곤란하므로 이를 다시 분리하여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 중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서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으로 분리하여 제도를 운영(본조신설 2000. 12. 29.)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여,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여 2001. 1. 1.~2003. 12. 21.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004. 1. 1.~2004. 12. 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5% 세율 적용
 - 또한 동 소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5. 1. 1.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 저축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보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9조, 9%)를 적용

<표 III-37> 조합 등의 비과세 한도 초과 출자금·배당금에 대한 당연 종합과세 제외(2000)

	종 전	개 정
개정 내용	□ 농·수협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 1천만원 초과 출자금 배당금: 당연 종합과세 	□ 농·수협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금: 동일 ○ 1천만원 초과 출자금 배당금: 당연 종합과세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의 경우도 당연 종합과세에서 제외

주: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00 간추린 개정세법』, 2002, p. 231

- 2003. 12. 30.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조특법』 제88조의5)’의 비과세 범위를 확장하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의 과세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합 이용실적 배당금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실비정산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제도 3년 연장

<표 III-38> 조합 등의 이용실적 배당소득 비과세 및 예탁금 과세특례 기한 연장(2003)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 조합원의 조합 이용실적 배당금에 대하여는 당연중합과세 제외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범위 확장)
『조특법』 §89의3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까지 발생소득: 비과세 ○ 2004년: 5% ○ 2005년~: 10% 저율과세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장

주: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03 간추린 개정세법』, 2004, p. 251, p. 253

- 2006. 12. 30.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의 일몰시한을 설정하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음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민, 서민을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실질적인 농·어민, 서민을 위한 저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제한
 - 가입 당시 조합원 요건을 ‘단순 거주자’에서 ‘20세 이상 거주자’로 강화

<표 III-39>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 일몰 신설 및 예탁금 비과세 축소·연장(2006)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input type="checkbox"/>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사업 이용실적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radio"/> 비과세 한도: 1천만원/1인 <input type="radio"/> 일몰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 설정 <input type="radio"/> 일몰설정: 2009. 12. 31.까지 지급분
「조특법」 §89의3	<input type="checkbox"/>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input type="radio"/> 비과세 한도: 2천만원/1인 <input type="radio"/> 가입요건: 조합원·회원 등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2004~2006: 비과세 - 2007: 5% - 2008~: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되, 가입요건 강화 <input type="radio"/> 가입요건: 20세 이상 요건 추가 <input type="radio"/> 지원내용 - 2007~2009: 비과세 - 2010: 5% 분리과세 - 2011~: 9% 분리과세

주: 「조특법」 §89의3는 200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06 간추린 개정세법』, 2007, p. 328, p. 349

- 2008. 12. 26.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었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확대됨
 - 중산·서민금융기관의 자금 확충을 통한 중산·서민층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예탁금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기간을 2009. 12. 31.에서 2012. 12. 31.로 3년 연장

<표 III-40>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 확대 등(2008)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radio"/> 한도: 출자금 1천만원 <input type="radio"/> 일몰: 2009.12.31.까지 지급분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radio"/> 일몰: 2012.12.31. (3년 연장)
「조특법」 §89의3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등 <input type="radio"/> 한도: 1인당 2천만원 <input type="radio"/> 일몰(발생소득을 기준으로) - ~2009. 12. 31.: 비과세 - 2010: 5% 과세 - 2011. 1. 1.~: 9% 과세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등 <input type="radio"/> 한도: 1인당 3천만원 <input type="radio"/> 일몰(비과세기간 3년 연장) ¹⁾ - ~2012. 12. 31.: 비과세 - 2013: 5% 과세 - 2014. 1. 1.~: 9% 과세

주: 1.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단, 농특세 폐지 시 농특세가 소득세에 통합되어 부과될 예정(아래 내용은 농특세 통합분 미고려)
 자료: 기획재정부, 『2008 간추린 개정세법』, 2009, p. 324

□ 2010. 1. 1.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시 면제해주는 ‘주민세’의 명칭이 ‘지방소득세소득분’으로 변경됨

□ 2013. 1. 1.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됨

<표 III-4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13)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012. 12. 31.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015. 12. 31.(3년 연장)
「조특법」 §89의3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012. 12. 31. - 2013: 5% 저율 분리과세 - 2014~: 9% 저율 분리과세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012. 12. 31.(3년 연장) - 2016: 5% 저율 분리과세 - 2017~: 9% 저율 분리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p. 94

□ 2014. 1. 1.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용어 변경

□ 2015. 12. 15.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조특법」 제89조의3)’ 제도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 제도를 동일하게 재설계하고,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제도의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함

<표 III-4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15)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혜택: 1천만원/1인당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 비과세 ○ 적용기한: 2015. 12. 31.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 적용기한: 「조특법」 §89의 3과 동일하게 재설계 - ~2018. 12. 31.: 비과세 - ~2019. 12. 31.: 5% 분리과세 - 2020. 1. 1.~: 9% 분리과세

<표 III-42>의 계속

	종 전	개 정
「조특법」 §89의3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input type="checkbox"/> 혜택: 3천만원/1인당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5. 12. 31.: 비과세 - ~2016. 12. 31.: 5% 분리과세 - 2017. 1. 1.~: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3년 연장) - ~2018. 12. 31.: 비과세 - ~2019. 12. 31.: 5% 분리과세 - 2020. 1. 1.~: 9% 분리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2015 간추린 개정세법』, 2016, pp. 219~220

- 2018. 12. 24. 농어민,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축 지속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과 함께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됨⁹⁾
 - 대상자: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소득발생기간에 따른 적용기한 (개정)
 - 2020. 12. 31.까지: 비과세
 - 2021. 1. 1.~2021. 12. 31.: 5% 분리과세
 - 2022. 1. 1.부터: 9% 분리과세

- 2020. 12. 29.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요건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 거주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강화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조특법」 제129조의2)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해당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9) 기획재정부,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 2021, p. 300

<표 III-4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20)

	종 전	개 정
「조특법」 §88의5 및 「조특법」 §89의3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 2020. 12. 31. <input type="checkbox"/>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 12. 31.(2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2020 간추린 개정세법』, 2021, p. 300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조특법」 제129조의2)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자산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특례적용을 제한하기 위함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아래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7③)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7의2)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7)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2)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5)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89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8)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 89조의3) 주요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44>와 같음

<표 III-4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제도 연혁

개정일자	주요 변경사항										
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특법」 §89)로 신설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2000.12.31.까지 취득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로 분리과세(주민세 미부과) 										
199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조문명 변경) ○ 10%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혜택을 제공 										
200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8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조특법」 §89의3)’로 분리하여 제도 신설 ○ 1천만원 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연 종합과세를 제외함(이전까지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었음) <table border="1" data-bbox="459 920 1342 113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발생기간</th> <th style="width: 40%;">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width: 40%;">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2001~2003</td> <td rowspan="3">비과세</td> <td>비과세</td> </tr> <tr> <td>2004</td> <td>5%</td> </tr> <tr> <td>2005~</td> <td>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1~2003	비과세	비과세	2004	5%	2005~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1~2003	비과세	비과세									
2004		5%									
2005~		9%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 기한 연장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조합원의 조합 이용실적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확대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 기한 연장(3년) <table border="1" data-bbox="459 1368 1342 158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발생기간</th> <th style="width: 40%;">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width: 40%;">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2004~2006</td> <td rowspan="3">비과세</td> <td>비과세</td> </tr> <tr> <td>2007</td> <td>5%</td> </tr> <tr> <td>2008~</td> <td>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4~2006	비과세	비과세	2007	5%	2008~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4~2006	비과세	비과세									
2007		5%									
2008~		9%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설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요건 강화, 적용기한 연장(3년)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대상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 거주자로 강화 <table border="1" data-bbox="459 1771 1342 198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발생기간</th> <th style="width: 40%;">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width: 40%;">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2007~2009</td> <td rowspan="3">비과세 (일몰: 2009. 12. 31.)</td> <td>비과세</td> </tr> <tr> <td>2010</td> <td>5%</td> </tr> <tr> <td>2011~</td> <td>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7~2009	비과세 (일몰: 2009. 12. 31.)	비과세	2010	5%	2011~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2천만원/1인)									
2007~2009	비과세 (일몰: 2009. 12. 31.)	비과세									
2010		5%									
2011~		9%									

<표 III-44>의 계속

개정일자	주요 변경사항												
2008. 12. 26.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및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한도 확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0~201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 (일몰: 2012. 12. 31.)</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3</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4~</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0~2012	비과세 (일몰: 2012. 12. 31.)	비과세	2013	5%	2014~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0~2012	비과세 (일몰: 2012. 12. 31.)	비과세											
2013		5%											
2014~		9%											
2013. 1. 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3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3~20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 (일몰: 2015. 12. 31.)</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3~2015	비과세 (일몰: 2015. 12. 31.)	비과세	2016	5%	2017~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3~2015	비과세 (일몰: 2015. 12. 31.)	비과세											
2016		5%											
2017~		9%											
2015. 12. 15.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두 제도를 동일하게 재설계하고, 적용기한 연장(3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2018</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9</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0~</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6~2018	비과세		2019	5%		2020~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6~2018	비과세												
2019	5%												
2020~	9%												
2018. 12. 24.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2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9~2020</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9~2020	비과세		2021	5%		2022~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19~2020	비과세												
2021	5%												
2022~	9%												
2020. 12. 29.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 19세 이상 거주자로 강화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2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발생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2022</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 신설(『조특법』 §129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접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과세특례 배제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21~2022	비과세		2023	5%		2024~	9%	
발생기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천만원/1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3천만원/1인)											
2021~2022	비과세												
2023	5%												
2024~	9%												

자료: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조세지출 규모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2011년 실적자료 기준으로 조세 지출금액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등 지출금액이 큰 편이었으나,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조세지출항목 중 금융지원 항목에서 여전히 제일 큰 규모임

〈표 III-45〉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망)	2022 (전망)
소득세	5,665	7,943	8,935	8,943	7,666	5,673	5,521	5,926	5,859	4,863	4,142	4,601

자료: 2013년~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해당 항목의 규모를 발췌하여 정리함

IV.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IV.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 설문조사의 목적

-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출자금이나 예탁금이 있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식, 가입 당시의 상황, 가상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 등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실제 조세지출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직접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이지만 출자금과 예탁금이 있는 가입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과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의 개요: 설문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됨

- 소득, 자산, 지출을 포함하는 응답자 개인 특성
-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 현황
-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상황
-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
- 출자금과 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축 행태의 변화 가능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행태

2. 표본의 성격

□ 표본은 예탁금·출자금을 불입한 가입자 603명으로 구성됨

- 표본 중 농협 300명, 신협 152명, 새마을금고 151명인므로 동시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개인 대면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함

□ 응답자의 개인 특성은 <표 IV-1>에 요약되어 있음

- 표본 수를 감안하여 지역 정보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제시함
-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이 약 44.3%로 실제 인구분포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으로 표집되었으며, 충청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경남/강원 등에서는 실제 인구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으로 표집되었음¹⁰⁾
- 농협의 경우는 조합원이 113명, 준조합원이 204명으로 준조합원이 더 높은 비중(64.4%)을 차지하며 신협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이고(85.5%) 새마을금고 역시 대부분 지역가입자임(90.4%)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수로 분포됨
-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약 20%, 40~59세가 40%, 만 60세 이상이 약 40%로 고른 분포가 형성됨
- 학력은 고졸이 절반을 약간 넘으며 대졸 이상은 40.5%, 중졸 이하는 8.8%를 차지함

<표 IV-1> 최종 표본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조합별	농협	317	52.6	
	신협	165	27.4	
	새마을금고	166	27.5	
유형별	지역농협	조합원	113	18.7
		준조합원	204	33.8
	신협	지역	141	23.4
		직장	23	3.8
		단체	4	0.7
	새마을금고	지역	150	24.9
직장		17	2.8	

10) 2021년 현재 권역별 인구비중은 수도권 50.5%, 부산/울산/경남이 15.0%, 충청권이 10.8%, 호남권이 9.8%, 대구/경북이 9.7%, 강원이 3.0%, 제주가 1.3%임. 제주도는 표본에서 제외.

<표 IV-1>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성 별	남자	302	50.1
	여자	301	49.9
연 령	만 19~39세	120	19.9
	만 40~59세	239	39.6
	만 60세 이상	244	40.5
거주지역	서울	67	11.1
	경기/인천	140	23.2
	대전/충청	88	14.6
	광주/전라	89	14.8
	대구/경북	85	14.1
	부산/울산/경남	109	18.1
	강원	25	4.1
학 력	중졸 이하	53	8.8
	고졸	306	50.7
	대졸 이상	244	40.5

□ 또한 응답자의 소득 및 지출과 분포는 <표 IV-2>와 같음

- 응답자의 개인 월평균 소득은 월 300만원 이하가 21%, 300만~500만원 사이가 37%, 500만원 이상이 42% 정도로 4년전 조사에 비해 300만원 이하 소득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500만원 이상 소득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였음
- 이하의 분석에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중간 기준소득으로 하여 그 이하를 저소득, 그 이상을 고소득으로 정의하기로 함
- 월지출의 분포는 소득의 분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서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이 약 21%인 데 비해 월지출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약 60%에 이르고 있음
- 가구의 저축은 소득의 10~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약 70%를 차지하며 나머지 30% 중에서는 10%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과 30% 이상을 저축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저축이나 자산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무응답자를 제외한 568명의 응답자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약 28.4%,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이 약 22.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9.4%, 1억원 초과는 약 14.3%로 대부분의 가구가 금융자산이 1억원 미만이었음
 - 무응답자의 소득이 응답자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무응답자들은 응답자들에 비해 자산이 낮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무응답자를 제외한 519명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는 총자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이 3.7%, 1억~2억원 사이가 9.6%, 2억~3억원 미만이 18.1%, 3억~5억원이 23.4%, 5억원 이상이 31.3%로 5억원 이상이 높은 비중을 보임
 - 지난 심층평가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금융자산 분포는 유사하지만 전체 자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산에 있어 측정 오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자산 분포의 상향 이동은 주로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2〉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	0.7
	100만~300만원 미만	121	20.1
	300만~500만원 미만	220	36.5
	500만~700만원 미만	171	28.4
	700만~1,000만원 미만	64	10.6
	1,000만원 이상	20	3.3
	모름/무응답	3	0.5
가구 월평균 지출	100만원 미만	21	3.5
	100만~300만원 미만	341	56.6
	300만~500만원 미만	194	32.2
	500만원 이상	43	7.1
	모름/무응답	4	0.7

<표 IV-2>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가구 월평균 저축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102	16.9
	월평균 소득의 10~20% 미만	244	40.5
	월평균 소득의 20~30% 미만	173	28.7
	월평균 소득의 30~40% 미만	61	10.1
	월평균 소득의 40~50% 미만	15	2.5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	5	0.8
	모름/무응답	3	0.5
금융자산	3,000만원 이하	171	28.4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4	22.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77	29.4
	1억원 초과	86	14.3
	무응답	35	5.8
총자산	1억 이하	22	3.7
	1억 초과 2억 이하	58	9.6
	2억 초과 3억 이하	109	18.1
	3억 초과 5억 이하	141	23.4
	5억 이상	189	31.3
	무응답	84	13.9

3. 설문분석의 결과

가. 응답자들의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 현황

-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출자금 가입금액의 평균은 농협이 약 667만원, 신협이 약 618만원, 새마을금고가 약 444만원임
 - 최댓값은 약 1억원 내외이지만 중간값은 농협이 100만원, 신협이 25만원, 새마을금고가 20만원으로 대부분 출자금은 소액이라고 볼 수 있음
 - 비과세 출자금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자한 비중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거의 유사하게 약 10%가량임

- 비과세 출자한도인 1,000만원을 넘는 출자자의 비중은 2018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아졌음(2018년 조사 시 4.5%)
- 출자금액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금액은 약 18%가 되는 10만원(106건)이며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금액은 5만원(78건), 1,000만원과 100만원(57건), 500만원(56건) 순임

<표 IV-3>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출자금	농협	666.6	1,582.7	1	100	15,000
	신협	617.9	1,614.3	1	25	12,000
	새마을금고	444.3	1,008.4	1	20	9,000

□ 출자금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 회귀분석은 전체 표본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별로 나눈 3개의 표본 등 4개 표본에 대해 실행함
-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출자금의 자연대수로, 표본에 속한 모든 응답자들이 최소 만원 이상 출자하고 있음
- 설명변수로는 수도권 더미, 동더미, 3단계로 나눈 소득계층(월소득의 구분은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300만~500만원은 중간소득, 500만원 이상은 고소득으로 분류함), 가입자의 연령, 가입한 기간, 대졸 더미변수 등이며 농협의 경우는 준조합원 더미변수도 포함함
- 전체 표본을 보면 거주지가 “동”인 경우 출자금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출자금이 많으며 대졸자의 출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협 표본에서도 동 거주자의 출자금이 많았으며 대졸자들의 출자금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조합원의 경우는 출자금(가입금)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협의 경우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출자금이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수준의 출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은 출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 새마을금고도 고소득층의 출자금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출자금이 많은

현상이 다른 기관보다 강하게 나타났지만 가입기간과 출자금 사이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출자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심층평가에서 발견한 것과는 다른 결과임
- 농협의 경우 소득에 따른 출자금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과 차이를 보임

<표 IV-4> 출자금액 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도권	-0.217 (0.238)	-0.414 (0.320)	0.291 (0.447)	-0.442 (0.452)
동 부	0.475** (0.240)	0.880*** (0.328)	-0.154 (0.467)	0.0191 (0.436)
중간소득	0.401 (0.273)	0.444 (0.359)	-0.0407 (0.518)	0.810 (0.524)
고소득	1.331*** (0.404)	0.626 (0.540)	2.004*** (0.739)	2.215*** (0.819)
연령	0.0351*** (0.0101)	0.0254* (0.0138)	0.0289 (0.0190)	0.0663*** (0.0197)
가입기간	-0.00840 (0.0138)	-0.00183 (0.0171)	-0.0203 (0.0278)	-0.0829*** (0.0257)
대출	0.559** (0.266)	1.024*** (0.365)	0.491 (0.486)	-0.212 (0.545)
준조합원	- (-)	-2.033*** (0.295)	- (-)	- (-)
관측치 수	600	317	164	164
R-squared	0.058	0.185	0.104	0.138

주: 1. 종속변수는 출자금의 자연대수 값임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예탁금 가입 현황

- 농협은 317명의 응답자 중 247명이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은 약 2,100만원 이고 이 중 비과세 예탁금의 평균은 1,577만원, 과세 예탁금의 평균은 523만원으로 나타남
- 신협은 165명의 응답자 중 137명이 예탁을 하고 있으며 평균은 농협과 유사한 2,137만원이고 비과세 예탁금의 평균은 1,531만원, 과세 예탁금은 606만원임

- 새마을금고의 경우 166명의 응답자 중 131명이 예탁금액을 제시하였으며 평균은 약 1,919만원, 비과세 예탁금의 평균은 1,452만원, 과세 예탁금은 467만원임
- 예탁금에 가입한 응답자의 비중이나 기관별 예탁금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V-5> 예탁금 가입 현황(전체 응답자)

(단위: 명,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농협 (317)	총예탁금	2,100.7	2,421.6	0	15,000
	비과세 예탁금	1,577.3	1,509.6	0	10,000
	과세 예탁금	523.4	1,496.8	0	12,000
신협 (165)	총예탁금	2,137.2	3,186.0	0	33,000
	비과세 예탁금	1,531.2	1,447.0	0	8,000
	과세 예탁금	606.1	2,553.7	0	30,000
새마을금고 (166)	총예탁금	1,919.8	2,648.4	0	25,000
	비과세 예탁금	1,452.3	1,326.0	0	5,000
	과세 예탁금	467.4	1,839.0	0	20,000

□ 가입자들만으로 본 예탁금 가입 현황

- 농협의 예탁금 평균은 약 2,696만원이며 237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평균과 77명의 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평균은 각각 약 2,110만원과 2,15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신협의 예탁금 평균은 약 2,574만원으로 130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평균 예탁금액은 약 1,943만원이며 42명의 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평균금액은 약 2,381만원으로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가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평균은 2,433만원이며 129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가입액 평균은 약 1,869만원이고 34명의 과세 예탁금 가입자 평균은 약 2,282만원임
- 기관 간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과세 예탁금액이 과세 예탁금에 비해 약간 낮은 것에서도 각 기관이 유사성을 보임

<표 IV-6> 예탁금 가입 현황(예탁금 > 0)

(단위: 명, 만원)

구 분	가입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농협 (317)	총예탁금	247	2,696.1	2433.3	5	15,000
	비과세 예탁금	237	2,109.7	1,386.8	5	10,000
	과세 예탁금	77	2,154.9	2,398.6	20	12,000
신협 (165)	총예탁금	137	2,574.0	3,333.0	3	33,000
	비과세 예탁금	130	1,943.4	1,361.87	3	8,000
	과세 예탁금	42	2,381.0	4,664.5	150	30,000
새마을금고 (166)	총예탁금	131	2,432.7	2,765.0	30	25,000
	비과세 예탁금	129	1,868.9	1,217.3	20	5,000
	과세 예탁금	34	2,282.1	3,555.8	20	20,000

□ 예탁금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 회귀분석은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예탁금의 자연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표본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별로 나눈 3개의 표본 등 4개 표본에 대해 실행함
- 예탁금액에서 지역 차이는 주로 농협에서 기인하는데 농협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예탁금액이 36%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른 예탁금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지난 심층평가에서와 동일한 현상임
- 신협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탁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
- 신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대졸자들의 예탁금액이 큰 경향이 다른 기관에 비해 뚜렷함

<표 IV-7> 예탁금액 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도권	0.295** (0.116)	0.364** (0.151)	0.0692 (0.257)	0.0884 (0.213)
동 부	-0.134 (0.124)	-0.0469 (0.162)	-0.426 (0.281)	-0.0103 (0.212)
중간소득	0.190 (0.141)	0.255 (0.173)	0.231 (0.320)	0.118 (0.267)
고소득	0.127 (0.206)	0.156 (0.263)	-0.00959 (0.450)	0.465 (0.397)

<표 IV-7>의 계속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연령	0.00886* (0.00524)	0.0153** (0.00691)	-0.00591 (0.0112)	0.0212** (0.00996)
가입기간	0.0253*** (0.00690)	0.0121 (0.00824)	0.0531*** (0.0165)	-0.0143 (0.0123)
대출	0.314** (0.136)	0.225 (0.175)	0.517* (0.293)	0.223 (0.272)
준조합원	- (-)	-0.139 (0.140)	- (-)	- (-)
관측치 수	480	247	136	129
R-squared	0.085	0.104	0.120	0.080

주: 1. 종속변수는 출자금의 자연대수 값임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농협 조합원 중 가입요건

- 농협 조합원 응답자 113명 중에는 지역농협을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중(약 63%)을 차지함
- 이외에도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응답자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조합원 응답자들은 지역 거주자이거나 농림업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음

<표 IV-8>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71	62.8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34	30.1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2.7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1.8
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	1	0.9
모름/무응답	2	1.8
계	113	100.0

□ 농협 준조합원의 가입요건 충족 현황

- 204명의 준조합원 응답자의 약 70%는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임

- 준조합원 중 자영업자도 17.6%로 지난 심층평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 회사원은 약 10%이며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는 소수의 응답자도 있었음

<표 IV-9>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141	69.1
자영업	36	17.6
회사원	20	9.8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다	5	2.5
공무원	1	0.5
모름/무응답	1	0.5
계	204	100.0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
 - 지난 심층평가와 동일하게 출자금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
 - 절세효과, 조세회피, 비과세 혜택 인지 여부 등임
 - 이하에 제시되는 모든 표에서 숫자 1, 2, 3, 4, 5는 차례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를 의미함
-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체로 2% 정도로 지난 심층평가에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
 - 조합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 학력별, 소득별 차이도 거의 없었음
 - 전반적으로 이전 심층평가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증가함(평균 3.72 대 3.9)

<표 IV-10>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2.0	19.6	64.0	14.4	603	3.9	
조합	농협	0.0	2.0	20.3	63.7	14.0	300	3.9
	신협	0.0	1.3	21.1	63.2	14.5	152	3.9
	새마을금고	0.0	2.6	16.6	65.6	15.2	151	3.9
성	남자	0.0	1.3	18.9	66.4	13.3	301	3.9
	여자	0.0	2.6	20.2	61.6	15.6	302	3.9
연령	19~39세	0.0	2.5	20.8	64.2	12.5	120	3.9
	40~59세	0.0	1.7	21.8	61.1	15.5	239	3.9
	60세 이상	0.0	2.0	16.8	66.8	14.3	244	3.9
권역	서울	0.0	4.5	19.4	65.7	10.4	67	3.8
	경기/인천	0.0	2.1	25.0	59.3	13.6	140	3.8
	대전/충청	0.0	0.0	18.2	62.5	19.3	88	4.0
	광주/전라	0.0	2.2	20.2	71.9	5.6	89	3.8
	대구/경북	0.0	2.4	20.0	65.9	11.8	85	3.9
	부산/울산/경남	0.0	0.0	11.0	63.3	25.7	109	4.1
	강원	0.0	8.0	28.0	60.0	4.0	25	3.6
학력	중졸 이하	0.0	3.8	18.9	62.3	15.1	53	3.9
	고졸	0.0	1.6	21.2	64.4	12.7	306	3.9
	전문대졸 이상	0.0	2.0	17.6	63.9	16.4	244	3.9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0.8	22.4	64.8	12.0	125	3.9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3.2	20.5	60.0	16.4	220	3.9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2.3	21.6	63.7	12.3	171	3.9
	700만원 이상	0.0	0.0	9.5	73.8	16.7	84	4.1
	모름/무응답	0.0	0.0	0.0	66.7	33.3	3	4.3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음(3.78 대 3.9)

<표 IV-11>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3.8	18.9	55.9	21.4	603	3.9	
조합	농협	0.0	2.0	17.7	58.3	22.0	300	4.0
	신협	0.0	5.9	19.7	55.3	19.1	152	3.9
	새마을금고	0.0	5.3	20.5	51.7	22.5	151	3.9
성	남자	0.0	4.7	17.9	55.1	22.3	301	4.0
	여자	0.0	3.0	19.9	56.6	20.5	302	3.9
연령	19~39세	0.0	4.2	20.0	59.2	16.7	120	3.9
	40~59세	0.0	3.8	19.7	54.4	22.2	239	4.0
	60세 이상	0.0	3.7	17.6	55.7	23.0	244	4.0
권역	서울	0.0	6.0	13.4	58.2	22.4	67	4.0
	경기/인천	0.0	0.0	11.4	70.7	17.9	140	4.1
	대전/충청	0.0	0.0	23.9	59.1	17.0	88	3.9
	광주/전라	0.0	11.2	13.5	46.1	29.2	89	3.9
	대구/경북	0.0	3.5	24.7	57.6	14.1	85	3.8
	부산/울산/경남	0.0	2.8	25.7	39.4	32.1	109	4.0
	강원	0.0	12.0	28.0	56.0	4.0	25	3.5
학력	중졸 이하	0.0	1.9	18.9	56.6	22.6	53	4.0
	고졸	0.0	4.6	18.3	54.6	22.5	306	4.0
	전문대졸 이상	0.0	3.3	19.7	57.4	19.7	244	3.9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4.0	24.0	53.6	18.4	125	3.9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3.6	19.5	53.2	23.6	220	4.0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5.3	15.8	58.5	20.5	171	3.9
	700만원 이상	0.0	1.2	16.7	59.5	22.6	84	4.0
	모름/무응답	0.0	0.0	0.0	100.0	0.0	3	4.0

-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은 사례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 조합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 및 자산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
 - 표본이 작기는 하지만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세회피 사례가 없다는 반

응이 많았는데 강원지역의 응답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이전의 설문 조사와 동일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함

-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이전 심층평가와 큰 차이가 없음(3.5 대 3.34)

<표 IV-12>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0	13.6	32.8	37.5	15.1	603	3.5	
조합	농협	0.7	13.3	32.3	37.7	16.0	300	3.6
	신협	1.3	20.4	31.6	31.6	15.1	152	3.4
	새마을금고	1.3	7.3	35.1	43.0	13.2	151	3.6
성	남자	2.0	12.6	33.2	38.2	14.0	301	3.5
	여자	0.0	14.6	32.5	36.8	16.2	302	3.5
연령	19~39세	0.0	13.3	38.3	33.3	15.0	120	3.5
	40~59세	1.3	13.0	32.6	37.2	15.9	239	3.5
	60세 이상	1.2	14.3	30.3	39.8	14.3	244	3.5
권역	서울	0.0	26.9	43.3	29.9	0.0	67	3.0
	경기/인천	0.7	7.9	39.3	46.4	5.7	140	3.5
	대전/충청	0.0	9.1	30.7	36.4	23.9	88	3.8
	광주/전라	0.0	12.4	33.7	34.8	19.1	89	3.6
	대구/경북	3.5	12.9	27.1	34.1	22.4	85	3.6
	부산/울산/경남	0.9	6.4	27.5	41.3	23.9	109	3.8
	강원	4.0	64.0	16.0	16.0	0.0	25	2.4
학력	중졸 이하	1.9	17.0	30.2	39.6	11.3	53	3.4
	고졸	1.6	13.1	31.0	37.6	16.7	306	3.5
	전문대졸 이상	0.0	13.5	35.7	36.9	13.9	244	3.5
월평균	300만원 미만	0.8	20.8	27.2	38.4	12.8	125	3.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10.0	30.9	40.5	18.2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8	12.9	35.7	35.1	14.6	171	3.5
	700만원 이상	1.2	14.3	39.3	34.5	10.7	84	3.4
	모름/무응답	0.0	0.0	66.7	0.0	33.3	3	3.7

□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인지 여부

- 질문은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였으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즉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음
-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서울과 강원 지역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지난 심층평가에 비해 더 많은 응답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반응을 보임(3.7 대 3.52)

<표 IV-13>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8	8.6	23.4	56.4	10.8	603	3.7	
조합	농협	1.0	8.3	25.0	55.0	10.7	300	3.7
	신협	0.0	9.2	21.7	58.6	10.5	152	3.7
	새마을금고	1.3	8.6	21.9	57.0	11.3	151	3.7
성	남자	0.7	7.0	24.3	58.1	10.0	301	3.7
	여자	1.0	10.3	22.5	54.6	11.6	302	3.7
연령	19~39세	0.0	10.0	21.7	60.0	8.3	120	3.7
	40~59세	0.4	10.5	23.0	54.4	11.7	239	3.7
	60세 이상	1.6	6.1	24.6	56.6	11.1	244	3.7
지역	서울	1.5	20.9	20.9	49.3	7.5	67	3.4
	경기/인천	0.0	2.9	36.4	50.7	10.0	140	3.7
	대전/충청	0.0	3.4	12.5	69.3	14.8	88	4.0
	광주/전라	0.0	3.4	23.6	66.3	6.7	89	3.8
	대구/경북	4.7	15.3	20.0	47.1	12.9	85	3.5
	부산/울산/경남	0.0	2.8	18.3	64.2	14.7	109	3.9
	강원	0.0	48.0	28.0	24.0	0.0	25	2.8
학력	중졸 이하	3.8	5.7	24.5	56.6	9.4	53	3.6
	고졸	1.0	5.9	23.5	59.2	10.5	306	3.7
	전문대졸 이상	0.0	12.7	23.0	52.9	11.5	244	3.6
월평균	300만원 미만	2.4	10.4	23.2	56.0	8.0	125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8.2	25.0	53.6	12.7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6	7.6	22.2	59.6	9.9	171	3.7
	700만원 이상	0.0	8.3	21.4	58.3	11.9	84	3.7
	모름/무응답	0.0	33.3	33.3	33.3	0.0	3	3.0

□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한다는 인식

- 대체로 고소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다른 인식관련 응답과 마찬가지로 강원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음
- 이전의 심층평가와 차이는 크지 않음

<표 IV-14>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1.8	29.0	61.7	7.5	603	3.7	
조합	농협	0.0	1.7	30.7	60.7	7.0	300	3.7
	신협	0.0	2.0	27.6	62.5	7.9	152	3.8
	새마을금고	0.0	2.0	27.2	62.9	7.9	151	3.8
성	남자	0.0	2.0	28.6	61.5	8.0	301	3.8
	여자	0.0	1.7	29.5	61.9	7.0	302	3.7
연령	19~39세	0.0	1.7	25.8	64.2	8.3	120	3.8
	40~59세	0.0	2.1	29.7	60.3	7.9	239	3.7
	60세 이상	0.0	1.6	29.9	61.9	6.6	244	3.7
권역	서울	0.0	0.0	26.9	70.1	3.0	67	3.8
	경기/인천	0.0	0.0	35.0	60.0	5.0	140	3.7
	대전/충청	0.0	0.0	21.6	65.9	12.5	88	3.9
	광주/전라	0.0	1.1	38.2	53.9	6.7	89	3.7
	대구/경북	0.0	0.0	18.8	74.1	7.1	85	3.9
	부산/울산/경남	0.0	5.5	27.5	55.0	11.9	109	3.7
	강원	0.0	16.0	36.0	48.0	0.0	25	3.3
학력	중졸 이하	0.0	0.0	24.5	73.6	1.9	53	3.8
	고졸	0.0	1.0	33.3	56.2	9.5	306	3.7
	전문대졸 이상	0.0	3.3	24.6	66.0	6.1	244	3.8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2.4	32.8	60.0	4.8	125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3.2	29.1	58.2	9.5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0.0	31.6	59.6	8.8	171	3.8
	700만원 이상	0.0	1.2	17.9	77.4	3.6	84	3.8
	모름/무응답	0.0	0.0	33.3	66.7	0.0	3	3.7

□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단순평균으로 보면 인식에는 집단이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인식의 차이를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이를 감안하여 5단계 척도 설문문항 분석에 적합한 순위 프로빗(ordered-probit) 분석을 실시해 봄
-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과 인식이 다른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낮으며, 편법 이용자가 있다는 인식을 덜 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고소득자들이 이용한다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편법 이용자가 많으며 비과세 혜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소득자가 예탁상품을 이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대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입기간이 길수록 특정 계층을 지원한다거나 고소득자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절세효과 뛰어남	특정계층 지원	편법 이용	비과세 혜택 비인지	고소득자 이용
농협	0.0346 (0.112)	0.109 (0.109)	0.00710 (0.105)	-0.0322 (0.108)	0.0518 (0.112)
신협	0.0606 (0.121)	-0.0340 (0.117)	-0.199* (0.113)	-0.00931 (0.117)	0.119 (0.122)
수도권	-0.378*** (0.107)	0.0912 (0.104)	-0.396*** (0.100)	-0.342*** (0.103)	-0.184* (0.107)
동 부	0.327*** (0.108)	0.145 (0.104)	0.235** (0.101)	0.377*** (0.105)	0.114 (0.108)
중간소득	0.0336 (0.122)	0.206* (0.118)	0.205* (0.114)	0.202* (0.118)	0.206* (0.123)
고소득	0.397** (0.182)	0.278 (0.176)	0.0980 (0.169)	0.392** (0.176)	0.446** (0.184)
연령	0.00474 (0.00452)	0.00112 (0.00439)	0.00143 (0.00424)	-0.00626 (0.00438)	-0.00694 (0.00456)
가입기간	0.00169 (0.00643)	0.0143** (0.00627)	-0.00551 (0.00600)	0.00188 (0.00614)	0.0131** (0.00647)
대졸	0.190 (0.120)	-0.0272 (0.115)	-0.0414 (0.112)	-0.316*** (0.116)	-0.130 (0.120)

주: 1. 관측치 수는 600개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인식

□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가입한 이유인 경우

- 질문 항목은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가 많았음
-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응답의 비중이 다소 낮음
- 2018년에 비해서는 이러한 ‘그렇다’ 응답의 비중이 높아졌음(3.7 대 3.44)

<표 IV-16>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7.6	26.7	55.4	10.1	603	3.7	
조합	농협	0.0	7.3	28.7	53.0	11.0	300	3.7
	신협	0.0	9.9	25.7	55.9	8.6	152	3.6
	새마을금고	0.7	6.0	23.8	59.6	9.9	151	3.7
성	남자	0.3	6.3	30.2	53.5	9.6	301	3.7
	여자	0.0	8.9	23.2	57.3	10.6	302	3.7
연령	19~39세	0.0	10.0	26.7	55.0	8.3	120	3.6
	40~59세	0.4	9.6	26.4	53.6	10.0	239	3.6
	60세 이상	0.0	4.5	27.0	57.4	11.1	244	3.8
권역	서울	1.5	19.4	31.3	44.8	3.0	67	3.3
	경기/인천	0.0	2.9	20.7	63.6	12.9	140	3.9
	대전/충청	0.0	1.1	36.4	44.3	18.2	88	3.8
	광주/전라	0.0	3.4	27.0	64.0	5.6	89	3.7
	대구/경북	0.0	9.4	32.9	56.5	1.2	85	3.5
	부산/울산/경남	0.0	8.3	19.3	55.0	17.4	109	3.8
	강원	0.0	32.0	24.0	44.0	0.0	25	3.1
학력	중졸 이하	0.0	5.7	28.3	52.8	13.2	53	3.7
	고졸	0.3	5.6	30.7	52.9	10.5	306	3.7
	전문대졸 이상	0.0	10.7	21.3	59.0	9.0	244	3.7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7.2	25.6	56.8	10.4	125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7.3	26.8	53.2	12.3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6.4	32.2	53.8	7.6	171	3.6
	700만원 이상	0.0	10.7	16.7	64.3	8.3	84	3.7
	모름/무응답	0.0	33.3	33.3	0.0	33.3	3	3.3

□ 조합 가입의 이유는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

- 조합별, 학력별, 소득별로 큰 차이 없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음
- 2018년 심층평가의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강원이나 전라지역에서만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긍정적 응답의 비중은 지난 심층평가의 조사보다 높아졌음(3.9 대 3.66)

<표 IV-17> “조합 가입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2.8	21.6	56.1	19.6	603	3.9	
조합	농협	0.0	1.7	20.3	55.0	23.0	300	4.0
	신협	0.0	4.6	24.3	57.2	13.8	152	3.8
	새마을금고	0.0	3.3	21.2	57.0	18.5	151	3.9
성	남자	0.0	2.0	19.6	58.8	19.6	301	4.0
	여자	0.0	3.6	23.5	53.3	19.5	302	3.9
연령	19~39세	0.0	5.0	21.7	55.0	18.3	120	3.9
	40~59세	0.0	2.5	20.1	58.2	19.2	239	3.9
	60세 이상	0.0	2.0	23.0	54.5	20.5	244	3.9
지역	서울	0.0	1.5	11.9	74.6	11.9	67	4.0
	경기/인천	0.0	0.0	20.7	62.1	17.1	140	4.0
	대전/충청	0.0	0.0	15.9	63.6	20.5	88	4.0
	광주/전라	0.0	11.2	23.6	47.2	18.0	89	3.7
	대구/경북	0.0	2.4	29.4	48.2	20.0	85	3.9
	부산/울산/경남	0.0	1.8	24.8	41.3	32.1	109	4.0
	강원	0.0	8.0	24.0	68.0	0.0	25	3.6
학력	중졸 이하	0.0	1.9	24.5	50.9	22.6	53	3.9
	고졸	0.0	2.3	23.5	53.9	20.3	306	3.9
	전문대졸 이상	0.0	3.7	18.4	59.8	18.0	244	3.9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0.8	29.6	51.2	18.4	125	3.9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4.1	24.5	50.5	20.9	220	3.9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3.5	15.8	62.0	18.7	171	4.0
	700만원 이상	0.0	1.2	13.1	66.7	19.0	84	4.0
	모름/무응답	0.0	0.0	33.3	33.3	33.3	3	4.0

□ 주변 가입자에 대한 반응

-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음
-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다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라와 강원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는데 이는 지난 조사 때와 유사한 현상임

<표 IV-18>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9.8	27.5	50.7	11.8	603	3.6	
조합	농협	0.0	10.3	22.3	54.7	12.7	300	3.7
	신협	0.7	11.8	32.2	44.1	11.2	152	3.5
	새마을금고	0.0	6.6	33.1	49.7	10.6	151	3.6
성	남자	0.0	9.0	29.2	49.8	12.0	301	3.6
	여자	0.3	10.6	25.8	51.7	11.6	302	3.6
연령	19~39세	0.8	11.7	21.7	55.0	10.8	120	3.6
	40~59세	0.0	10.0	32.6	45.2	12.1	239	3.6
	60세 이상	0.0	8.6	25.4	54.1	11.9	244	3.7
권역	서울	0.0	16.4	37.3	44.8	1.5	67	3.3
	경기/인천	0.0	5.0	28.6	59.3	7.1	140	3.7
	대전/충청	0.0	0.0	27.3	53.4	19.3	88	3.9
	광주/전라	1.1	24.7	23.6	42.7	7.9	89	3.3
	대구/경북	0.0	3.5	29.4	55.3	11.8	85	3.8
	부산/울산/경남	0.0	7.3	21.1	48.6	22.9	109	3.9
	강원	0.0	32.0	32.0	32.0	4.0	25	3.1
학력	중졸 이하	0.0	7.5	30.2	52.8	9.4	53	3.6
	고졸	0.0	8.2	26.5	52.0	13.4	306	3.7
	전문대졸 이상	0.4	12.3	28.3	48.8	10.2	244	3.6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8.8	24.0	57.6	9.6	125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9.1	25.5	49.5	15.9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6	10.5	28.7	47.4	12.9	171	3.6
	700만원 이상	0.0	11.9	34.5	51.2	2.4	84	3.4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

-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 조합별, 소득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V-19>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6.0	21.2	64.3	8.3	603	3.7	
조합	농협	0.3	5.0	20.3	64.7	9.7	300	3.8
	신협	0.0	6.6	25.0	63.8	4.6	152	3.7
	새마을금고	0.0	7.3	19.2	64.2	9.3	151	3.8
성	남자	0.0	5.3	22.9	63.1	8.6	301	3.8
	여자	0.3	6.6	19.5	65.6	7.9	302	3.7
연령	19~39세	0.0	6.7	23.3	60.8	9.2	120	3.7
	40~59세	0.0	8.4	20.9	63.6	7.1	239	3.7
	60세 이상	0.4	3.3	20.5	66.8	9.0	244	3.8
지역	서울	1.5	14.9	13.4	65.7	4.5	67	3.6
	경기/인천	0.0	1.4	22.9	67.9	7.9	140	3.8
	대전/충청	0.0	0.0	5.7	78.4	15.9	88	4.1
	광주/전라	0.0	15.7	28.1	48.3	7.9	89	3.5
	대구/경북	0.0	1.2	22.4	69.4	7.1	85	3.8
	부산/울산/경남	0.0	4.6	28.4	59.6	7.3	109	3.7
	강원	0.0	16.0	28.0	52.0	4.0	25	3.4
학력	중졸 이하	0.0	0.0	15.1	79.2	5.7	53	3.9
	고졸	0.0	5.6	22.5	63.1	8.8	306	3.8
	전문대졸 이상	0.4	7.8	20.9	62.7	8.2	244	3.7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5.6	24.0	64.0	6.4	125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5.9	20.9	63.6	9.1	220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7.6	21.6	63.2	7.6	171	3.7
	700만원 이상	0.0	3.6	17.9	69.0	9.5	84	3.8
	모름/무응답	0.0	0.0	0.0	66.7	33.3	3	4.3

□ 출자금 가입 목적과 관련한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

- 대체로 가입기간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대체로 읍면 거주자에 비해 동 거주자들이 각종 혜택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자의 경우 타인의 가입과 상관없이 가입하는 경향을 보임

<표 IV-20>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배당금 많기 때문에 가입	배당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	주변을 보고 가입	지역 조합원 유리
농협	-0.0758 (0.108)	0.153 (0.109)	0.135 (0.107)	0.0144 (0.112)
신협	-0.136 (0.117)	-0.171 (0.117)	-0.111 (0.115)	-0.185 (0.121)
수도권	-0.0399 (0.103)	-0.0469 (0.104)	-0.152 (0.102)	-0.153 (0.107)
동부	0.0393 (0.104)	0.375*** (0.105)	0.127 (0.103)	0.245** (0.108)
중간소득	-0.00885 (0.118)	0.0761 (0.118)	0.0480 (0.117)	0.118 (0.122)
고소득	0.0588 (0.175)	0.215 (0.177)	-0.185 (0.172)	0.369** (0.183)
연령	0.00642 (0.00439)	0.00326 (0.00441)	0.00196 (0.00435)	0.00285 (0.00455)
가입기간	0.000701 (0.00621)	-0.00279 (0.00625)	-0.00623 (0.00616)	0.00500 (0.00647)
대출	0.0105 (0.115)	-0.0839 (0.116)	-0.226** (0.114)	-0.169 (0.119)

주: 1. 관측치 수는 600개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은행예금과 조합예탁 상품의 절세효과 비교

-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집단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과거 심층평가의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아졌음(3.9 대 3.75)

<표 IV-21>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0.8	21.4	68.9	8.9	495	3.9	
조합	농협	0.0	0.4	23.8	67.8	7.9	239	3.8
	신협	0.0	1.5	18.9	71.2	8.3	132	3.9
	새마을금고	0.0	0.8	19.4	68.5	11.3	124	3.9
성	남자	0.0	1.2	22.4	67.3	9.1	254	3.8
	여자	0.0	0.4	20.3	70.5	8.7	241	3.9
연령	19~39세	0.0	1.0	19.6	71.1	8.2	97	3.9
	40~59세	0.0	1.0	22.9	68.8	7.3	192	3.8
	60세 이상	0.0	0.5	20.9	68.0	10.7	206	3.9
권역	서울	0.0	0.0	38.3	51.7	10.0	60	3.7
	경기/인천	0.0	0.0	16.3	79.7	4.1	123	3.9
	대전/충청	0.0	0.0	14.0	76.0	10.0	50	4.0
	광주/전라	0.0	2.5	21.3	70.0	6.3	80	3.8
	대구/경북	0.0	1.4	18.6	72.9	7.1	70	3.9
	부산/울산/경남	0.0	0.0	25.0	58.0	17.0	100	3.9
	강원	0.0	8.3	8.3	75.0	8.3	12	3.8
학력	중졸 이하	0.0	0.0	25.0	62.5	12.5	48	3.9
	고졸	0.0	1.2	25.3	65.7	7.8	245	3.8
	전문대졸 이상	0.0	0.5	15.8	74.3	9.4	202	3.9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0.0	25.5	61.2	13.3	98	3.9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1.1	24.6	65.0	9.3	183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4	19.9	72.3	6.4	141	3.8
	700만원 이상	0.0	0.0	11.4	81.4	7.1	70	4.0
	모름/무응답	0.0	0.0	0.0	100.0	0.0	3	4.0

□ 은행상품과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의 비교

- 기본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조합의 이자율이 높다는 인식이 예탁금을 맡기는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 내외로 매우 적지만 지역별로 강원도만 8%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남
- 연령, 학력, 지역, 소득 등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없거나 매우 작음
- 지난 심층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음

<표 IV-22>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2.2	14.7	62.4	20.6	495	4.0	
조합	농협	0.0	2.5	13.0	64.0	20.5	239	4.0
	신협	0.0	3.0	14.4	62.9	19.7	132	4.0
	새마을금고	0.0	0.8	18.5	58.9	21.8	124	4.0
성	남자	0.0	2.0	13.0	61.0	24.0	254	4.1
	여자	0.0	2.5	16.6	63.9	17.0	241	4.0
연령	19~39세	0.0	2.1	13.4	64.9	19.6	97	4.0
	40~59세	0.0	1.6	17.2	60.4	20.8	192	4.0
	60세 이상	0.0	2.9	13.1	63.1	20.9	206	4.0
권역	서울	0.0	1.7	6.7	65.0	26.7	60	4.2
	경기/인천	0.0	2.4	9.8	69.1	18.7	123	4.0
	대전/충청	0.0	0.0	4.0	84.0	12.0	50	4.1
	광주/전라	0.0	0.0	26.3	58.8	15.0	80	3.9
	대구/경북	0.0	2.9	15.7	65.7	15.7	70	3.9
	부산/울산/경남	0.0	4.0	22.0	41.0	33.0	100	4.0
	강원	0.0	8.3	8.3	75.0	8.3	12	3.8
학력	중졸 이하	0.0	2.1	10.4	75.0	12.5	48	4.0
	고졸	0.0	2.9	19.6	58.8	18.8	245	3.9
	전문대졸 이상	0.0	1.5	9.9	63.9	24.8	202	4.1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4.1	18.4	60.2	17.3	98	3.9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2.2	20.2	57.9	19.7	183	4.0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4	9.9	69.5	19.1	141	4.1
	700만원 이상	0.0	1.4	4.3	65.7	28.6	70	4.2
	모름/무응답	0.0	0.0	33.3	0.0	66.7	3	4.3

□ 예탁상품 가입 이유가 대출이라는 의견

-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 특성 중 소득이 높은 집단(500만원 이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가장 두드러짐
-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중이 가장 낮음
- 전반적으로 지난 심층평가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V-23>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4	25.1	35.4	32.1	6.1	495	3.2	
조합	농협	0.4	23.4	37.7	33.9	4.6	239	3.2
	신협	3.0	26.5	34.8	29.5	6.1	132	3.1
	새마을금고	1.6	26.6	31.5	31.5	8.9	124	3.2
성	남자	2.0	26.4	37.0	29.1	5.5	254	3.1
	여자	0.8	23.7	33.6	35.3	6.6	241	3.2
연령	19~39세	2.1	29.9	26.8	36.1	5.2	97	3.1
	40~59세	2.1	20.3	37.5	33.9	6.3	192	3.2
	60세 이상	0.5	27.2	37.4	28.6	6.3	206	3.1
지역	서울	3.3	51.7	28.3	16.7	0.0	60	2.6
	경기/인천	0.0	26.0	34.1	35.0	4.9	123	3.2
	대전/충청	0.0	26.0	60.0	8.0	6.0	50	2.9
	광주/전라	1.3	10.0	33.8	42.5	12.5	80	3.6
	대구/경북	2.9	12.9	41.4	38.6	4.3	70	3.3
	부산/울산/경남	1.0	27.0	28.0	36.0	8.0	100	3.2
	강원	8.3	33.3	16.7	41.7	0.0	12	2.9
학력	중졸 이하	0.0	33.3	39.6	18.8	8.3	48	3.0
	고졸	2.0	19.6	36.3	35.9	6.1	245	3.2
	전문대졸 이상	1.0	29.7	33.2	30.7	5.4	202	3.1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30.6	31.6	29.6	8.2	98	3.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	15.8	37.2	37.7	8.2	183	3.4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	29.8	35.5	27.7	4.3	141	3.0
	700만원 이상	0.0	31.4	37.1	30.0	1.4	70	3.0
	모름/무응답	33.3	33.3	0.0	33.3	0.0	3	2.3

- 은행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는 인식이 많음
 -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질문에 비하면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낮음
 - 앞의 질문들과 관련지어 해석해 보면 대출 가능성과 낮은 대출이자율도 조합을 이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높은 예탁금 이자율이나 절세효과에 비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지역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크게 낮다는 사실도 두드러진 특성인데, 이전 항목과 일관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표 IV-24>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6	19.8	38.6	36.0	5.1	495	3.3	
조합	농협	0.0	18.8	38.5	38.1	4.6	239	3.3
	신협	1.5	22.0	40.9	30.3	5.3	132	3.2
	새마을금고	0.8	19.4	36.3	37.9	5.6	124	3.3
성	남자	1.2	20.1	39.8	35.0	3.9	254	3.2
	여자	0.0	19.5	37.3	36.9	6.2	241	3.3
연령	19~39세	0.0	17.5	45.4	29.9	7.2	97	3.3
	40~59세	1.0	22.4	35.9	37.5	3.1	192	3.2
	60세 이상	0.5	18.4	37.9	37.4	5.8	206	3.3
권역	서울	5.0	43.3	36.7	15.0	0.0	60	2.6
	경기/인천	0.0	24.4	39.0	34.1	2.4	123	3.1
	대전/충청	0.0	6.0	60.0	32.0	2.0	50	3.3
	광주/전라	0.0	22.5	40.0	30.0	7.5	80	3.2
	대구/경북	0.0	7.1	31.4	55.7	5.7	70	3.6
	부산/울산/경남	0.0	14.0	33.0	43.0	10.0	100	3.5
	강원	0.0	16.7	33.3	41.7	8.3	12	3.4
학력	중졸 이하	0.0	16.7	35.4	41.7	6.3	48	3.4
	고졸	1.2	15.5	37.6	39.6	6.1	245	3.3
	전문대졸 이상	0.0	25.7	40.6	30.2	3.5	202	3.1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15.3	36.7	38.8	9.2	98	3.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15.3	32.8	43.7	7.7	183	3.4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4	19.9	48.9	28.4	1.4	141	3.1
	700만원 이상	0.0	35.7	35.7	28.6	0.0	70	2.9
	모름/무응답	0.0	66.7	33.3	0.0	0.0	3	2.3

□ 조합 예탁상품과 각종 혜택

-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도 긍정적이며 이는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설문 대상이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경북과 충청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표 IV-25>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5.7	28.1	62.2	4.0	495	3.6	
조합	농협	0.0	6.3	26.8	63.2	3.8	239	3.6
	신협	0.0	5.3	26.5	63.6	4.5	132	3.7
	새마을금고	0.0	4.8	32.3	58.9	4.0	124	3.6
성	남자	0.0	6.3	29.9	59.4	4.3	254	3.6
	여자	0.0	5.0	26.1	65.1	3.7	241	3.7
연령	19~39세	0.0	8.2	29.9	55.7	6.2	97	3.6
	40~59세	0.0	5.7	32.3	59.9	2.1	192	3.6
	60세 이상	0.0	4.4	23.3	67.5	4.9	206	3.7
권역	서울	0.0	1.7	35.0	63.3	0.0	60	3.6
	경기/인천	0.0	3.3	35.8	61.0	0.0	123	3.6
	대전/충청	0.0	0.0	6.0	90.0	4.0	50	4.0
	광주/전라	0.0	13.8	28.8	53.8	3.8	80	3.5
	대구/경북	0.0	4.3	12.9	70.0	12.9	70	3.9
	부산/울산/경남	0.0	7.0	35.0	53.0	5.0	100	3.6
	강원	0.0	16.7	33.3	41.7	8.3	12	3.4
학력	중졸 이하	0.0	2.1	27.1	64.6	6.3	48	3.8
	고졸	0.0	6.5	24.5	65.7	3.3	245	3.7
	전문대졸 이상	0.0	5.4	32.7	57.4	4.5	202	3.6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8.2	27.6	60.2	4.1	98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4.9	28.4	62.3	4.4	183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5.0	24.8	66.0	4.3	141	3.7
	700만원 이상	0.0	4.3	32.9	60.0	2.9	70	3.6
	모름/무응답	0.0	33.3	66.7	0.0	0.0	3	2.7

□ 설문에서 나타나는 조합예탁상품 가입 목적

- 높은 예탁금 이자율과 절세효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음
- 낮은 대출이자율과 편리성 등 대출과 관련한 장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지난 심층평가 조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표 IV-26>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정리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절세효과	0.0	0.8	21.4	68.9	8.9	603	3.9
높은 이자율	0.0	2.2	14.7	62.4	20.6	603	4.0
대출의 용이	1.4	25.1	35.4	32.1	6.1	603	3.2
낮은 대출이자율	0.6	19.8	38.6	36.0	5.1	603	3.3
각종 혜택	0.0	5.7	28.1	62.2	4.0	603	3.6

□ 예탁금 가입 목적과 관련한 순위 프로빗 분석

- 프로빗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들이 각종 혜택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지난번 심층분석 결과와는 다른 현상임
- 반면 “동” 거주자들은 각종 혜택이 예탁금 가입의 목적이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타 혜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으로 여러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가입기간이 길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른 개인 특성들은 예탁금 가입 목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표 IV-27> 예탁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분석)

	절세효과	높은 예탁금 이자율	대출 편의	낮은 대출 이자율	기타 혜택
농협	-0.162 (0.128)	0.0416 (0.123)	-0.0205 (0.115)	-0.0638 (0.117)	-0.112 (0.125)
신협	-0.0393 (0.135)	0.0106 (0.130)	-0.102 (0.122)	-0.226* (0.124)	0.0402 (0.132)
수도권	-0.252** (0.120)	0.0196 (0.115)	-0.307*** (0.108)	-0.513*** (0.111)	-0.335*** (0.118)
동부	0.398*** (0.125)	0.428*** (0.121)	-0.166 (0.114)	-0.130 (0.115)	0.322*** (0.124)
중간소득	-0.137 (0.142)	0.0921 (0.137)	0.139 (0.130)	-0.0802 (0.132)	0.242* (0.141)
고소득	0.0808 (0.212)	0.284 (0.205)	0.134 (0.192)	-0.191 (0.195)	0.223 (0.208)
연령	0.00137 (0.00539)	0.00537 (0.00520)	-0.00112 (0.00489)	-0.00318 (0.00494)	-0.00280 (0.00524)
가입기간	0.00377 (0.00726)	0.00125 (0.00701)	0.000731 (0.00660)	-0.00245 (0.00670)	0.0237*** (0.00729)
대출	0.156 (0.140)	0.290** (0.136)	-0.155 (0.126)	-0.390*** (0.128)	-0.0339 (0.136)

주: 1. 관측치 수는 628개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

□ 조합 출자로 인해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

- 조합 출자로 인해 조합과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비중은 높지 않음
- 연령별, 조합별, 소득별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음
-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강원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V-28>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7.1	30.3	58.0	4.5	603	3.6	
조합	농협	0.0	5.7	30.0	60.7	3.7	300	3.6
	신협	0.0	7.2	30.9	55.9	5.9	152	3.6
	새마을금고	0.0	9.9	30.5	55.0	4.6	151	3.5
성	남자	0.0	7.6	33.9	53.8	4.7	301	3.6
	여자	0.0	6.6	26.8	62.3	4.3	302	3.6
연령	19~39세	0.0	11.7	34.2	49.2	5.0	120	3.5
	40~59세	0.0	7.1	29.3	60.7	2.9	239	3.6
	60세 이상	0.0	4.9	29.5	59.8	5.7	244	3.7
권역	서울	0.0	13.4	41.8	44.8	0.0	67	3.3
	경기/인천	0.0	6.4	32.1	60.7	0.7	140	3.6
	대전/충청	0.0	0.0	31.8	60.2	8.0	88	3.8
	광주/전라	0.0	2.2	15.7	76.4	5.6	89	3.9
	대구/경북	0.0	3.5	37.6	57.6	1.2	85	3.6
	부산/울산/경남	0.0	11.9	23.9	53.2	11.0	109	3.6
	강원	0.0	28.0	40.0	28.0	4.0	25	3.1
학력	중졸 이하	0.0	5.7	28.3	56.6	9.4	53	3.7
	고졸	0.0	4.2	29.7	61.4	4.6	306	3.7
	전문대졸 이상	0.0	11.1	31.6	54.1	3.3	244	3.5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7.2	27.2	60.0	5.6	125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6.4	25.0	61.4	7.3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4.7	36.8	56.1	2.3	171	3.6
	700만원 이상	0.0	13.1	34.5	52.4	0.0	84	3.4
	모름/무응답	0.0	33.3	66.7	0.0	0.0	3	2.7

□ 배당금 비과세로 인한 수익률 상승의 인식

- 이 질문해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응답에서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2018년 조사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IV-29>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5.0	33.0	49.8	12.3	603	3.7	
조합	농협	0.0	4.7	36.3	47.7	11.3	300	3.7
	신협	0.0	5.3	25.7	54.6	14.5	152	3.8
	새마을금고	0.0	5.3	33.8	49.0	11.9	151	3.7
성	남자	0.0	5.6	31.6	50.2	12.6	301	3.7
	여자	0.0	4.3	34.4	49.3	11.9	302	3.7
연령	19~39세	0.0	7.5	35.8	43.3	13.3	120	3.6
	40~59세	0.0	5.4	33.9	46.9	13.8	239	3.7
	60세 이상	0.0	3.3	30.7	55.7	10.2	244	3.7
권역	서울	0.0	10.4	16.4	67.2	6.0	67	3.7
	경기/인천	0.0	1.4	27.9	56.4	14.3	140	3.8
	대전/충청	0.0	0.0	36.4	51.1	12.5	88	3.8
	광주/전라	0.0	5.6	38.2	41.6	14.6	89	3.7
	대구/경북	0.0	1.2	42.4	48.2	8.2	85	3.6
	부산/울산/경남	0.0	8.3	34.9	40.4	16.5	109	3.7
	강원	0.0	24.0	36.0	36.0	4.0	25	3.2
학력	중졸 이하	0.0	3.8	28.3	60.4	7.5	53	3.7
	고졸	0.0	4.2	32.7	51.0	12.1	306	3.7
	전문대졸 이상	0.0	6.1	34.4	45.9	13.5	244	3.7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7.2	36.0	45.6	11.2	125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4.5	32.7	49.5	13.2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5.3	32.7	50.9	11.1	171	3.7
	700만원 이상	0.0	2.4	28.6	54.8	14.3	84	3.8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배당금 비과세로 인해 출자자가 많아졌다는 인식

-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비과세로 출자자가 많아졌다는 인식은 매우 강하며 집단 간 차이 없이 공유되고 있음
- 지난 심층평가의 조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아졌음(3.9 대 3.54)

<표 IV-30>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4.5	21.1	59.2	15.3	603	3.9	
조합	농협	0.0	5.3	22.0	58.0	14.7	300	3.8
	신협	0.0	2.6	19.7	62.5	15.1	152	3.9
	새마을금고	0.0	4.6	20.5	58.3	16.6	151	3.9
성	남자	0.0	2.3	23.3	59.8	14.6	301	3.9
	여자	0.0	6.6	18.9	58.6	15.9	302	3.8
연령	19~39세	0.0	6.7	25.0	58.3	10.0	120	3.7
	40~59세	0.0	3.8	22.6	60.3	13.4	239	3.8
	60세 이상	0.0	4.1	17.6	58.6	19.7	244	3.9
권역	서울	0.0	7.5	13.4	64.2	14.9	67	3.9
	경기/인천	0.0	2.9	14.3	72.9	10.0	140	3.9
	대전/충청	0.0	1.1	20.5	53.4	25.0	88	4.0
	광주/전라	0.0	2.2	22.5	60.7	14.6	89	3.9
	대구/경북	0.0	2.4	20.0	57.6	20.0	85	4.0
	부산/울산/경남	0.0	9.2	36.7	40.4	13.8	109	3.6
	강원	0.0	12.0	12.0	72.0	4.0	25	3.7
학력	중졸 이하	0.0	3.8	26.4	52.8	17.0	53	3.8
	고졸	0.0	3.3	18.6	59.5	18.6	306	3.9
	전문대졸 이상	0.0	6.1	23.0	60.2	10.7	244	3.8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8.0	23.2	50.4	18.4	125	3.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3.6	21.4	58.2	16.8	220	3.9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8	21.6	62.0	14.6	171	3.9
	700만원 이상	0.0	7.1	15.5	69.0	8.3	84	3.8
	모름/무응답	0.0	0.0	33.3	66.7	0.0	3	3.7

□ 조합 발전과 (준)조합원의 출자금 증가

- 설문 문항은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 집단 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지난 심층평가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임

<표 IV-31>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6.6	25.0	57.7	10.6	603	3.7	
조합	농협	0.0	7.3	25.7	56.0	11.0	300	3.7
	신협	0.0	5.3	25.7	55.3	13.8	152	3.8
	새마을금고	0.0	6.6	23.2	63.6	6.6	151	3.7
성	남자	0.0	5.0	25.6	57.5	12.0	301	3.8
	여자	0.0	8.3	24.5	57.9	9.3	302	3.7
연령	19~39세	0.0	6.7	25.0	61.7	6.7	120	3.7
	40~59세	0.0	6.3	28.5	53.6	11.7	239	3.7
	60세 이상	0.0	7.0	21.7	59.8	11.5	244	3.8
지역	서울	0.0	19.4	14.9	59.7	6.0	67	3.5
	경기/인천	0.0	2.1	25.0	55.7	17.1	140	3.9
	대전/충청	0.0	0.0	11.4	80.7	8.0	88	4.0
	광주/전라	0.0	9.0	36.0	43.8	11.2	89	3.6
	대구/경북	0.0	5.9	41.2	47.1	5.9	85	3.5
	부산/울산/경남	0.0	7.3	24.8	56.0	11.9	109	3.7
학력	강원	0.0	12.0	8.0	76.0	4.0	25	3.7
	중졸 이하	0.0	5.7	34.0	50.9	9.4	53	3.6
	고졸	0.0	6.9	22.2	59.8	11.1	306	3.8
월평균	전문대졸 이상	0.0	6.6	26.6	56.6	10.2	244	3.7
	300만원 미만	0.0	7.2	25.6	55.2	12.0	125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7.3	24.1	57.7	10.9	220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4.7	28.1	58.5	8.8	171	3.7
	700만원 이상	0.0	8.3	19.0	60.7	11.9	84	3.8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친인척들에게 가입을 권유 여부

- 친인척에게 권유 여부에는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다소 낮음
-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에서 강원지역의 부정적 응답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지난 심층평가의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3.4 대 3.33)

<표 IV-32>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11.9	36.0	45.9	5.8	603	3.4	
조합	농협	0.3	11.7	35.0	46.7	6.3	300	3.5
	신협	0.7	11.2	40.1	44.7	3.3	152	3.4
	새마을금고	0.0	13.2	33.8	45.7	7.3	151	3.5
성	남자	0.3	12.0	36.5	44.9	6.3	301	3.4
	여자	0.3	11.9	35.4	47.0	5.3	302	3.5
연령	19~39세	0.8	12.5	33.3	47.5	5.8	120	3.5
	40~59세	0.0	10.9	38.1	46.0	5.0	239	3.5
	60세 이상	0.4	12.7	35.2	45.1	6.6	244	3.4
지역	서울	0.0	10.4	41.8	46.3	1.5	67	3.4
	경기/인천	0.0	6.4	47.9	37.1	8.6	140	3.5
	대전/충청	0.0	1.1	28.4	65.9	4.5	88	3.7
	광주/전라	2.2	25.8	21.3	42.7	7.9	89	3.3
	대구/경북	0.0	3.5	37.6	55.3	3.5	85	3.6
	부산/울산/경남	0.0	11.9	37.6	43.1	7.3	109	3.5
	강원	0.0	64.0	20.0	16.0	0.0	25	2.5
학력	중졸 이하	0.0	7.5	39.6	47.2	5.7	53	3.5
	고졸	0.7	12.4	33.7	46.4	6.9	306	3.5
	전문대졸 이상	0.0	12.3	38.1	45.1	4.5	244	3.4
월평균	300만원 미만	0.8	10.4	43.2	41.6	4.0	125	3.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13.6	27.7	50.5	7.7	220	3.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2.3	34.5	46.8	6.4	171	3.5
	700만원 이상	0.0	9.5	50.0	38.1	2.4	84	3.3
	모름/무응답	0.0	0.0	33.3	66.7	0.0	3	3.7

□ 출자금 가입 효과에 대한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

-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출자금 가입으로 인해 조합과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배당금 비과세로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인식은 고소득자 사이에서 강함
- 배당금 비과세로 조합원이 증가했다는 인식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강한 경향을 보임
- 다른 요인들은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3> 출자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조합과 관계 개선	배당금 비과세로 수익률 증가	배당금 비과세로 조합원 증가	출자금 증가 필요	친인척에 가입 권유
농협	0.0957 (0.112)	-0.0711 (0.108)	N-0.164 (0.109)	0.0108 (0.109)	0.0231 (0.107)
신협	0.157 (0.121)	0.205* (0.116)	0.0684 (0.118)	0.123 (0.118)	-0.133 (0.115)
수도권	-0.326*** (0.107)	0.0955 (0.103)	0.0347 (0.105)	0.0655 (0.103)	-0.0164 (0.102)
동부	0.112 (0.108)	0.219** (0.104)	0.114 (0.105)	0.115 (0.105)	0.198* (0.103)
중간소득	0.124 (0.122)	0.170 (0.117)	0.235** (0.119)	-0.00439 (0.118)	0.177 (0.117)
고소득	-0.0897 (0.179)	0.304* (0.175)	0.116 (0.177)	0.0492 (0.175)	-0.0704 (0.172)
자산 많음	0.00244 (0.00449)	0.00198 (0.00436)	0.00388 (0.00442)	0.00203 (0.00442)	0.00135 (0.00434)
가입기간	0.00987 (0.00646)	0.00883 (0.00619)	0.0155** (0.00632)	-0.000809 (0.00627)	-0.00245 (0.00613)
대출	-0.214* (0.119)	-0.133 (0.115)	-0.188 (0.116)	-0.0933 (0.116)	-0.103 (0.114)

주: 1. 관측치 수는 628개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예탁상품에 가입한 후 대출이 용이해졌는지 여부

- 지역 간에 보이는 약간의 격차를 제외하면 집단이나 개인 특성과는 관련없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지역 중에는 경남이나 강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이전 심층평가의 설문 결과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IV-34>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8.1	38.6	48.9	4.2	495	3.5	
조합	농협	0.0	6.7	39.3	51.0	2.9	239	3.5
	신협	0.0	11.4	35.6	46.2	6.8	132	3.5
	새마을금고	0.8	7.3	40.3	47.6	4.0	124	3.5
성	남자	0.4	9.4	40.2	45.7	4.3	254	3.4
	여자	0.0	6.6	36.9	52.3	4.1	241	3.5
연령	19 ~ 39세	1.0	5.2	44.3	46.4	3.1	97	3.5
	40 ~ 59세	0.0	8.9	37.5	48.4	5.2	192	3.5
	60세 이상	0.0	8.7	36.9	50.5	3.9	206	3.5
권역	서울	0.0	8.3	46.7	41.7	3.3	60	3.4
	경기/인천	0.0	5.7	37.4	52.8	4.1	123	3.6
	대전/충청	0.0	0.0	60.0	40.0	0.0	50	3.4
	광주/전라	0.0	7.5	21.3	68.8	2.5	80	3.7
	대구/경북	0.0	2.9	51.4	44.3	1.4	70	3.4
	부산/울산/경남	1.0	17.0	32.0	39.0	11.0	100	3.4
	강원	0.0	25.0	16.7	58.3	0.0	12	3.3
학력	중졸 이하	0.0	4.2	35.4	60.4	0.0	48	3.6
	고졸	0.0	9.0	36.3	49.8	4.9	245	3.5
	전문대졸 이상	0.5	7.9	42.1	45.0	4.5	202	3.5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12.2	35.7	50.0	2.0	98	3.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4.4	38.8	50.8	6.0	183	3.6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7	9.2	37.6	48.2	4.3	141	3.5
	700만원 이상	0.0	10.0	41.4	45.7	2.9	70	3.4
	모름/무응답	0.0	0.0	100.0	0.0	0.0	3	3.0

□ 예탁상품 가입 이후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 여부

-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집단별,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 지난 심층평가의 설문에서 연령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평균적으로는 지난 심층평가의 설문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임

<표 IV-35>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4.6	30.5	54.1	10.7	495	3.7	
조합	농협	0.0	6.3	23.0	60.7	10.0	239	3.7
	신협	0.0	3.8	38.6	46.2	11.4	132	3.7
	새마을금고	0.0	2.4	36.3	50.0	11.3	124	3.7
성	남자	0.0	5.5	35.0	49.2	10.2	254	3.6
	여자	0.0	3.7	25.7	59.3	11.2	241	3.8
연령	19 ~ 39세	0.0	5.2	35.1	47.4	12.4	97	3.7
	40 ~ 59세	0.0	5.7	31.3	53.6	9.4	192	3.7
	60세 이상	0.0	3.4	27.7	57.8	11.2	206	3.8
권역	서울	0.0	10.0	35.0	53.3	1.7	60	3.5
	경기/인천	0.0	2.4	29.3	60.2	8.1	123	3.7
	대전/충청	0.0	0.0	40.0	48.0	12.0	50	3.7
	광주/전라	0.0	2.5	20.0	60.0	17.5	80	3.9
	대구/경북	0.0	0.0	34.3	54.3	11.4	70	3.8
	부산/울산/경남	0.0	11.0	31.0	45.0	13.0	100	3.6
	강원	0.0	8.3	25.0	58.3	8.3	12	3.7
학력	중졸 이하	0.0	2.1	31.3	60.4	6.3	48	3.7
	고졸	0.0	2.9	28.2	57.1	11.8	245	3.8
	전문대졸 이상	0.0	7.4	33.2	49.0	10.4	202	3.6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9.2	26.5	56.1	8.2	98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2.2	26.2	57.9	13.7	183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3.5	34.8	48.9	12.8	141	3.7
	700만원 이상	0.0	7.1	37.1	52.9	2.9	70	3.5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저축 의지가 생겼는지 여부

- 전반적으로는 저축 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며 이전의 심층평가 설문과 평균적으로는 거의 차이 없는 결과임
- 다만 이전에 소득 수준, 자산 수준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인 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과는 달리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음
- 가입자들에 대한 저축 지원이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가입자의 인식 면에서는 저축지원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IV-36>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3.6	29.1	56.8	10.5	495	3.7	
조합	농협	0.0	4.2	27.6	56.5	11.7	239	3.8
	신협	0.0	3.0	31.1	55.3	10.6	132	3.7
	새마을금고	0.0	3.2	29.8	58.9	8.1	124	3.7
성	남자	0.0	4.3	29.5	56.3	9.8	254	3.7
	여자	0.0	2.9	28.6	57.3	11.2	241	3.8
연령	19~39세	0.0	2.1	25.8	60.8	11.3	97	3.8
	40~59세	0.0	4.7	32.8	52.6	9.9	192	3.7
	60세 이상	0.0	3.4	27.2	58.7	10.7	206	3.8
권역	서울	0.0	3.3	38.3	53.3	5.0	60	3.6
	경기/인천	0.0	2.4	16.3	73.2	8.1	123	3.9
	대전/충청	0.0	0.0	14.0	74.0	12.0	50	4.0
	광주/전라	0.0	5.0	28.8	53.8	12.5	80	3.7
	대구/경북	0.0	2.9	25.7	60.0	11.4	70	3.8
	부산/울산/경남	0.0	6.0	47.0	33.0	14.0	100	3.6
	강원	0.0	8.3	50.0	33.3	8.3	12	3.4
학력	중졸 이하	0.0	4.2	31.3	54.2	10.4	48	3.7
	고졸	0.0	3.7	29.0	55.9	11.4	245	3.8
	전문대졸 이상	0.0	3.5	28.7	58.4	9.4	202	3.7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3.1	39.8	48.0	9.2	98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2.2	27.9	60.1	9.8	183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4.3	28.4	56.0	11.3	141	3.7
	700만원 이상	0.0	5.7	20.0	61.4	12.9	70	3.8
	모름/무응답	0.0	33.3	0.0	66.7	0.0	3	3.3

□ 비과세 제도와 조합 가입

- 대체로 이전 심층평가 조사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3.9 대 3.6), 집단별 차이도 거의 없음
- 이전의 심층평가 조사에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은 편이었던 것과는 다소 대조되는 결과임
-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음
- 가입자들의 인식상으로는 비과세가 예탁금을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IV-37>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1.6	22.4	64.4	11.5	495	3.9	
조합	농협	0.0	0.8	24.7	63.2	11.3	239	3.8
	신협	0.0	3.0	22.0	63.6	11.4	132	3.8
	새마을금고	0.0	1.6	18.5	67.7	12.1	124	3.9
성	남자	0.0	1.2	24.4	65.0	9.4	254	3.8
	여자	0.0	2.1	20.3	63.9	13.7	241	3.9
연령	19~39세	0.0	2.1	24.7	63.9	9.3	97	3.8
	40~59세	0.0	1.6	22.4	65.6	10.4	192	3.8
	60세 이상	0.0	1.5	21.4	63.6	13.6	206	3.9
지역	서울	0.0	0.0	11.7	68.3	20.0	60	4.1
	경기/인천	0.0	0.8	14.6	79.7	4.9	123	3.9
	대전/충청	0.0	0.0	10.0	84.0	6.0	50	4.0
	광주/전라	0.0	0.0	36.3	51.3	12.5	80	3.8
	대구/경북	0.0	0.0	25.7	55.7	18.6	70	3.9
	부산/울산/경남	0.0	6.0	31.0	51.0	12.0	100	3.7
	강원	0.0	8.3	25.0	58.3	8.3	12	3.7
학력	중졸 이하	0.0	2.1	20.8	56.3	20.8	48	4.0
	고졸	0.0	1.6	24.5	63.3	10.6	245	3.8
	전문대졸 이상	0.0	1.5	20.3	67.8	10.4	202	3.9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5.1	20.4	59.2	15.3	98	3.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1.1	28.4	57.9	12.6	183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0.0	19.9	73.8	6.4	141	3.9
	700만원 이상	0.0	1.4	14.3	71.4	12.9	70	4.0
	모름/무응답	0.0	0.0	33.3	33.3	33.3	3	4.0

□ 조합 발전과 예탁금의 비과세제도

- 조합 발전에 예탁금 비과세제도가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과거의 조사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집단별, 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평균적으로는 이전 조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증가함(3.8 대 3.6)

<표 IV-38>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2.2	23.0	63.0	11.7	495	3.8	
조합	농협	0.0	2.9	24.7	60.3	12.1	239	3.8
	신협	0.0	0.8	22.7	63.6	12.9	132	3.9
	새마을금고	0.0	2.4	20.2	67.7	9.7	124	3.8
성	남자	0.0	2.0	24.4	61.0	12.6	254	3.8
	여자	0.0	2.5	21.6	65.1	10.8	241	3.8
연령	19~39세	0.0	6.2	22.7	54.6	16.5	97	3.8
	40~59세	0.0	1.6	21.4	66.7	10.4	192	3.9
	60세 이상	0.0	1.0	24.8	63.6	10.7	206	3.8
지역	서울	0.0	0.0	20.0	70.0	10.0	60	3.9
	경기/인천	0.0	0.8	22.0	61.0	16.3	123	3.9
	대전/충청	0.0	0.0	14.0	78.0	8.0	50	3.9
	광주/전라	0.0	2.5	30.0	55.0	12.5	80	3.8
	대구/경북	0.0	0.0	14.3	71.4	14.3	70	4.0
	부산/울산/경남	0.0	7.0	31.0	55.0	7.0	100	3.6
	강원	0.0	8.3	25.0	58.3	8.3	12	3.7
학력	중졸 이하	0.0	0.0	33.3	60.4	6.3	48	3.7
	고졸	0.0	1.2	22.9	64.1	11.8	245	3.9
	전문대졸 이상	0.0	4.0	20.8	62.4	12.9	202	3.8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5.1	27.6	58.2	9.2	98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1.6	26.2	63.4	8.7	183	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2.1	15.6	65.2	17.0	141	4.0
	700만원 이상	0.0	0.0	22.9	64.3	12.9	70	3.9
	모름/무응답	0.0	0.0	33.3	66.7	0.0	3	3.7

□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할지 여부

- 저축여력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긍정적 응답의 비중도 이전의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남(3.7)
-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이전 조사와 차이점으로 이런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부정적 응답이 3%에 그치고 있다는 결과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한도까지는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표 IV-39> “자금이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3.0	28.3	62.4	6.3	495	3.7	
조합	농협	0.0	2.9	25.9	65.7	5.4	239	3.7
	신협	0.0	3.0	29.5	61.4	6.1	132	3.7
	새마을금고	0.0	3.2	31.5	57.3	8.1	124	3.7
성	남자	0.0	3.1	29.1	61.4	6.3	254	3.7
	여자	0.0	2.9	27.4	63.5	6.2	241	3.7
연령	19~39세	0.0	2.1	26.8	66.0	5.2	97	3.7
	40~59세	0.0	2.6	32.3	59.4	5.7	192	3.7
	60세 이상	0.0	3.9	25.2	63.6	7.3	206	3.7
지역	서울	0.0	0.0	26.7	70.0	3.3	60	3.8
	경기/인천	0.0	0.0	32.5	63.4	4.1	123	3.7
	대전/충청	0.0	0.0	18.0	78.0	4.0	50	3.9
	광주/전라	0.0	11.3	26.3	57.5	5.0	80	3.6
	대구/경북	0.0	2.9	18.6	61.4	17.1	70	3.9
	부산/울산/경남	0.0	2.0	38.0	54.0	6.0	100	3.6
	강원	0.0	16.7	25.0	58.3	0.0	12	3.4
학력	중졸 이하	0.0	2.1	22.9	70.8	4.2	48	3.8
	고졸	0.0	3.7	29.4	60.8	6.1	245	3.7
	전문대졸 이상	0.0	2.5	28.2	62.4	6.9	202	3.7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5.1	27.6	59.2	8.2	98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2.2	32.2	59.6	6.0	183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3.5	24.1	66.7	5.7	141	3.7
	700만원 이상	0.0	1.4	27.1	67.1	4.3	70	3.7
	모름/무응답	0.0	0.0	33.3	33.3	33.3	3	4.0

□ 예탁금 가입효과에 대한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 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탁금 가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 주민들이 “읍면” 주민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과세로 조합원이 증가했고 비과세가 조합 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 확률이 높았음
-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중간소득층이 예탁금 가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대출 용이, 조합과 관계 개선, 비과세가 조합 발전에 기여)
-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이 예탁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비과세로 조합원이 증가, 비과세가 조합 발전에 기여)

<표 IV-40> 예탁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대출용이	조합과 관계개선	저축의지 제고	비과세로 조합원 증가	비과세는 조합발전에 기여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의사
농협	0.0193 (0.120)	0.0706 (0.120)	0.0765 (0.120)	-0.0529 (0.124)	-0.000973 (0.123)	0.00847 (0.124)
신협	0.0667 (0.126)	-0.0388 (0.126)	0.00283 (0.127)	0.0145 (0.131)	0.171 (0.130)	-0.0370 (0.131)
수도권	0.0110 (0.112)	-0.137 (0.112)	0.0169 (0.113)	0.173 (0.117)	0.113 (0.115)	-0.0920 (0.117)
동부	0.0647 (0.118)	0.0417 (0.118)	0.122 (0.118)	0.256** (0.122)	0.334*** (0.121)	0.569*** (0.124)
중간소득	0.229* (0.134)	0.294** (0.135)	0.208 (0.135)	-0.00854 (0.139)	0.266* (0.138)	-0.00430 (0.139)
고소득	0.0653 (0.198)	-0.0537 (0.198)	0.274 (0.200)	0.0744 (0.206)	0.230 (0.204)	-0.0500 (0.207)
연령	0.00156 (0.00505)	0.00693 (0.00504)	0.00178 (0.00510)	0.000848 (0.00523)	-0.00278 (0.00518)	-0.00223 (0.00524)
가입기간	0.00665 (0.00686)	-0.00221 (0.00683)	-0.00109 (0.00687)	0.0161** (0.00709)	0.0118* (0.00703)	0.0107 (0.00713)
대출	-0.0589 (0.130)	-0.0273 (0.130)	-0.0312 (0.132)	0.112 (0.136)	-0.0652 (0.135)	-0.0121 (0.136)

주: 1. 관측치 수는 492개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 설문 의도

-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제도의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미래에 있을 비과세 감면제도의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기존 자료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가상의 상황, 혹은 계획된 제도 변화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추정함

□ 출자금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한 반응

-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인출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는 이전의 심층평가 조사와 거의 동일한 결과이지만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
- 서울지역의 경우 인출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아 다른 지역과 대조됨

〈표 IV-41〉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21.2	32.0	43.8	2.7	603	3.3	
조합	농협	0.3	22.3	30.3	44.3	2.7	300	3.3
	신협	0.0	19.1	35.5	42.8	2.6	152	3.3
	새마을금고	0.7	21.2	31.8	43.7	2.6	151	3.3
성	남자	0.3	19.6	33.6	43.9	2.7	301	3.3
	여자	0.3	22.8	30.5	43.7	2.6	302	3.3
연령	19~39세	0.8	18.3	33.3	45.8	1.7	120	3.3
	40~59세	0.4	19.2	28.5	49.8	2.1	239	3.3
	60세 이상	0.0	24.6	34.8	36.9	3.7	244	3.2

<표 IV-1>의 계속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권역	서울	1.5	47.8	32.8	17.9	0.0	67	2.7
	경기/인천	0.0	22.1	35.7	39.3	2.9	140	3.2
	대전/충청	0.0	4.5	38.6	53.4	3.4	88	3.6
	광주/전라	0.0	24.7	19.1	48.3	7.9	89	3.4
	대구/경북	0.0	20.0	41.2	38.8	0.0	85	3.2
	부산/울산/경남	0.9	12.8	31.2	54.1	0.9	109	3.4
	강원	0.0	32.0	4.0	60.0	4.0	25	3.4
학력	중졸 이하	0.0	35.8	24.5	35.8	3.8	53	3.1
	고졸	0.0	19.3	33.3	43.1	4.2	306	3.3
	전문대졸 이상	0.8	20.5	32.0	46.3	0.4	244	3.3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27.2	32.8	34.4	5.6	125	3.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15.5	30.9	51.4	1.8	220	3.4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8.1	31.6	47.4	2.9	171	3.4
	700만원 이상	1.2	34.5	33.3	31.0	0.0	84	2.9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에 대한 반응
 -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인출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평균적인 반응은 지난 조사와 유사하나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남
 - 서울지역의 경우 인출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아 다른 지역과 대조됨

<표 IV-42>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5	17.9	33.5	41.3	6.8	603	3.4	
조합	농협	0.7	18.7	33.0	39.3	8.3	300	3.4
	신협	0.7	16.4	34.2	46.1	2.6	152	3.3
	새마을금고	0.0	17.9	33.8	40.4	7.9	151	3.4
성	남자	1.0	16.3	33.9	43.2	5.6	301	3.4
	여자	0.0	19.5	33.1	39.4	7.9	302	3.4
연령	19~39세	0.8	20.0	34.2	36.7	8.3	120	3.3
	40~59세	0.4	15.5	31.0	45.6	7.5	239	3.4
	60세 이상	0.4	19.3	35.7	39.3	5.3	244	3.3
권역	서울	1.5	40.3	32.8	25.4	0.0	67	2.8
	경기/인천	0.7	17.9	31.4	45.7	4.3	140	3.4
	대전/충청	0.0	5.7	38.6	48.9	6.8	88	3.6
	광주/전라	0.0	14.6	24.7	48.3	12.4	89	3.6
	대구/경북	0.0	15.3	43.5	38.8	2.4	85	3.3
	부산/울산/경남	0.9	14.7	35.8	33.9	14.7	109	3.5
	강원	0.0	36.0	16.0	48.0	0.0	25	3.1
학력	중졸 이하	0.0	20.8	35.8	34.0	9.4	53	3.3
	고졸	0.7	17.0	31.0	45.8	5.6	306	3.4
	전문대졸 이상	0.4	18.4	36.1	37.3	7.8	244	3.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8	24.8	32.8	34.4	7.2	125	3.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12.7	30.9	46.8	9.1	220	3.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7.0	30.4	46.8	5.8	171	3.4
	700만원 이상	1.2	22.6	46.4	27.4	2.4	84	3.1
	모름/무응답	0.0	33.3	66.7	0.0	0.0	3	2.7

□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예탁상품을 해지 의사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탁상품을 해지할 의사가 유지할 의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심층평가 조사와 거의 동일한 결과임
- 조합, 연령, 소득, 학력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고르게 의견이 분포됨
- 다만, 서울은 경우 유지 의사 쪽이 높은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남

〈표 IV-43〉 “예탁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8	13.7	38.0	42.0	5.5	495	3.4	
조합	농협	1.7	16.7	35.6	42.7	3.3	239	3.3
	신협	0.0	10.6	38.6	41.7	9.1	132	3.5
	새마을금고	0.0	11.3	41.9	41.1	5.6	124	3.4
성	남자	0.8	15.7	38.2	39.8	5.5	254	3.3
	여자	0.8	11.6	37.8	44.4	5.4	241	3.4
연령	19~39세	0.0	12.4	38.1	46.4	3.1	97	3.4
	40~59세	0.5	10.4	38.5	44.3	6.3	192	3.5
	60세 이상	1.5	17.5	37.4	37.9	5.8	206	3.3
지역	서울	3.3	31.7	41.7	20.0	3.3	60	2.9
	경기/인천	0.0	9.8	35.8	46.3	8.1	123	3.5
	대전/충청	0.0	2.0	42.0	56.0	0.0	50	3.5
	광주/전라	1.3	6.3	42.5	46.3	3.8	80	3.5
	대구/경북	0.0	20.0	31.4	40.0	8.6	70	3.4
	부산/울산/경남	1.0	12.0	41.0	40.0	6.0	100	3.4
	강원	0.0	41.7	8.3	50.0	0.0	12	3.1
학력	중졸 이하	2.1	29.2	37.5	29.2	2.1	48	3.0
	고졸	0.8	12.2	33.9	46.9	6.1	245	3.5
	전문대졸 이상	0.5	11.9	43.1	39.1	5.4	202	3.4
월평균	300만원 미만	2.0	22.4	42.9	27.6	5.1	98	3.1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8.7	30.1	54.1	6.6	183	3.6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7	12.8	39.0	43.3	4.3	141	3.4
	700만원 이상	0.0	15.7	50.0	28.6	5.7	70	3.2
	모름/무응답	0.0	33.3	33.3	33.3	0.0	3	3.0

□ 예탁상품의 가입한도 축소 시 예탁상품 해지 의사

- 비과세 폐지 시와 유사한 정도로 해지할 의사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조사와 거의 동일한 결과임
-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이것 역시 이전의 조사와 동일
- 서울이 해지보다는 유지 의사가 높은 유일한 지역임

<표 IV-44> “예탁상품의 가입 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6	18.2	37.4	39.2	4.6	495	3.3	
조합	농협	1.3	20.1	37.7	37.2	3.8	239	3.2
	신협	0.0	18.9	31.1	43.9	6.1	132	3.4
	새마을금고	0.0	13.7	43.5	37.9	4.8	124	3.3
성	남자	0.4	16.9	37.0	42.1	3.5	254	3.3
	여자	0.8	19.5	37.8	36.1	5.8	241	3.3
연령	19~39세	0.0	15.5	39.2	41.2	4.1	97	3.3
	40~59세	0.5	17.2	32.8	45.3	4.2	192	3.4
	60세 이상	1.0	20.4	40.8	32.5	5.3	206	3.2
권역	서울	3.3	40.0	26.7	30.0	0.0	60	2.8
	경기/인천	0.0	21.1	35.0	41.5	2.4	123	3.3
	대전/충청	0.0	2.0	54.0	44.0	0.0	50	3.4
	광주/전라	0.0	13.8	28.8	40.0	17.5	80	3.6
	대구/경북	0.0	17.1	42.9	35.7	4.3	70	3.3
	부산/울산/경남	1.0	10.0	44.0	42.0	3.0	100	3.4
	강원	0.0	50.0	16.7	33.3	0.0	12	2.8
학력	중졸 이하	2.1	27.1	37.5	27.1	6.3	48	3.1
	고졸	0.4	14.3	40.0	39.2	6.1	245	3.4
	전문대졸 이상	0.5	20.8	34.2	42.1	2.5	202	3.3
월평균	300만원 미만	2.0	29.6	34.7	29.6	4.1	98	3.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8.7	39.9	44.3	6.6	183	3.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15.6	38.3	41.1	5.0	141	3.4
	700만원 이상	0.0	32.9	31.4	35.7	0.0	70	3.0
	모름/무응답	0.0	0.0	66.7	33.3	0.0	3	3.3

□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와 조합경영에 대한 인식

-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으리라는 인식은 출자금 인출 의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 심층평가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임
- 서울지역에서 이런 의식이 약한 것을 제외하면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표 IV-45>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4	5.5	28.1	52.3	13.7	495	3.7	
조합	농협	0.8	5.9	26.4	52.3	14.6	239	3.7
	신협	0.0	6.8	28.0	54.5	10.6	132	3.7
	새마을금고	0.0	3.2	31.5	50.0	15.3	124	3.8
성	남자	0.8	5.1	29.9	51.2	13.0	254	3.7
	여자	0.0	5.8	26.1	53.5	14.5	241	3.8
연령	19~39세	1.0	7.2	27.8	48.5	15.5	97	3.7
	40~59세	0.5	4.7	32.3	48.4	14.1	192	3.7
	60세 이상	0.0	5.3	24.3	57.8	12.6	206	3.8
지역	서울	3.3	11.7	25.0	56.7	3.3	60	3.5
	경기/인천	0.0	1.6	22.0	56.1	20.3	123	4.0
	대전/충청	0.0	0.0	16.0	80.0	4.0	50	3.9
	광주/전라	0.0	5.0	40.0	42.5	12.5	80	3.6
	대구/경북	0.0	5.7	30.0	41.4	22.9	70	3.8
	부산/울산/경남	0.0	9.0	32.0	50.0	9.0	100	3.6
	강원	0.0	8.3	33.3	25.0	33.3	12	3.8
학력	중졸 이하	0.0	10.4	25.0	54.2	10.4	48	3.6
	고졸	0.8	4.1	30.2	52.2	12.7	245	3.7
	전문대졸 이상	0.0	5.9	26.2	52.0	15.8	202	3.8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11.2	34.7	44.9	9.2	98	3.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4.9	32.2	48.6	13.7	183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2.1	22.7	58.9	16.3	141	3.9
	700만원 이상	1.4	5.7	18.6	60.0	14.3	70	3.8
	모름/무응답	0.0	0.0	33.3	33.3	33.3	3	4.0

□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와 조합경영

- 예탁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으리라는 인식 역시 예탁금 인출 의사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 서울지역에서 이런 의식이 약한 것을 제외하면 집단별,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전 조사에서 수도권 응답자가 보였던 반응과는 상반됨

<표 IV-46>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4	5.3	25.5	59.8	9.1	495	3.7	
조합	농협	0.8	5.4	24.3	60.3	9.2	239	3.7
	신협	0.0	4.5	26.5	60.6	8.3	132	3.7
	새마을금고	0.0	5.6	26.6	58.1	9.7	124	3.7
성	남자	0.8	4.7	27.2	57.5	9.8	254	3.7
	여자	0.0	5.8	23.7	62.2	8.3	241	3.7
연령	19~39세	1.0	3.1	18.6	66.0	11.3	97	3.8
	40~59세	0.5	5.7	26.0	59.9	7.8	192	3.7
	60세 이상	0.0	5.8	28.2	56.8	9.2	206	3.7
지역	서울	3.3	8.3	25.0	63.3	0.0	60	3.5
	경기/인천	0.0	4.1	20.3	61.0	14.6	123	3.9
	대전/충청	0.0	0.0	10.0	88.0	2.0	50	3.9
	광주/전라	0.0	5.0	36.3	50.0	8.8	80	3.6
	대구/경북	0.0	2.9	30.0	51.4	15.7	70	3.8
	부산/울산/경남	0.0	9.0	26.0	61.0	4.0	100	3.6
	강원	0.0	8.3	41.7	16.7	33.3	12	3.8
학력	중졸 이하	0.0	10.4	37.5	45.8	6.3	48	3.5
	고졸	0.8	4.1	29.0	55.9	10.2	245	3.7
	전문대졸 이상	0.0	5.4	18.3	67.8	8.4	202	3.8
월평균	300만원 미만	0.0	11.2	34.7	48.0	6.1	98	3.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2.2	29.0	59.6	8.7	183	3.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0	2.8	19.1	65.2	12.8	141	3.9
	700만원 이상	1.4	10.0	17.1	65.7	5.7	70	3.6
	모름/무응답	0.0	0.0	0.0	66.7	33.3	3	4.3

□ 출자금 인출이나 예탁상품 해지 의사에 대한 순위 프로빗 분석

- 수도권에서는 출자금 한도 축소나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예탁금 비과세 한도 폐지 등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심층분석의 조사와는 대조되는 결과임
- 저소득층과 비교할 때는 중간소득에서 출자금이나 예탁금 관련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출자금 인출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출자들은 출자금 관련 비과세제도 폐지에도 인출이나 해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반응하고 있음
- 다른 요인들은 비과세 폐지 시 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7> 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시 행태(Ordered Probit)

	출자금 한도 축소되면 인출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시 인출	예탁 이자 비과세 폐지 시 해지 의사	예탁상품 가입한도 폐지 시 해지 의사
농협	-0.0123 (0.108)	0.0134 (0.106)	-0.136 (0.117)	-0.142 (0.117)
신협	-0.0505 (0.117)	-0.0896 (0.114)	0.0979 (0.124)	-0.00252 (0.124)
수도권	-0.394*** (0.103)	-0.326*** (0.101)	-0.146 (0.110)	-0.355*** (0.110)
동부	0.0973 (0.104)	0.0105 (0.102)	0.203* (0.116)	-0.00343 (0.115)
중간소득	0.226* (0.118)	0.353*** (0.116)	0.449*** (0.132)	0.517*** (0.133)
고소득	-0.152 (0.175)	0.0281 (0.171)	0.176 (0.194)	0.183 (0.195)
연령	-0.00383 (0.00441)	-0.00111 (0.00430)	-0.00276 (0.00495)	0.00108 (0.00495)
가입기간	-0.0105* (0.00623)	-0.00259 (0.00609)	-0.00502 (0.00668)	-0.0115* (0.00671)
대출	-0.284** (0.116)	-0.175 (0.113)	-0.191 (0.128)	-0.223* (0.128)
관측치 수	600	600	492	492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바.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및 이전 규모

- 비과세 혜택 축소 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 비과세제도가 축소되는지를 알고 있는 가입자의 비중은 높지 않음
 - 전체 603명의 응답자 중 11.1%인 67명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
 - 기관별 차이도 거의 없어서 농협 가입자는 동 비중이 10.4%, 신한 가입자는 10.3%,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12.1%였음

- 비과세 혜택 축소 계획에 대한 믿음
 - 비과세제도가 실제로 축소될 거라고 믿는 응답자의 비중은 32.3%로 제도 축소 계획을 인지한 응답자의 비중보다 더 높지만 전체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실제로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농협이 31.6%, 신한이 31.5%, 새마을금고는 36.1%였음

- 비과세 혜택 축소의 인지와 실제 축소에 대한 믿음
 - 축소계획을 인지했던 응답자 중 실제 축소되리라고 믿는 응답자의 비중은 64.2%(67명 중 43명), 인지 못했던 응답자 중 실제 축소되리라고 믿는 응답자 비중은 28.5%에 달함(536명 중 152명)
 - 즉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응답자 중에도 실제로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있기는 했으나, 인지했던 쪽에서 실제 축소되리라고 믿는 비중이 크게 높음
 -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가 실제 제도 변화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표 IV-48> 제도 변화(비과세 혜택 축소) 인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믿음

(단위: 명, %)

	축소 믿지 않음	축소 믿음	계
인지 못함	384	152 <28.5>	536 (88.9)
인지	24	43 <64.2>	67 (11.1)
합계	408 (67.7)	195 (32.3)	603 (100.0)

□ 제도 변경 시 예탁금 축소에 대한 추정 - 방법

- 현행 이자소득세 14% 전체를 면제하는 제도에서 5% 세율로 과세하거나 9%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어느 정도 예탁금이 줄어들지를 추정하여 봄
- 추정을 위해 1차로 예탁상품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음
 - 5% 세율로 과세할 경우 이전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495명 중 10.1%에 해당하는 50명이었으며,
 - 9% 세율로 과세할 경우 이전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495명 중 23.2%에 해당하는 120명이었음
- 2차로 이전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이전 의사를 밝힌 응답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①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 중 일부를 이전할지 ② 비과세 한도(3,000만원)까지만 남겨두고 예탁금을 이전할지 ③ 비과세 적용 예탁금 일부를 이전시킬지를 질문함
- 이상의 질문을 통해 이전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전체 비과세 예탁금 중 이전하고자 하는 금액의 비중도 추정할 수 있음

□ 제도 변경 시 예탁금 축소에 대한 추정 - 추정 결과

- 응답자 495명의 비과세 예탁금 총액은 약 94억 4,235만원임
- 5% 과세의 경우 감소할 예탁금액은 2억 4,550만원으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2.6%로 추정됨
- 9% 과세의 경우 감소할 예탁금액은 6억 8,081만원으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7.2%로 추정됨

□ 결과의 해석

- 응답자의 인식을 근거로 한 단순한 추정이고 실제 행태는 다를 수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어도 예탁금의 감소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그 이유는 예탁금을 시중은행으로 옮기는 응답자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임
- 설문 결과 예탁금을 시중은행으로 옮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시중은행의 14% 과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는 것과(약 53%), 계좌를 옮기는 절차가 번거롭기(약 32%) 때문이었음

- 위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외에도 조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든지, 비과세 이외의 장점 때문이라는 의견도 약 15%를 차지함
 -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할 금액의 비중도 50% 미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전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도 상당 금액은 기존 조합의 예탁금으로 남겨둘 의사를 보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시중은행과 금리차가 존재하는 한 예탁금의 이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들의 예탁금에 대한 인식
- 소수의 응답자이지만 응답자 중 대부분은 예탁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높은 이자율을 들고 있음(36명의 응답자 중 24명)
 - 예컨대,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예탁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28명의 응답자 중 19명)
- 비과세제도의 변경에 따른 예탁금 이전 의향 프로빗(Probit) 분석
- 종속변수는 비과세 폐지 시 예탁금 이전 의향, 비과세 폐지 후 5%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 비과세 폐지 후 9%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 5% 과세 시는 이전 의향이 없지만 9% 과세 시는 이전 의향, 비과세 한도 축소 시 이전 의향 등 다섯 개임
 - 프로빗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이전 의향을 높이거나 낮추는 관측 가능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과세 폐지 시 중간소득자들이 예탁금을 이전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자들과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탁금 이전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 과세 시 농협 가입자들의 이전 의사가 낮은 것을 제외한다면, 비과세 폐지 후 저율 과세할 경우 예탁금 이전 의사를 높여주는 설명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한도 축소 시에도 이전 의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탁금 이전 의향에서 집단 간 차이나 개인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표 IV-49> 시중은행으로 예탁금 이전 의향(Probit 분석)

	비과세 폐지 시	비과세 폐지 후 5%	비과세 폐지 후 9%	비과세 폐지 후 5% → 9%	비과세 한도 축소 시
농협	-0.104 (0.144)	-0.475** (0.203)	-0.0401 (0.157)	0.293 (0.183)	-0.0439 (0.143)
신협	0.0312 (0.155)	0.0236 (0.199)	0.227 (0.163)	0.293 (0.192)	0.160 (0.153)
수도권	-0.121 (0.134)	-0.0484 (0.184)	0.0878 (0.145)	0.180 (0.165)	-0.151 (0.134)
동부	0.222 (0.141)	0.198 (0.207)	0.0418 (0.155)	-0.0742 (0.176)	-0.0547 (0.140)
중간소득	0.573*** (0.164)	0.153 (0.242)	0.173 (0.180)	0.165 (0.206)	0.304* (0.162)
고소득	0.150 (0.241)	-0.0271 (0.344)	0.0633 (0.263)	0.105 (0.305)	0.0683 (0.239)
연령	-0.00467 (0.00614)	0.00404 (0.00862)	-0.000868 (0.00666)	-0.00435 (0.00759)	0.00166 (0.00608)
가입기간	-0.00619 (0.00824)	-0.00602 (0.0123)	0.000322 (0.00897)	0.00418 (0.0100)	-0.0144* (0.00837)
대출	-0.272* (0.161)	0.315 (0.217)	-0.0377 (0.176)	-0.320 (0.208)	-0.0469 (0.160)
제도변화 인지	-0.376* (0.198)	-0.0664 (0.260)	-0.0222 (0.208)	0.0337 (0.246)	-0.0980 (0.192)
관측치 수	462	462	462	462	462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이전 심층평가 설문조사와의 차이

- 2018년의 설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 폐지 시 약 30%의 가입자들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평균 약 80% 정도를 이전시킬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전 금액의 비중은 예탁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4%의 금액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이번 조사에서의 비과세의 완전 폐지 시 이전 의향은 약 39%로 이전의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에 계획된 정도의 비과세 혜택 축소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의 조사에서 예탁금 비과세 완전 폐지 시의 이전 비중이 약 24%로 추정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사에서 얻은 5%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2.6% 이전, 9% 과세의 경우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7.2% 이전이라는 추정치는 이전의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계된 행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여부
 - 설문 대상자 중에서 ISA에 가입한 사람들은 약 12.3%인데 이는 이전 심층평가 조사의 5.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한편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전 조사의 12%에서 9.5%로 다소 감소하였음
 - 이전 조사와는 달리 조합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ISA 계좌가 조금씩 넓게 인지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ISA 가입을 위해 기존의 예탁금을 줄였는지 여부
 - ISA 계좌 가입을 위해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옮긴 경우는 ISA에 가입한 74명 중 4%에 해당하는 3명에 불과해 ISA 제도와의 중복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의 요약

-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출자금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자의 비중은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모두 낮아서 10% 내외의 수준으로 지난 심층평가의 조사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장 빈도가 높은 출자금은 1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소액 출자자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출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응답자의 예탁금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예탁금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약 80%이며 기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예탁금의 평균은 세 기관이 유사하며 2,500만원 내외 수준임
- 비과세대상 예탁금을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 이상 두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농협이 약 10%, 다른 기관은 약 7% 수준임
- 저축 여력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실제로 예탁금의 수준이 비과세 한도 이내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응답자들의 저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개인 특성과 출자금/예탁금액의 관계

- 출자금액은 읍면 거주자에 비해 동 거주자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자금이 많은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특성은 예탁금액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른 예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농협의 경우만 수도권 거주자들의 예탁금액이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예탁금액이나 출자금액은 관측되는 개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임

□ 인식과 관련된 주요 결과

- 조합 가입자인 응답자들은 각종 비과세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지난 심층평가에 비해 다소 강화됨
-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조합 가입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가입자의 인식면에서는 저축지원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소득, 학력, 연령 등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응

- 설문을 통해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반응을 추정한 결과 5%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2.6%, 9% 과세의 경우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7.2%가 이전되리라는 추정치를 얻음

-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예탁금이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농가경제조사의 분석에서 얻은 이자율에 대한 저축액의 민감하지 않은 반응과도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V. 타당성 분석



V.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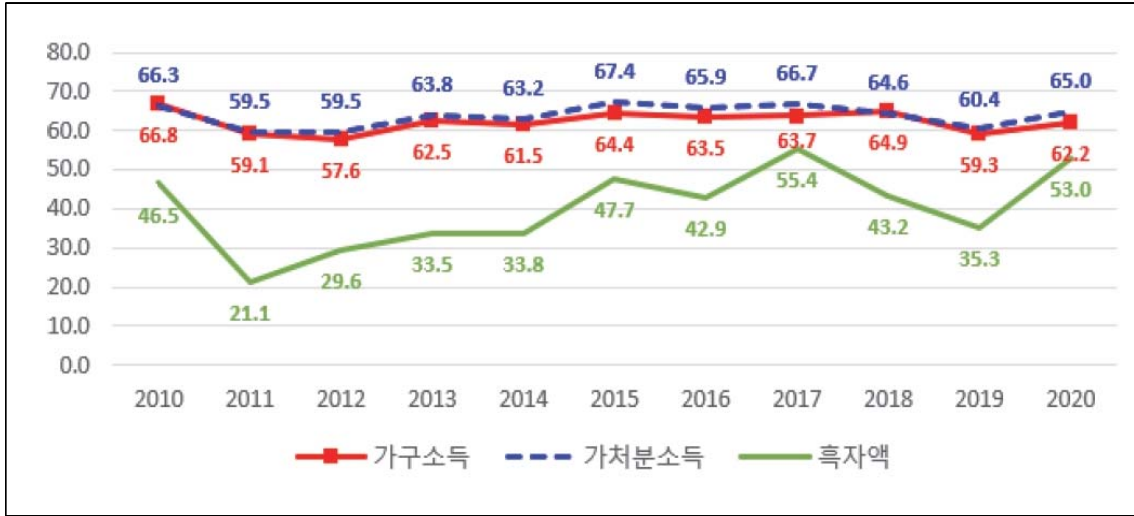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함
 -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례 조치임
 - 소득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임소영·김태후·민선형(2021)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 62.3%선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¹¹⁾
 -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 가구 대비 농가 저축액 비율은 2011년 21.1%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3.0%까지 증가하였음
 - 농가의 흑자액 증가는 농촌지역의 물가 상승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음

11)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p. 6

[그림 V-1]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단위: %)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1인 가구는 제외.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구소득-가계지출. 2017년 이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을 이용한 단순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자료: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p. 7 인용

- 한편,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자본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상호금융기관의 자본형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예탁금의 수탁 수준을 높임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려주는 역할을 함

- 동 특례제도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목적은 아니지만, 동 특례제도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은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보장해줄 수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공익사업 또는 복지사업을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기로 함

- 김봉균·여효성(2021)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분석함¹²⁾

- 이들에 따르면, 은행의 점포 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점포 수가 많다면, 보다 폭넓은 영업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임¹³⁾
- 전국의 은행 점포 수(2015~2019)는 직전 3개년도(2012~2014)와 비교하여 8.64% 감소하였고, 일반은행은 11.20%, 특수은행 점포 수는 1.49% 감소
- 반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점포 수도 최근 3년 감소하기는 했지만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점포 수는 6,811개에서 6,495개로 4.64% 감소
 - 신용협동조합 4.48%, 상호금융 2.31%, 새마을금고 5.94%의 점포 수 감소 기록
- 대인점포의 감소는 자동화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대세이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일반은행에 비하여 대인점포를 상대적으로 많이 유지함으로써 지역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표 V-1>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수 현황(수도권 및 비수도권 기준)

(단위: 개, %)

지역	구분	기간		증가율
		2012~2014	2015~2019	
전국	은행	7,626	6,967	-8.64
	일반은행	5,617	4,988	-11.20
	특수은행	2,009	1,979	-1.4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6,811	6,495	-4.64
	상호저축은행	347	316	-8.93
	신용협동조합	938	896	-4.48
	상호금융	1,385	1,353	-2.31
	새마을금고	1,398	1,315	-5.94
	기타	2,743	2,615	-4.67

12) 김봉균·여효성,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연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88

13) 김봉균·여효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96

<표 V-1>의 계속

(단위: 개, %)

지역	구분	기간		증가율
		2012~2014	2015~2019	
수도권	은행	1,454	1,284	-11.69
	일반은행	1,111	954	-14.13
	특수은행	343	330	-3.7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603	568	-5.80
	상호저축은행	70	64	-8.57
	신용협동조합	94	88	-6.38
	상호금융	76	74	-2.63
	새마을금고	144	137	-4.86
	기타	219	205	-6.39
비수도권	은행	232	221	-4.74
	일반은행	163	151	-7.36
	특수은행	69	70	1.45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353	338	-4.25
	상호저축은행	9	8	-11.11
	신용협동조합	46	44	-4.35
	상호금융	82	80	-2.44
	새마을금고	68	64	-5.88
	기타	148	142	-4.05

자료: 김봉균·여효성(2021), 표 4-11(p. 95) 인용

□ 오태록(2021)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 3저 현상으로 대표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함¹⁴⁾

○ 지역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자구적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필요성을 언급함¹⁵⁾

○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14) 오태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소고-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30권 제19호, 2021, p. 19

15) 오태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소고-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30권 제19호, 2021, p. 21

제공하는 다양한 외부효과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송재일(2017)은 협동조합, 특히 신탁은 지역사회에서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거론함¹⁶⁾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탁은 이용자 소유은행(User-owner bank)으로 투자자 소유은행(Investor-owner bank)에 비하여 사업 및 재무적 위험도가 낮음¹⁷⁾
 - 신탁은 주로 지역에 강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덜 노출됨
 - 상호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장점으로 언급하였음

2. 지원방식의 적절성

-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조세지출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약 4,899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4.4% 정도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약 2조 2,74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의 73.6%를 차지하고 있음

16) 송재일,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특히 신탁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5권 제2호,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pp. 142~144 발췌하여 정리

17) 투자자 소유은행은 투자자와 예금주 및 고객과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며, 고수익·고위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에 예금주는 위험회피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V-2> 소득수준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인원 및 비중(2020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합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제출된 예탁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예탁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 등 ¹⁾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비중	금액	비중
소득 규모별	1,389,969	640,291	5,193,051	2,451,104	6,583,020	-	3,091,395	-
0원 이하	60,592	26,362	2,776,590	1,343,704	2,837,182	43.1	1,370,066	44.3
1천만원 이하	624,749	274,492	549,124	239,109	1,173,873	17.8	513,601	16.6
2천만원 이하	268,494	120,492	620,404	270,087	888,898	13.5	390,579	12.6
합계	953,835	421,346	3,946,118	1,852,900	4,899,953	74.4	2,274,246	73.6
3천만원 이하	147,450	70,193	383,476	175,896	530,926	8.1	246,089	8.0
4천만원 이하	78,380	38,093	224,577	106,571	302,957	4.6	144,664	4.7
5천만원 이하	47,149	23,336	154,291	74,262	201,440	3.1	97,598	3.2
6천만원 이하	32,718	16,473	121,011	59,299	153,729	2.3	75,772	2.5
7천만원 이하	23,628	11,973	99,286	48,971	122,914	1.9	60,944	2.0
8천만원 이하	18,827	9,741	80,651	40,317	99,478	1.5	50,058	1.6
9천만원 이하	15,223	8,002	50,255	24,884	65,478	1.0	32,886	1.1
1억원 이하	12,011	6,323	33,310	16,346	45,321	0.7	22,669	0.7
2억원 이하	42,928	23,933	88,014	44,840	130,942	2.0	68,773	2.2
3억원 이하	9,368	5,617	8,343	4,578	17,711	0.3	10,195	0.3
4억원 이하	3,531	2,117	2,027	1,187	5,558	0.1	3,304	0.1
5억원 이하	1,697	1,043	781	468	2,478	0.0	1,511	0.0
5억원 초과	3,224	2,101	911	584	4,135	0.1	2,685	0.1

주: 1) 제출된 예탁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으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2,764,200명, 1조 3,377억 790만원)를 포함하였으며,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국세청 자료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자 등은 약 10,114천명 수준으로 전체 출자자의 75.1%를 차지함
 - 이들의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은 약 1조 97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의 75.7%를 차지함

<표 V-3> 소득수준별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인원 및 비중(2020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비과세 출자 배당소득				합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제출된 출자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출자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 등 ¹⁾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비중	금액	비중
소득 규모별	3,010,829	335,316	10,458,079	761,853	13,468,908	-	1,097,169	-
0원 이하	150,598	32,145	6,009,531	536,691	6,160,129	45.7	568,836	51.8
1천만원 이하	1,326,341	109,371	999,595	53,608	2,325,936	17.3	162,979	14.9
2천만원 이하	574,115	52,022	1,054,061	46,683	1,628,176	12.1	98,705	9.0
합계	2,051,054	193,538	8,063,187	636,981	10,114,241	75.1	830,519	75.7
3천만원 이하	312,133	34,196	661,824	26,254	973,957	7.2	60,450	5.5
4천만원 이하	170,521	21,703	414,717	16,180	585,238	4.3	37,883	3.5
5천만원 이하	104,649	14,292	300,927	13,710	405,576	3.0	28,002	2.6
6천만원 이하	73,622	10,915	243,557	12,749	317,179	2.4	23,664	2.2
7천만원 이하	54,117	8,245	203,884	12,311	258,001	1.9	20,556	1.9
8천만원 이하	42,765	6,879	164,946	11,086	207,711	1.5	17,965	1.6
9천만원 이하	34,455	5,956	105,636	7,861	140,091	1.0	13,817	1.3
1억원 이하	27,192	4,957	72,700	5,693	99,892	0.7	10,650	1.0
2억원 이하	97,413	21,102	198,705	16,607	296,118	2.2	37,709	3.4
3억원 이하	22,265	6,330	19,444	1,671	41,709	0.3	8,001	0.7
4억원 이하	8,316	2,358	4,773	450	13,089	0.1	2,808	0.3
5억원 이하	4,079	1,292	1,656	131	5,735	0.0	1,423	0.1
5억원 초과	8,248	3,552	2,123	169	10,371	0.1	3,721	0.3

주: 1) 제출된 출자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으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5,982,458명, 5,188억 7,900만원)를 포함하였으며,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저축 여력이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더 적절한 지원방식일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지원 방식은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비과세제도는 자발적으로 저축 의지가 있는 서민계층에 저축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탁금과 출자금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으므로 지원방식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동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4,1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전체 금액은 큰 반면, 1인당 비과세 수혜금액은 연 24,000~65,000원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임¹⁸⁾
-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수혜자의 3/4 이상이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의 다수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고르고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은 오히려 적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저소득층일수록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볼 수도 있음
 -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동 지원방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3. 지원대상의 적절성

- 농협 등의 조합원 자격은 일정 조건의 농업, 어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주민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제한이 없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있어,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준조합원으로 예탁금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2021년부터 「조특법」 개정에 의하여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18) 동 금액의 도출에 대해서는 제Ⅶ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은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타당한 제한으로 간주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수혜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에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동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정책 대상자 설정에 개선의 여지는 있음
 - 금융소득 이외의 고소득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Ⅶ장에서 제시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을 정리한 <표 V-4>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약 80~90% 이상이 준조합원의 예탁금 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제1그룹에서 준조합원은 반드시 농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음
 - 그러나 제2그룹은 준조합원 제도가 없다는 점과 제1그룹에서도 준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조합의 매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준조합원도 서민층에 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소득기준 등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음

<표 V-4>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 비율

(단위: 명,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17년	645,711 (16.70)	3,221,608 (83.30)	3,867,319	17,821 (5.85)	286,760 (94.15)	304,581	17,641 (19.99)	71,973 (80.31)	89,614
2018년	642,036 (16.49)	3,250,374 (83.51)	3,892,410	18,900 (5.52)	323,577 (94.48)	342,477	20,727 (20.77)	79,050 (79.23)	99,777
2019년	649,335 (16.50)	3,284,896 (83.50)	3,934,231	19,284 (5.33)	342,602 (94.67)	361,886	24,005 (20.80)	91,410 (79.20)	115,415

<표 V-4>의 계속

(단위: 명,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조합원	준조합원	합계
2020년	656,538 (17.19)	3,162,965 (82.81)	3,819,503	19,612 (5.83)	316,608 (94.17)	336,220	25,480 (20.68)	97,756 (79.32)	123,236
2021년	646,022 (18.09)	2,924,704 (81.91)	3,570,726	19,787 (5.88)	316,469 (94.12)	336,256	27,184 (21.34)	100,189 (78.66)	127,373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각 상호금융기관 자료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표 V-5>에서 종합소득 수준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을 살펴보면, 2020년 귀속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제출된 예탁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를 모수로 한 자료에서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평균금액은 약 46만원 정도임¹⁹⁾
- 2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약 46만원 미만인 반면,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평균 비과세 이자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억원 초과자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은 약 65만원으로 계산됨
-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3천만원이기 때문에, 5억원을 넘게 예탁하고 있는 납세자도 최대 3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높은 소득구간의 평균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비과세가 적용되는 평균 예탁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득계층은 2021년부터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19) <표 VI-5>의 숫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를 포함한 1인당 비과세 예탁금의 평균은 약 46.4만원으로 큰 차이 없음

<표 V-5> 종합소득 수준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현황(2020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원)

종합소득구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인원	금액	1인당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모든 소득 합계액 규모별	1,389,969	640,291	460,651
0원 이하 ¹⁾	60,592	26,362	435,074
1천만원 이하	624,749	274,492	439,364
2천만원 이하	268,494	120,492	448,771
3천만원 이하	147,450	70,193	476,044
4천만원 이하	78,380	38,093	486,000
5천만원 이하	47,149	23,336	494,940
6천만원 이하	32,718	16,473	503,488
7천만원 이하	23,628	11,973	506,743
8천만원 이하	18,827	9,741	517,376
9천만원 이하	15,223	8,002	525,622
1억원 이하	12,011	6,323	526,447
2억원 이하	42,928	23,933	557,508
3억원 이하	9,368	5,617	599,620
4억원 이하	3,531	2,117	599,668
5억원 이하	1,697	1,043	614,858
5억원 초과	3,224	2,101	651,533

주: 1) 소득금액 결손 포함

자료: 국세청에 귀속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제출된 예탁금 금융소득지급명세서가 있는 납세자를 모수로 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의 목적으로 도입됨

농어민·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위한 유사한 금융상품을 다음 <표 V-6>과 같이 비교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 240만원의 저축한도가 있으며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되고, 저축 장려금이 지급됨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의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됨
-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
- 이들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V-6>과 같음

〈표 V-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비교

구분	가입자격	과세특례	비고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조합원 자격: 일정 조건의 농업, 어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신협, 새마을금고: 거주요건만 충족) - 준조합원 자격: 거주자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예탁금) 3천만원 - (출자금) 1천만원	「조특법」 §88의5 「조특법」 §89의3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업인의 경우 2ha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업인의 경우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임업인의 경우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ha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의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일반중도해지 시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부과) - 일반, 저소득: 연간 최고 납입한도 240만원 * 일반저축과 저소득저축 장려금 지급률 상이	「조특법」 §87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5천만원	「조특법」 §88의2)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15. 12. 31. 이전 가입분) -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조특법」 §91의14

〈표 V-6〉의 계속

구분	가입자격	과세특례	비고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p>의무가입기간(3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조특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DSA)에 대한 과세특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p>*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 (단, 기존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을 차감 후 가입가능)</p>	

〈표 V-6〉의 계속

구분	가입자격	과세특례	비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납입	「조특법」 §91의16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보험료 1억원 이하 - 월적립식 보험: 1인당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소득세법」 §16⑬호 「소득세법시행령」 §25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각 조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은 <표 V-7>과 같음²⁰⁾

○ 가입기준을 만족해도 ① 농업 외 상시근로 여부와 ② 소득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은 가입이 불가함

<표 V-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가입기준

구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일반 농어민	2ha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ha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¹⁾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 1ha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양식업을 하지 않는 사람 - 어선원이 아닌 사람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ha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주: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
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65세 이상인 거주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²¹⁾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 「조특법」 제87조의 2

21) 「조특법」 제88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자는 직접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한도를 두고 있음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임
-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

<표 V-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

가입자 구분	비과세 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함)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함) 	400만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 각각의 저축상품은 가입 대상, 가입 조건, 우대 혜택, 제약조건 등이 차이가 나지만, 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가입 대상 측면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ISA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금융상품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동 과세특례 상품을 제공하는 상호금융기관에서는 ISA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등, 금융상품 간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부인할 만큼의 중복성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함

VI. 효과성 분석



VI.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의 의미

- 현재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인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자에 대한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미시적 정보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이 제도의 성과나 향후에 가능한 제도 변화가 수혜자들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론해야 하는 상황임
- 한정된 정보일 수밖에 없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수혜가구의 저축행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저축행위 변화를 추론해 봄
- 공개된 자료로는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자를 식별해 낼 수 없으므로 자료 분석은 주로 농어가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분석자료에 대한 소개

-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소득, 저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도의 수혜자인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 행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는 농어가 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농가 수지와 농가 자산부채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과 이자율에 의존하는 저축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

□ 분석의 개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전체 표본의 약 6~7%에 해당하는 농어가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 및 재정지원의 수혜 대상인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연도별로 추정할 수 있음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 조세 및 재정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가의 저축이 과연

상대적으로 더 많은지를 일차적으로 검토

- 농어가의 저축액이 더 많다면 그 원인이 여러 형태의 저축 지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²²⁾
- 하지만 농가의 저축이 비농가에 비해 많은 것이 반드시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음
-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구 단위의 미시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의 개요: 농어가경제조사를 활용한 분석

- 농어가조사에서 농어가 가구의 연간 소득과 가구별 저축액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구 소득 및 이자율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음(농협의 이자율 자료는 파악 가능)
- 소득과 이자율 자료를 바탕으로 이자율 변화에 따른 저축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가 완화되거나 사라질 경우의 효과를 추론
- 추가로, 농어가 가구의 저축총액을 도출하여 2009년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바뀌었던 제도 변화에 따른 저축의 변화도 추정할 수 있음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의 이유

- 이 자료에는 가구주의 산업 및 직업 분류가 나타나 있어 여러 가구 중에서 농어민 가구를 식별할 수 있음
-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는 엄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는 농어가 가구와 다른 가구의 비교를 통해 농어가 저축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출 지원 효과의 가능성을 우선 추정하고자 함
- 출자금과 예탁금 과세특례 대상자의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제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저축장려제도가 지원 하는 잠재적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 가구와 다른 가구의 비교를 통해 저축을 지원하는 제반 제도의 복합적 효과를 추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22) 물론 농가 저축이 비농가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각종 지원 덕분에 유사한 경제 여건을 가진 다른 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저축이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시점과 분석 기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저축, 자산과 관련한 자료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사로 2010년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에는 「가계금융조사」로 실행되다가 2012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2021년까지 조사 완료되어 있음
- 매년 조사의 기준 시점은 저량(stock)변수인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 해당 연도의 3월이며, 유량(flow)변수인 소득 및 지출의 경우 이전 연도의 연간 자료임
- 자료는 2010년부터 최근 자료까지를 모두 활용하되 유량변수로서 저축을 분석하는 경우는 1년간 저축액을 파악할 수 있는 2012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

□ 농업가구의 식별

- 산업과 직업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코드가 “A”에 해당하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직업코드가 “6”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로 산업과 직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농가로 간주함(이하 편의상 “농가”로 통일하여 지칭)
- 이런 방식으로 식별된 농가 가구는 매년 전체 조사가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음

□ 농가와 비농가의 자산 비교

- 자산 총액이나 순자산액은 농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을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 자산액은 약 4억 9천만원, 비농가의 평균 자산액은 약 4억 5천만원으로 농가 쪽이 약 5천만원 정도 많음
 - 같은 시점의 순자산액도 농가가 약 4억 4천만원, 비농가가 약 3억 8천만원으로 역시 농가가 5,500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금융자산으로 한정하면 농가에 비해 비농가가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농가와 비농가의 금융자산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2010년 조사에서는 농가의 금융자산 총액이 비농가의 약 50%였다가 2021년에는 약 65%로 증가함
- 요약하면, 농가의 총자산과 순자산이 조사된 거의 모든 연도에서 비농가에 비해 많지만, 이는 주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기인한 것이며 금융자산은 농가 쪽이 훨씬 적음

<표 VI-1>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 - 자산

(단위: 만원)

	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2010	33,066.4	30,911.5	3,251.8	6,665.2	29,542.8	25,683.5
2011	35,423.3	32,339.6	4,243.2	7,657.1	31,469.5	26,531.8
2012	37,648.0	32,463.1	4,295.1	8,217.5	33,636.0	27,004.4
2013	39,976.4	32,488.7	4,758.0	8,630.6	35,414.8	26,765.1
2014	39,613.8	32,842.2	4,912.5	8,725.0	34,743.9	27,050.3
2015	40,430.5	33,645.3	5,167.5	8,819.4	35,814.7	27,725.5
2016	41,961.4	35,850.7	5,625.3	9,156.6	36,863.5	29,432.1
2017	45,025.8	37,205.4	6,083.2	9,387.1	39,711.1	30,488.4
2018	48,721.3	40,040.5	6,448.8	9,897.5	43,373.0	32,976.5
2019	46,763.9	40,418.0	6,230.2	9,983.9	41,830.9	33,343.9
2020	47,111.2	40,821.0	6,312.9	9,766.5	41,771.4	33,576.9
2021	49,447.2	45,448.4	6,545.0	10,350.2	44,132.9	38,066.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에서 계산

□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 및 저축

- 자산과는 달리 소득과 저축액은 비농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은 비농가 쪽이 일관되게 더 높으며, 농가와 비농가의 평균 소득 비율은 약 70~7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²³⁾에서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는 다소 줄어들어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비농가 가처분소득의 약 8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농가가 세금에서 여러 형태의 혜택을 받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석에서 연간 저축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함
 - 연간 저축은 유량변수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주로 자산상태를 보여주는 저장변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해 동안 증가한 저축액을 알려주는 정보는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저축변수를 도출하여 이용함

23)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 사이 이전지출비, 비영리단체 이전 지출비, 연간지급이자 등을 뺀 값으로 정의됨

- 이러한 저축의 정의하에서 저축액도 비농가 쪽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과 비례하는 정도는 아님
- 즉, 비농가 쪽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축성향은 농가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VI-2〉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 - 유량(flow)변수

(단위: 만원)

	소득		가처분소득		저축(가처분소득-소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2010	2,860.6	4,039.9	2,421.7	3,225.3		
2011	3,056.4	4,207.8	2,617.1	3,406.7		
2012	3,006.1	4,387.5	2,617.8	3,586.7	1,068.6	1,321.2
2013	3,452.8	4,521.3	2,948.1	3,671.4	1,171.0	1,396.5
2014	3,470.1	4,660.0	3,006.5	3,811.9	1,300.5	1,568.7
2015	3,658.9	4,707.4	3,237.1	3,867.4	1,477.2	1,577.3
2016	3,933.8	4,769.2	3,473.3	3,917.9	1,718.1	1,602.2
2017	4,196.3	5,302.3	3,706.1	4,346.4	2,005.3	1,937.4
2018	4,190.7	5,445.8	3,658.6	4,429.8	1,920.5	1,924.7
2019	4,196.0	5,498.4	3,661.8	4,452.1	1,870.4	1,909.7
2020	4,127.1	5,593.2	3,586.5	4,547.0	1,749.9	1,953.3
2021	4,317.9	5,632.2	3,786.1	4,610.0	1,886.2	2,042.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각 연도)에서 계산

□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비교를 위한 회귀분석

- 농가가 비농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저축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봄
- 가구의 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농가의 저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회귀분석임
- 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고 연도별로 추정함

$$\text{저축액} = \beta_0 + \beta_1 \text{농가더미} + \beta_2 \text{가처분소득} + \beta_3 \text{가처분소득}^2 + \Gamma \text{교육수준더미변수} + \beta_4 \text{연령} + \beta_5 \text{연령}^2 + \beta_6 \text{가구원수} + \epsilon$$

- 설명변수로는 가처분소득과 함께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 여력이 더 크다는 사

실까지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의 제공항을 추가하였으며, 소득변수 외에도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원 수를 등을 추가함

- 이런 설명변수에 농가 더미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소득 및 다른 여건이 유사한 경우 농가의 저축이 비농가에 비해 많을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물가상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소득과 저축 변수는 202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변수로 변환하였음
- 이하에서는 농가 가구 중에서도 중간소득이나 저소득가구의 저축행위를 살펴 보기 위해 전체 표본이 아닌 중간 및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구성한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도 추가함

□ 회귀분석 결과 - 전체 표본

-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7년부터 2021년의 5개년간 가구의 저축함수를 추정 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농가 가구의 저축액이 비농가 가구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농가 더미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계수 값을 해석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2020년 물가를 기준으로 농가 가구가 연간 177만원에서 260만원 정도 더 저축을 하고 있음
- 농가의 가구 특성을 보면 비농가 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은 편이며, 학력이 낮은 편이며, 연령은 10세가량 높은 편이며, 가구원 수는 다소 낮는데, 이 중 낮은 소득은 저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50대 중반의 높은 연령이나 가구원 수가 적은 것은 저축에 유리하게 작용함²⁴⁾
-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농가의 저축액이 더 많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농가의 저축 유인을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재정-조세 정책도 잠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인 저축함수의 설명능력은 높아서 결정계수(R^2) 값은 0.9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24) 회귀분석에 따르면 50대 중반까지는 저축액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으므로 적어도 평균적으로 농어가의 높은 연령은 저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표 VI-3>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가 더미	225.3*** (47.04)	261.3*** (48.38)	203.9*** (34.35)	196.8*** (32.91)	176.9*** (29.67)
실질소득	0.795*** (0.00451)	0.793*** (0.00427)	0.786*** (0.00317)	0.786*** (0.00298)	0.801*** (0.00282)
실질소득제곱	1.63e-06*** (1.02e-07)	9.86e-07*** (6.20e-08)	1.17e-06*** (5.73e-08)	1.08e-06*** (3.84e-08)	1.01e-06*** (4.02e-08)
중학교	-20.35 (45.25)	-84.96* (46.07)	-9.093 (32.66)	-18.99 (31.56)	-17.53 (29.46)
고등학교	-281.7*** (39.49)	-259.3*** (40.45)	-282.1*** (28.62)	-221.2*** (27.82)	-221.8*** (25.86)
전문대	-491.3*** (52.85)	-517.7*** (54.84)	-513.4*** (38.59)	-423.8*** (37.17)	-404.7*** (34.18)
대학교	-752.8*** (44.64)	-783.0*** (46.11)	-758.2*** (32.79)	-669.9*** (32.02)	-599.2*** (29.71)
대학원	-1,293*** (61.92)	-1,187*** (63.27)	-1,290*** (45.49)	-958.8*** (44.43)	-931.0*** (41.58)
가구주 연령	-66.22*** (5.569)	-66.31*** (5.807)	-55.22*** (4.148)	-46.40*** (3.999)	-40.72*** (3.626)
연령제곱	0.618*** (0.0497)	0.610*** (0.0514)	0.508*** (0.0363)	0.449*** (0.0347)	0.397*** (0.0315)
가구원 수	-379.3*** (10.89)	-392.1*** (11.39)	-408.3*** (8.262)	-447.5*** (8.165)	-464.2*** (7.599)
관측치 수	9,185	9,261	18,406	18,064	18,187
R ²	0.899	0.895	0.881	0.895	0.907

주: 1.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저축액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회귀분석 결과 - 농가 가구소득 70분위 이하에 대한 효과

- 표본을 농가 가구 기준으로 소득 70분위 이하로 제한하여 추정해 봄
- 이를 위해 각 연도별로 농가 중 소득 70분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구하고 그 이하의 소득인 농가 및 비농가 가구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이들 가구 중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액 차이를 살펴봄
 - 즉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을 비교함
- 제한된 표본에서도 농가의 저축액은 비농가의 저축액에 비해 2020년 물가수준 기준으로 약 40만원에서 108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4>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 농가 소득 70분위 이하 가구 표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가 더미	80.07** (36.29)	108.3*** (36.03)	47.29* (25.64)	50.74** (24.53)	39.78* (22.75)
실질소득	0.885*** (0.0308)	0.965*** (0.0311)	1.136*** (0.0156)	0.946*** (0.0168)	0.903*** (0.0199)
실질소득제곱	-1.96e-05*** (6.82e-06)	-3.75e-05*** (6.94e-06)	-7.93e-05*** (3.50e-06)	-3.17e-05*** (3.79e-06)	-2.08e-05*** (4.32e-06)
중학교	-88.71*** (31.87)	-129.0*** (31.99)	-82.42*** (22.83)	-100.6*** (21.94)	-89.14*** (20.82)
고등학교	-298.1*** (28.74)	-277.4*** (29.11)	-284.4*** (20.65)	-235.4*** (19.93)	-249.6*** (18.80)
전문대	-440.0*** (42.90)	-406.2*** (44.67)	-419.8*** (32.31)	-344.1*** (31.00)	-328.0*** (28.36)
대학교	-563.3*** (35.89)	-573.9*** (36.62)	-477.3*** (26.80)	-459.0*** (26.18)	-393.4*** (24.44)
대학원	-479.1*** (68.08)	-505.1*** (69.12)	-459.3*** (54.17)	-411.3*** (52.48)	-525.4*** (47.44)
가구주 연령	-30.42*** (4.190)	-27.92*** (4.326)	-20.28*** (3.157)	-13.36*** (3.057)	-12.93*** (2.761)
연령제곱	0.319*** (0.0364)	0.300*** (0.0372)	0.237*** (0.0267)	0.186*** (0.0256)	0.179*** (0.0232)
가구원 수	-299.5*** (9.813)	-310.8*** (10.19)	-341.6*** (7.809)	-349.5*** (7.894)	-354.7*** (7.496)
관측치 수	5,271	5,304	10,104	9,892	10,352
R ²	0.571	0.568	0.570	0.579	0.587

주: 1.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저축액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회귀분석 결과 - 농가 중위소득 이하에 대한 효과

- 소득 70분위의 분석과 유사하게 각 연도별로 농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농가 및 비농가 가구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이들 가구 중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액 차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 이렇게 제한된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농가의 저축액은 2020년을 제외하면 비농가의 저축액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호는 양수이지만 유의수준 10%에서 농가와 비농가 집단의 저축액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 즉 중위소득 이하 소득을 가진 농가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비농가 가구와 저축액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VI-5> 최근 5년의 가구 저축함수의 추정 - 농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 표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가 더미	58.45 (37.81)	44.58 (37.14)	28.30 (26.19)	48.45** (24.45)	-5.874 (22.59)
실질소득	1.027*** (0.0381)	1.271*** (0.0390)	1.148*** (0.0292)	1.004*** (0.0151)	1.019*** (0.0209)
실질소득제곱	-6.36e-05*** (1.34e-05)	-0.000150*** (1.36e-05)	-0.000107*** (1.02e-05)	-5.41e-05*** (4.83e-06)	-5.97e-05*** (6.43e-06)
중학교	-102.4*** (31.78)	-119.9*** (31.24)	-85.74*** (22.41)	-97.92*** (20.93)	-99.20*** (19.66)
고등학교	-271.4*** (30.02)	-209.8*** (29.32)	-227.7*** (20.70)	-185.8*** (19.56)	-213.3*** (18.09)
전문대	-396.5*** (49.30)	-284.0*** (50.54)	-387.5*** (36.71)	-309.7*** (33.40)	-280.8*** (30.43)
대학교	-434.0*** (41.20)	-488.9*** (40.56)	-396.2*** (29.43)	-340.3*** (28.02)	-317.6*** (25.45)
대학원	-421.5*** (87.72)	-407.4*** (81.61)	-377.6*** (64.54)	-286.8*** (60.68)	-358.2*** (53.17)
가구주 연령	-16.59*** (4.407)	-7.766* (4.530)	-5.978* (3.332)	-2.327 (3.059)	-4.697* (2.715)
연령제곱	0.207*** (0.0374)	0.142*** (0.0379)	0.122*** (0.0273)	0.102*** (0.0250)	0.117*** (0.0223)
가구원 수	-285.2*** (11.94)	-295.0*** (12.15)	-317.4*** (9.331)	-344.6*** (9.227)	-330.4*** (8.730)
관측치 수	3,482	3,510	6,857	6,861	7,289
R ²	0.500	0.530	0.503	0.561	0.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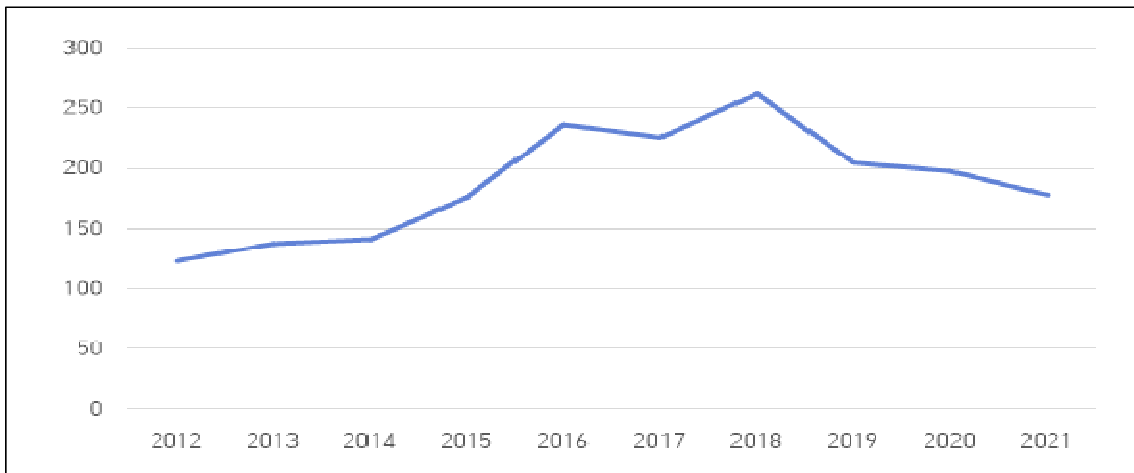
주: 1.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저축액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회귀분석 결과 - 분석기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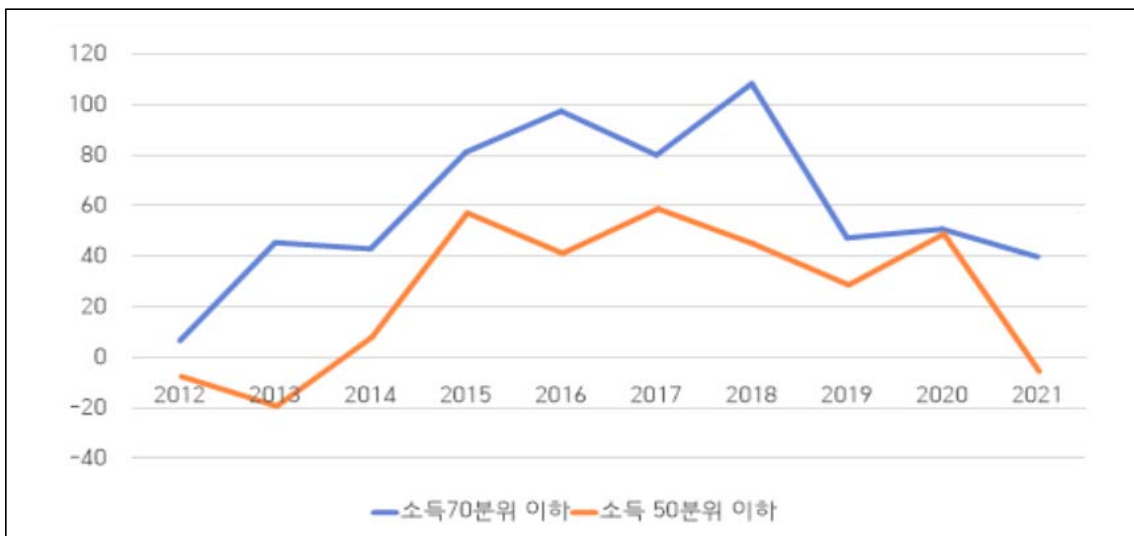
- 분석기간을 2012년에서 2021년 10개년으로 하여 각 연도별 추정을 통해 얻어진 농가 더미변수 계수를 모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음

- [그림 VI-1]과 [그림 VI-2]에서는 전체 표본에서 얻어진 농가와 비농가 저축액 차이와 농가 가구 70분위 및 중위 이하 가구 표본에서 얻어진 양 집단 간 저축액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2018년까지는 차이가 확대되다가 이후 줄어드는 모습임
- 중위 이하 표본에서는 농가-비농가 저축액 차이는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에는 비슷한 차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임

[그림 VI-1] 농가와 비농가 저축액 차이: 전체 표본(2012~2020)



[그림 VI-2] 농가와 비농가 저축액 차이: 70분위 및 중위 이하(2012~2020)



□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행위 차이 - 요약과 정리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금액을 가구의 저축액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농가와 비농가 가구의 저축액 차이를 추정해 봄
- 가구 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수준,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농가의 저축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지난 10년간 유지되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액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농가 중에서도 중간소득이나 저소득층으로 한정지어 살펴보면, 중위소득 이하의 농가 가구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비농가 가구에 비해 저축액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려움

□ 농가와 비농가의 저축행위 차이 - 원인에 대한 추론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적으로는 농가의 저축액이 비농가의 저축액보다 많다는 사실과, 이러한 추세가 비교적 고소득 농가에서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함
- 농가의 저축이 많을 수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농가소득에서 변동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대비의 차원에서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며,
 - 농업을 위해서 비농가에 비해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형태의 실물 자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로서 저축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음
- 한편 농가 저축 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라는 요인도 현재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음

□ 농가 저축 지원 정책과 이자율

- 농가에 대해서는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조세지출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과 같은 재정지출 등의 저축장려 정책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농가 저축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농가의 각 가구에 해당하는 이자율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도별 이

자율의 변동을 통해 농가 가구 저축의 이자율에 대한 반응을 추정해 보는 것이
다음 절의 내용임

3.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한 분석

□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볼 주요 내용

- 과세특례와 관련한 미시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함
- 많은 농가 가구들이 농협을 이용하리라는 가정하에 과세특례 대상의 일부인 농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농협이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가설은 현실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과세특례제도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는 이자율의 변화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어가 가구들이 이자율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추정해 보기로 함

□ 「농어가경제조사」에 대한 분석의 주요 변수

- 「농어가경제조사」의 여러 자료 중에서 농가수지와 농가자산 및 부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및 저축과 관련한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추가로 이자율 자료를 농협으로부터 구함
- 통제변수로서 다른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의 학력과 연령을 이용

□ 소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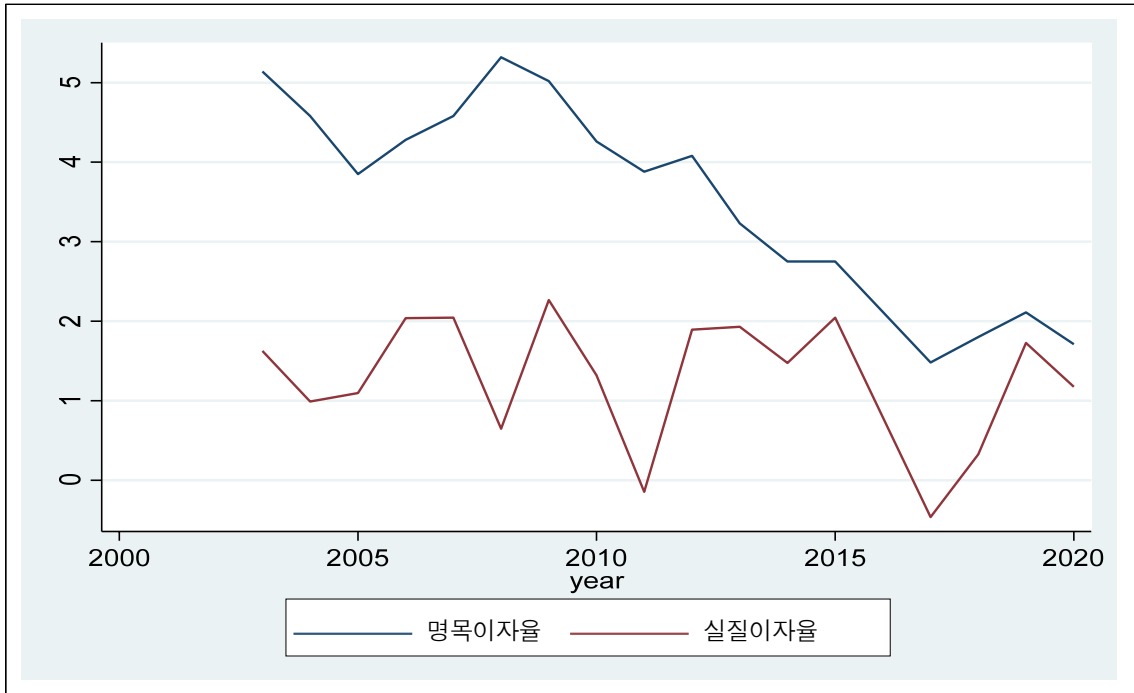
- 「농어가경제조사」에서 소득자료가 직접 주어져 있지는 않으나 농가소득을 이윤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여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분석에서는 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를 모두 활용하거나 연간 약 92~93%에 해당하는 흑자가구만을 활용하기도 함

□ 농가의 저축액은 두 가지로 정의함

- 첫 번째 정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과 일관되게 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임

- 두 번째 정의는 농가조사의 여러 자산 부채 항목 중 “예금 등 금융자산”의 연초 값과 연말 값과의 차이로부터 해당 연도의 예금 증가분을 도출하여 이를 저축으로 간주하는 것임
 - 양자 모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자율의 기본 자료는 농협의 예금 이자율임
- 분석에서 대표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간 이자율이며 분석의 결과는 만기가 다른 경우의 이자율이나 정기적금 이자율 자료를 이용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 명목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로부터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여 차감한 실질이자율의 변동은 [그림 VI-3]과 같음
 - 명목이자율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4~5% 사이에서 등락을 하다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보다는 변동이 적으며 대체로 2%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음(-)의 값을 기록하기도 함
- 가구별 이자율 차이
- 이자율 자료의 문제는 1년에 하나의 관측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제도에 따라 개별 농가의 이자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간 3개의 그룹별 이자율을 부여함
 - 기본적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농협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제도에 따라 농지 면적이 1만㎡ 이하의 농가에는 기본금리에 연 3% 추가금리를 지원하고, 농지 면적이 2만㎡ 이하의 농가에는 연 0.9% 추가금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1년에 가구별로 3개의 이자율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가구별 이자율을 적용함

[그림 VI-3] 농협의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자료: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각 연도)에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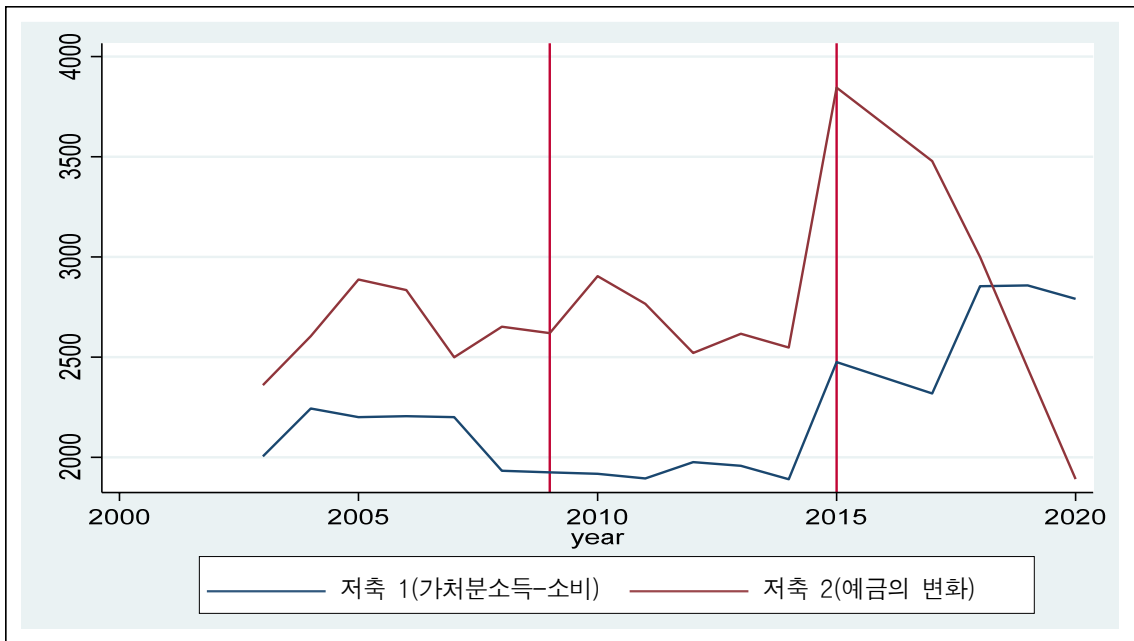
□ 농가 평균 저축액의 변화 추이

- 회귀분석에 앞서 2003~2020년까지 농가의 평균 실질저축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020년 불변가격 실질저축액 도출)
 - 본 분석의 출발 시점은 농가수지와 농가 자산·부채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2003년임
-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저축액은 (가처분소득 - 소비)를 통해 구한 값과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함
- 두 방식으로 도출한 저축액의 변화 추이는 큰 차이는 없지만 2015년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의 경우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에 크게 증가한 후 2020년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연말 금융자산과 연초 금융자산의 차이로 정의한 저축도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까지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어서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액보다 작아졌음

□ 예탁금 비과세 한도의 변화와 농가의 저축

- 2009년 예탁금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저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어떤 저축의 정의를 따르든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 사이 평균 저축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VI-4] 농어가 평균 저축액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각 연도)에서 도출

□ 회귀분석을 통해 이자율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방법

-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 이자율 변화에 따른 저축액의 변화를 추정

$$\text{저축액} = \beta_0 + \beta_1 \text{가처분소득} + \beta_2 \text{가처분소득}^2 + \beta_3 \text{이자율} + \Gamma_1 \text{교육수준더미} + \beta_4 \text{연령} + \beta_5 \text{연령}^2 + \Gamma_2 \text{연도더미} + \epsilon$$

- 분석 기간은 2003년에서 2020년까지로 이 기간의 이자율 변화가 저축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 유형의 가구에 대해 각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반영함
- 위의 식을 추정하되 다음의 명목값에 대한 추정과 실질값에 대한 추정을 병행하여 다음의 네 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됨
 - (가처분소득 - 소비)의 명목값, (가처분소득 - 소비)의 실질값,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의 명목값,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의 실질값

-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일 때는 소득과 이자율 등의 설명변수도 명목변수로, 종속변수가 실질변수일 때는 설명변수도 실질변수로 추정함
- 표본은 자료가 이용가능한 전체 표본과 (총수입-총비용)이 양(+)의 값을 갖는 흑자 가구, 혹은 양(+)의 소득을 갖는 가구로 제한한 표본 등 두 개로 나누어 추정함

□ 이자율이 농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전체 표본

- (가처분소득-소비)로 정의한 저축액에 대한 설명 능력이 훨씬 더 크며, 이자율과 저축액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정량적으로 이자율 1%p 증가에 따른 연간 저축액의 증가는 명목값에 기반한 추정에서 약 135만원, 실질값에 기반한 추정에서는 약 122만원으로 나타남
- (연말 금융자산-연초 금융자산)으로 정의한 저축액에 대한 설명 능력은 높지 않고 이자율과 저축액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로 저축액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

<표 VI-6> 농가 저축함수의 추정-전체 표본

	가처분소득 - 소비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가처분소득	0.822*** (0.0256)	0.906*** (0.00822)	0.352*** (0.0224)	0.262*** (0.0265)
소득제곱	-8.14e-07 (1.64e-06)	-9.22e-08 (3.32e-07)	1.96e-07 (1.22e-06)	2.01e-06 (1.62e-06)
이자율	135.8*** (10.88)	122.6*** (8.765)	-64.98*** (20.38)	-126.0*** (27.66)
중학교	-483.3*** (41.20)	-467.9*** (22.13)	108.2* (58.59)	201.3*** (70.43)
고등학교	-596.7*** (59.08)	-599.1*** (34.36)	14.88 (86.38)	177.4 (109.7)
전문대	-845.2*** (43.92)	-766.9] (28.26)	398.1*** (129.6)	660.7*** (165.9)
대학교	-909.4*** (70.35)	-852.6*** (49.53)	-150.2 (128.9)	-26.27 (161.8)
대학원	-1,777*** (226.8)	-1,459*** (139.6)	-142.3 (467.8)	301.0 (616.1)

<표 VI-6>의 계속

	가처분소득 - 소비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연령	-6.317*** (2.102)	1.448 (1.902)	0.0733 (3.941)	5.893 (4.258)
연령제곱	0.263*** (0.0228)	0.220*** (0.0182)	0.0188 (0.0424)	-0.0772 (0.0461)
관측치 수	98,131	98,131	98,131	98,131
R ²	0.640	0.871	0.070	0.057

주: 1.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저축액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이자율이 농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 흑자가구 표본
 - 흑자가구 표본에서도 (가처분소득-소비)로 정의한 저축액에 대한 설명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실질이자율 1%p 증가에 따른 저축액의 증가는 약 120만원으로 나타남
 - (연말 금융자산-연초 금융자산)으로 정의한 저축액에 대한 설명능력을 높지 않고 명목 기준에서는 이자율과 저축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실질기준에서는 이자율 1%p 증가가 105만원의 예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표 VI-7> 농가 저축함수의 추정 - 흑자가구 표본

	가처분소득 - 소비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가처분소득	0.766*** (0.0344)	0.882*** (0.0135)	0.415*** (0.0289)	0.292*** (0.0361)
소득제곱	4.21e-08 (1.58e-06)	1.58e-07 (3.57e-07)	-7.61e-07 (1.09e-06)	1.62e-06 (1.65e-06)
이자율	120.0*** (11.96)	120.1*** (7.331)	-31.75 (20.35)	-105.2*** (26.83)
중학교	-443.2*** (35.95)	-448.2*** (19.75)	61.57 (58.44)	177.4** (71.24)
고등학교	-575.7** (65.84)	-599.3*** (39.72)	-12.18 (88.37)	185.7 (116.6)
전문대	-784.4*** (50.58)	-739.5*** (32.27)	367.3*** (132.9)	675.3*** (170.8)

<표 VI-7>의 계속

	가처분소득 - 소비		연말 금융자산 - 연초 금융자산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대학교	-867.4*** (68.74)	-844.7*** (51.85)	-197.6 (129.5)	-41.00 (164.5)
대학원	-1,801*** (246.4)	-1,523*** (155.8)	-9.021 (482.2)	551.1 (643.4)
연령	-5.635** (2.234)	1.033 (1.969)	-0.971 (3.854)	6.622 (4.274)
연령제곱	0.228*** (0.0269)	0.209*** (0.0205)	0.0574 (0.0415)	-0.0705 (0.0485)
관측치 수	119,332	119,332	111,088	111,088
R ²	0.694	0.875	0.052	0.048

주: 1.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저축액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0.01, ** p<0.05, * p<0.1

□ 추정 결과의 정리

- 저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자율의 영향이 다르지만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이자율 1%p의 변화가 연간 저축액 약 120만원 정도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자율 변화에 따른 저축 변화의 추정 - 2020년 기준

- 2020년을 기준으로 농가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약 2,800만원이고 명목이자율은 1.71%, 실질이자율은 1.17%임
- 이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명목이자율은 1.45%, 실질이자율은 1.0%가 됨
- 즉, 실질이자율 기준 0.17%p의 이자율 감소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저축 감소액은 연간 약 2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평균저축액 기준으로 약 0.7% 수준임

□ 분석의 시사점과 한계

- 「농어가경제조사」에 대한 분석은 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가구에

대한 미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 속에서,

-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 중 중요한 한 집단인 농가 가구가 비슷한 소득 및 가구 특성을 가진 비농가 가구에 비해 저축액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비과세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해 농가 저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것임
- 분석의 결과는 농가 저축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2009년의 예탁금 비과세 한도 증가 역시 농가 저축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본 분석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가구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님

4. 소결

□ 가구 단위 저축 분석의 요약

- 이번 장에서는 주로 예탁금 비과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농가 가구와 비농가 가구의 저축액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농가 가구로 한정하여 이자율과 저축액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농가의 저축이 유사한 소득 수준의 비농가 저축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농가의 저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중위소득 이하의 농가 가구들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가 가구의 저축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자율에 따른 저축액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도 발견하였음

□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

- 본 분석의 한계는 자료 취득의 제한으로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가구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한 점에 있음

- 따라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지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음

Ⅶ. 개선 방안 및 결론



VII. 개선 방안 및 결론

-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약 74.4%가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이며, 이들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2조 2,742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의 73.6%를 차지함(1인당 평균 46.4만원)

- 동일한 자료에서 비과세 출자금 가입자의 약 75.1%가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이며, 이들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비과세 배당금은 8,305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배당금의 75.7%를 차지함

- 이러한 비중은 2016년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인원이나 금액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의 3/4 정도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음

- 동 특례에 따른 1인당 비과세 혜택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 상호금융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예탁금 이자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을 추산하면 2021년 기준 약 1,977억원임
 -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금액 4,142억원에서 1,977억원을 빼면 출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지출금액은 약 2,165억원임
 -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대상 예탁금 계좌 소유자는 총 8,087,969명, 비과세 대상 출자인원은 총 35,152,738명
 - 따라서 각각의 조세지출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약 24,000원이고, 출자 배당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약 6,200원 정도임

- 한편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1인당 평균 비과세 이자소득 46.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과세 혜택은 1인당 65,000원 정도임
 - 이는 조세지출금액에서 역산한 24,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65,000원으로 보더라도 1년간 비과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2021년부터 「조특법」 §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부여는 일정 부분 통제되고 있음
 -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은 크지 않은 반면, 조세지출금액이 크다는 것은 수혜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혜가 비교적 얇고 고르게 퍼져있음을 의미함
 - 상호금융기관, 특히 제1그룹은 제1금융권에서 지점을 개설하지 않은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민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 대상, 지원 정도, 제약조건 등에서 차이점도 있어서 동 특례 지원의 타당성을 부인할 만큼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움²⁵⁾
 - 장기적으로는 가입 대상이 가장 포괄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금융상품을 통합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통계분석의 결과에서도 동 특례제도가 저축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성 측면에서 1년에 24,000~65,000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생계보조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동 제도는 전반적으로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제도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이 될 정도로 조세특례금액이 크다는 점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외의 고소득층도 동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정책 목적에 따른

25)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한 사람은 603명의 대상자 중에 7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74명 중에 ISA 가입을 위하여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옮긴 경우는 3명에 불과함.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ISA 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음

[개선 방안 1] 현행의 법률대로 조세특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

- [개선 방안 1]을 통하여 동 제도의 조세특례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에서 농가 가구의 저축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자율에 따른 저축의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예탁금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에 예탁금을 시중은행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규모는 5% 세율로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2.6%에 불과하고, 9% 세율로 과세 시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7.2% 수준으로 나타남
 - 이렇게 이전 규모가 작게 나오는 이유로는 5% 또는 9%의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세율 14%보다는 적기 때문에 예탁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IV-48>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비율이 89%에 달하고 있음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예탁금의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이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5%, 9%의 세율로 이행하면 조세특례금액을 줄일 수 있음
 - 현행 법률상 2024년에 9%의 세율을 부과한 이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감면의 폭은 줄어들지만,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 일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89%)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개선 방안 2] 총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

- [개선 방안 2]를 통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외의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2021년부터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되었으나,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으로는 총급여액 5,000만원,²⁶⁾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을 제시함²⁷⁾
 - 이러한 기준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금융상품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제시된 것임
 - 물론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자도 상호금융기관에의 출자 및 예탁이 계속 허용되며, 이 기준은 다만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기준임

-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다른 감면 금융상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
 - ISA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확대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비과세 혜택 수혜자에서 제외된 상호금융기관의 2021년 자료를 2020년과 비교하면 예탁계좌 보유 인원 및 예탁금 총액, 출자 인원 및 출자금 총액 등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의 감소는 없었음²⁸⁾

26)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3,800만원, 중위소득은 통계에 따라 2,460만~2,900만원 수준임

27)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의 중위소득은 통계에 따라 840만~2,400만원 수준임

28)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수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

- 총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2021년도의 선례에 비추어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적인 제한은 타당한 명분을 갖추고 있음
- 결론적으로 동 특례제도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특례제도를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보완하고자 한다면 각각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하면, 농협과 신협의 조합원 수와 5개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수, 예탁금, 출자금 등은 모두 증가하였음

참고문헌

- 김봉균·여효성,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연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 김봉균·여효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 오태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소고-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9호, 2021.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송재일,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특히 신탁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5권 제2호,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 홍범교·김진영,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국세청, 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2000 간추린 개정세법』, 2002.
- _____, 『2003 간추린 개정세법』, 2004.
- _____, 『2006 간추린 개정세법』, 2007.
- _____, 『2008 간추린 개정세법』, 2009.
- _____,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 _____, 『2015 간추린 개정세법』, 2016.
- _____,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 2021.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상호금융기관, 내부자료.
- 새마을금고, 『2021년 새마을금고 통계』, 2021.
- 신탁, 『2020년 신탁통계』, 2021.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_____,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s://fisis.fss.or.kr/>

새마을금고 <https://www.kfcc.co.kr/>

신협 <http://www.cu.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부 록



<부 록>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ID					
----	--	--	--	--	--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소스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우리나라 국민 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응답자 선정질문

▣ 응답지침 ▣

▶ **농업협동조합(농협) 조합원/준조합원 제도**

: [조합원 요건] 지역농협 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둘 이상의 농협에 가입 불가)으로 이사회의 가입승낙 후 출자금을 납입한 자

: [준조합원 요건] 지역농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그 지역농협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비)농업인 이용가능)로 이사회의 가입승낙 후 출자금을 납입한 자

▶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 제도**

: [조합원 요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

▶ **새마을금고 회원 제도**

: [회원 요건]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

SQ1) 본 조사는 **농협(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가입자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SQ1-1)로 갈 것**
- ② 신용협동조합(신협) → **SQ2)로 갈 것**
- ③ 새마을금고 → **SQ2)로 갈 것**
- ④ 가입한 조합이 없다 → **면접중단**
- ⑤ 모름/무응답 → **면접중단**

SQ1-1) (SQ1=1,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가입자만)

귀하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조합원 ② 준조합원

SQ2) (SQ1=2 or 3, 신협 및 새마을금고 가입자)

그럼, 귀하의 가입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SQ1=2 필수 응답) SQ2-1) 신용협동조합(신협)	① 지역 ② 직장 ③ 단체
(SQ1=3 필수 응답) SQ2-2) 새마을금고	① 지역 ② 직장

응답자 일반현황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4)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만 19세 미만은 조사 중단)**

- ① 만 19~39세 ② 만 40~59세 ③ 만 60세 이상

SQ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5-1) 귀하의 현 거주지역은 '동'지역입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입니까?

- ① 동부(거주지 주소가 동일 경우) ② 읍면부(거주지 주소가 읍/면/리일 경우)

SQ6-1) 귀하의 거주지(집) 또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더 가까운 곳으로 응답하며, 거리가 비슷할 경우 더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SQ6-2) 귀하가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 ① 일반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② 농협 ③ 수협 ④ 축협
 ⑤ 산림조합 ⑥ 신협 ⑦ 새마을금고 ⑧ 저축은행 ⑨ 증권사
 ⑩ 기타(적어 주세요)

SQ6-1)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	
SQ6-2)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	

Part I 출자금 예탁금 가입현황

문1) 귀하는 해당 조합(SQ1 응답 조합)에 언제 가입하셨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년 □□월
문1-2) 신용협동조합(신협)	□□□□년 □□월
문1-3) 새마을금고	□□□□년 □□월

문2) 그럼,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문2) 가입형태
<p>※ SQ1-1=1응답자만</p> <p>문2-1)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 조합원</p>	<p>①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p> <p>②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p> <p>③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p> <p>④ 누에씨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p> <p>⑤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p> <p>⑥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p> <p>⑦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p> <p>⑧ 기타(적어 주세요 :)</p> <p>⑨ 모름/무응답</p>
<p>※ SQ1-1=2응답자만</p> <p>문2-2)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 준조합원</p>	<p>①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p> <p>② 회사원</p> <p>③ 공무원</p> <p>④ 금융기관 근무</p> <p>⑤ 자영업</p> <p>⑥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다</p> <p>⑦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p> <p>⑧ 기타(적어 주세요 :)</p> <p>⑨ 모름/무응답</p>
<p>※ SQ1=2응답자만</p> <p>문2-3) 신용협동조합 (신협) - 조합원</p>	<p>※ 복수응답 :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지역 신용협동조합 가입자</p> <p>② 직장 신용협동조합 가입자</p> <p>③ 단체 신용협동조합 가입자</p> <p>④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p>

구분		가입현황			
※SQ1=2응답 자만 2. 신용협동 조합(신협) - 조합원	문3-2-1) 출자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예탁금	문3-2-2) 가입여부	유형	문3-2-3) 불입형태 (복수응답)	문3-2-4) 총 불입금액
		① 가입 ② 비가입	비과세 대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없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과세 대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없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문3-3-1) 출자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SQ1=3응답 자만 3. 새마을금고 - 회원	예탁금	문3-3-2) 가입여부	유형	문3-3-3) 불입형태 (복수응답)	문3-3-4) 총 불입금액
		① 가입 ② 비가입	비과세 대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없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과세 대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없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문3-3-1) 출자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문3-4) 귀하가 현재 농협, 신협 혹은 새마을 금고 등에 납입하신 출자금과 예탁금이 귀하의 은행 등 금융기관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Part II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 대상

문) 다음은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4)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은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1	2	3	4	5
문5)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은 특정 목적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	1	2	3	4	5
문6)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	1	2	3	4	5
문7)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8)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Part III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 본 조사에서 (준)조합원이라는 용어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준조합원, 신협의 조합원,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전체 응답자 대상

문) 다음은 출자금의 가입목적과 현재 가입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 목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9)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1	2	3	4	5
문10)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1	2	3	4	5
문11) 주변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준)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준)조합원이 되었다	1	2	3	4	5
문12)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준)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	1	2	3	4	5

※ 문3-1-2=1 or 문3-2-2=1 or 문3-3-2=1 응답자만, 문13~17번까지 적용

문) 다음은 예탁금의 가입목적과 현재 가입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예탁금의 가입목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13)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2	3	4	5
문14) 은행의 예금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	1	2	3	4	5
문15)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1	2	3	4	5
문16)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 이자율이 낮다	1	2	3	4	5
문17)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	1	2	3	4	5

Part IV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

※ 본 조사에서 (준)조합원이라는 용어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준조합원, 신협외 조합원,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전체 응답자 대상

문) 다음은 출자금의 가입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금 가입효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18)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1	2	3	4	5
문19)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1	2	3	4	5
문20)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21)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문22)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편이다	1	2	3	4	5

※ 문3-1-2=1 or 문3-2-2=1 or 문3-3-2=1 응답자만, 문23~28번까지 적용

문) 다음은 예탁금의 가입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예탁금 가입효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23)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	1	2	3	4	5
문24)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1	2	3	4	5
문25)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	1	2	3	4	5
문26)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문27)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28)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하겠다	1	2	3	4	5

문) 정부가 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조건이나 비과세 감면 정도를 변경할 경우 귀하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전체응답자 대상 (신협 or 새마을금고 or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문29)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30)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 문3-1-2=1 or 문3-2-2=1 or 문3-3-2=1 응답자만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만)	문31)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 해지를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문32) 예탁상품의 비과세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33)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문34)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문35) 귀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조합의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5-1) 귀하는 2023년 조합의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실제로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3-1-2=1 or 문3-2-2=1 or 문3-3-2=1 응답자만, 문36-37번까지 적용

문36)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여 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의 14%가 과세됩니다.

- ① 예 → 문36-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6-3)로 갈 것

문36-1) (문36=1 경우) 그럼, 귀하는 **예탁상품을 얼마만큼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 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을** 이전시키겠다 → 문38)로 갈 것
② 비과세 **한도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예탁금을** 이전하겠다 → 문36-2)로 갈 것
③ 현재 **비과세를 적용받는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키겠다 → 문36-2)로 갈 것

문36-2) (문36-1=2 또는 3의 경우) 그럼, 귀하는 **예탁금 전액의 몇 퍼센트**를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이십니까?

예탁금 전액의 % → 문37-1)로 갈 것

문36-3) (문36=2 경우) 귀하가 **조합의 예탁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과세되니 5% 세율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② 계좌를 옮기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③ 조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④ 비과세에 따른 절세효과 이상으로 다른 저리 대출, 이용의 편의 등 서비스가 좋아서
⑤ 기타(적어 주세요)

문37) (문36=2의 경우 질문 진행, 문36=1인 경우 문37=1 필수)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여 9%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의 14%가 과세됩니다.

- ① 예 → 문37-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7-3)로 갈 것

문37-1) (문37=1 경우) 그렇다면 9% 세율로 과세할 경우, 귀하는 **예탁상품을 얼마만큼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 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을** 이전시키겠다 → 문38)로 갈 것
② 비과세 **한도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예탁금을** 이전하겠다 → 문37-2)로 갈 것
③ 현재 **비과세를 적용받는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키겠다 → 문37-2)로 갈 것

문37-2) (문37-1=2 또는 3의 경우) 그럼, 귀하는 **예탁금 전액의 몇 퍼센트를 일반 시중 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이십니까?

예탁금 전액의 % → **문38)로 갈 것**

문37-3) (문37=2 경우) 귀하가 **조합의 예탁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과세되니 9% 세율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 ② 계좌를 옮기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③ 조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 ④ 비과세에 따른 절세효과 이상으로 다른 저리 대출, 이용의 편의 등 서비스가 좋아서
- ⑤ 기타(적어 주세요)

※ (SQ2-1=2 or SQ2-1=3 or SQ2-2=2) and (문3-2-2=1 or 문3-3-2=1) 응답자만, 문38~39번 까지 적용

--> **신협의 직장, 단체 가입자 또는 새마을금고의 직장 가입자 중 예탁금 가입자만 진행**

문38) 귀하는 **직장 또는 단체조합에 가입한 예탁금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조합이나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
- ② 지역조합이나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③ 직장 또는 단체조합은 직장 또는 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 ④ 은행업무처리를 위한 이동거리가 짧아서
- ⑤ 기타(적어 주세요)

문39) 만약 **지역조합에는 현행 비과세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직장 또는 단체조합에 가입된 '출자금'에만 비과세제도가 축소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출자금이 과세되더라도 예탁금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 **문39-1)로 갈 것**
- ②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지역조합으로 이전시키겠다 → **문39-2)로 갈 것**
- ③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키겠다 → **문39-2)로 갈 것**

문39-1) (문39=1 : '**계속 유지**' 경우) 귀하가 **예탁금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출자금 비과세가 축소되더라도, 예탁금 이자율이 지역조합이나 시중 은행보다 높기 때문
- ② 내가 속한 단체 또는 직장에 소재한 조합이라서(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 ③ 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절세효과 이상으로 다른 저리 대출, 이용의 편의 등 서비스가 좋아서
- ④ 기타(적어 주세요)

문39-2) (문39=2 또는 3 '이전' 경우) 그럼, 귀하는 예탁금 전체 중 몇 퍼센트를 일반 시중
은행으로 이전시킬지 응답해 주십시오.

예탁금 전액의 %

문43) 귀댁의 **가구 전체의 월평균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 ④ 500~700만원 미만 ⑤ 700~1,000만원 미만 ⑥ 1,000~1,500만원 미만
- ⑦ 1,500만원 이상 ⑧ 모름/무응답

문44) 귀하는 **자산, 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소득층 ② 중산층 ③ 저소득층

문45) 귀하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6) 귀댁 **가구 전체의 월평균 저축액**(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 개인연금 불입액(보험, 신탁), 저축성보험불입액, 펀드납부금 등)은 얼마입니까?

※ 저축이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저축기관을 통해 불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①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② 월평균 소득의 10~20% 미만
- ③ 월평균 소득의 20~30% 미만 ④ 월평균 소득의 30~40% 미만
- ⑤ 월평균 소득의 40~50% 미만 ⑥ 월평균 소득의 50~60% 미만
- ⑦ 월평균 소득의 60% 이상
- ⑧ 모름/무응답

문47) 귀하가 **평소 투자나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면을 가장 고려하는지 1순위 부터 5순위까지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우선순위
수익성(이자율)	
세금	
안전성(지급불능,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등)	
유동성(현금성, 만기, 시장성 등)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나 대학 재학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졸업

DQ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4)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5) 일반 작업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6) 사무직 (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 7)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 8)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9)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 10) 학생
- 11) 무직
- 12)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DQ3-1) (DQ3=1 기혼자만 응답) 귀하 배우자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4)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5) 일반 작업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6) 사무직 (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 7)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 8)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9)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 10) 학생
- 11) 무직
- 12)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DQ4) 귀하의 가구 구성원(본인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⑦ 7인 이상

DQ5)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DQ5-1) (DQ5에서 금액을 무응답한 경우) 그럼, 귀하의 개인 및 가구 전체의 자산을 응답표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인		가 구 전 체											
	① 있음 ② 없음	금액 응답표	① 있음 ② 없음	금액 응답표										
1. 금융자산 (현금, 저축, 펀드, 출자금, 예탁금, 주식 등)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	□	□	□	□										
□	□	□	□	□										
2. 부동산 자산 (주택, 토지, 아파트, 전답, 비자가의 경우 전세 보증금 등)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	□	□	□	□										
□	□	□	□	□										
3. 기타 자산 (자동차, 서화, 농기계, 귀금속, 각종 회원권 등)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① 있음 ② 없음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억 만 원 9.무응답	□	□	□	□	□
□	□	□	□	□										
□	□	□	□	□										

응답표	
(0) 없음	(11) 1억원~2억원 미만
(1) 1천만원 미만	(12) 2억원~3억원 미만
(2) 1천만원~2천만원 미만	(13) 3억원~4억원 미만
(3) 2천만원~3천만원 미만	(14) 4억원~5억원 미만
(4) 3천만원~4천만원 미만	(15) 5억원~6억원 미만
(5) 4천만원~5천만원 미만	(16) 6억원~7억원 미만
(6) 5천만원~6천만원 미만	(17) 7억원~8억원 미만
(7) 6천만원~7천만원 미만	(18) 8억원~9억원 미만
(8) 7천만원~8천만원 미만	(19) 9억원~10억원 미만
(9) 8천만원~9천만원 미만	(20) 10억원~20억원 미만
(10) 9천만원~1억원 미만	(21) 20억원 이상
-	(99) 거절/무응답

DQ6)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DQ6-1) (DQ6에서 금액을 무응답한 경우) 그럼, 귀하의 개인 및 가구 전체의 자산을 응답표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인		가구 전체	
	금액	응답표	금액	응답표
1. 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 잔여 대출금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2. 다른 금융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로부터의 잔여 대출금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3. 기타(친지나 지인에서 빌린 돈,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임대보증금, 미리 탄 쯏돈 등)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 원 9.무응답	

응답표	
(0) 없음	(11) 1억원~2억원 미만
(1) 1천만원 미만	(12) 2억원~3억원 미만
(2) 1천만원~2천만원 미만	(13) 3억원~4억원 미만
(3) 2천만원~3천만원 미만	(14) 4억원~5억원 미만
(4) 3천만원~4천만원 미만	(15) 5억원~6억원 미만
(5) 4천만원~5천만원 미만	(16) 6억원~7억원 미만
(6) 5천만원~6천만원 미만	(17) 7억원~8억원 미만
(7) 6천만원~7천만원 미만	(18) 8억원~9억원 미만
(8) 7천만원~8천만원 미만	(19) 9억원~10억원 미만
(9) 8천만원~9천만원 미만	(20) 10억원~20억원 미만
(10) 9천만원~1억원 미만	(21) 20억원 이상
-	(99) 거절/무응답